

12·3 비상계엄과 탄핵 민변 백서

12·3 비상계엄과 탄핵·파면, 빛나는 민주사회를 위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편저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3 비상계엄과 탄핵 민변 백서

12·3 비상계엄과 탄핵·파면,
빛나는 민주사회를 위하여

12·3 비상계엄과 탄핵 민변 백서

12·3 비상계엄과 탄핵·파면, 빛나는 민주사회를 위하여

2025. 12. 3.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의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전국 비상계엄 선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다시는 반복되지 말았어야 할 대통령 국가긴급권 남용의 악몽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반면 그에 뒤이은 탄핵과 파면 결정의 시간은 우리 헌정질서가 주권자 시민과 헌법기관에 의해 어떻게 그 위기를 넘어섰는지를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모임은 12·3 내란사태와 그 이후의 탄핵·파면 과정을 기록하고, 법률가의 시각에서 그 의미를 성찰하기 위해 이 「12·3 비상계엄과 탄핵 민변 백서」를 발간합니다. 이 백서는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작동한 헌법과 법치, 그리고 시민의 저항과 연대가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에 대한 규범적 성찰의 결과물입니다.

이 백서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인 Ⅱ부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행위의 위헌·위법성” 부분은 대통령 파면의 판단 기준, 곧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례를 정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이 실제적·절차적 요건을 어떻게 위반하였는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던 상황에서 계엄이 선포되고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 등 헌법이 요구하는 통제 절차가 어떻게 무시되었는지를 조목조목 밝힙니다. 나아가 ‘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입법 기능과 지방자치, 정당 활동, 노동3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정지·제한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

면으로 침해하였다는 점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 발동이 헌행법 체계 내에서 더 이상의 중대한 헌법 위반을 상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단적인 반헌법적 행위였음을 서술합니다.

Ⅲ부 “윤석열 파면 결정과 의미”는 12·3 비상계엄 사건을 우리 헌정사의 긴 궤도 속에 위치시키며, 국가긴급권의 역사와 그 남용 사례, 그리고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이승만 정권을 비롯하여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시기 비상계엄과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되짚어 보면서, 이번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특히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여러 권한 가운데서도 국가긴급권은 평상시 헌법질서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에 대비한 극히 예외적인 비상 권한이며, 그 행사에는 특히 엄격한 헌법적 한계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이를 정치적 위기 관리나 여소야대 국면 타개 수단으로 전용한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임을 짚어 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에 대한 파면결정은 한 개인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넘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남용에 대해 헌법적 통제가 실제로 작동하였음을 보여 주는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번 백서에는 서문, I 부 사건의 진행경과, IV부 내란죄 성립 검토, V 부 헌법재판관 미임명 부작위 사건 분석, VI부 모임 회원들의 소회 내용까지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파면 결정에 이르기까지, 거리와 광장에서, 법정과 국회에서, 언론과 학계·시민사회 각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수많은 시민과 동료 법률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비상계엄에 맞서 시위와 농성을 이어 갔고, 그러한 아래로부터의 저항으로 인해 위로부터의 헌법질서 파괴 시도를 좌절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백서는 바로 그 노력 위에 쌓인 기록이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집단적 기억의 토대입니다.

이 책이 12·3 비상계엄과 탄핵, 파면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긴급권 남용을 막고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폭넓은 토론과 실천을 촉발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역사는 반복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또 한번은 희극으로

역사의 원인과 결과의 구조적인 반복 내지 패턴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역사는 후퇴할 수 있다는 경고일 것이다. 적어도 2024년 12월 3일 이전과 이후는 분명 달라져야 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27일 04:00에 발령된 비상계엄, 그리고 1980년 5월 17일 24:00 비상계엄 전국확대 이후 45년 만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계몽령’은 미개한 국민을 계몽하겠다는 전근대적 사고에 불과하다. 무모하고도 천박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여의도로 달려온 시민들과 의원들, 보좌관 등에 의해 저지되었고, 결국 해제결의에 따라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지만 우리는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역사에서 비상계엄이 얼마나 잔혹하게 인권을 침해하였는지, 그리고 민주주의 역사를 얼마나 후퇴시켰는지 목격하였다.

그런 면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뿐만 아니라 5·18 및 6월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으로부터 우리는 민주주의의 빛을 쬔다. 분명 불굴의 투쟁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살린 것이다. 그리고, 영하의 도로를 가득 메운 20-30대 빛의 전사들로부터, 남태령 고개를 넘어온 전봉준의 후예로부터도 또한 빛을 쬔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 또한 밝다.

민변은 12·3 비상계엄이 발령되자마자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소원과 더불어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제기하였다. 민주법연과 함께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관한 헌법소원과 더불어 각 권한쟁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회, 집회, 시위 등에 나섰다. 2024년 겨울은 비상계엄과 포고령, 그리고 내란세력의 준동에 맞선 총성 없는 전쟁이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세력에 맞선 승리의 역사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민변 백서」는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 선포, 윤석열 탄핵심판 및 파면 선고,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등에 대한 탄핵심판에 이르기까지 1년 동안 민변이 제기한 헌법소원, 권한쟁의 등에서 다뤘던 주요 헌법적 사건과 쟁점들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2025년 10월 31일까지 내란범들에 대한 내란 형사재판 등에서 나온 여러 사실관계와 쟁점을 다듬어 넣었다.

I 항. 12·3 비상계엄 발동에서부터 파면 결정까지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발생순서에 따라 정리하였다. 10년 아니 100년 동안에도 일어나기도 힘든 일들이 1년 안에 발생하였다. 그것은 우리의 민주주의 역량이 그만큼 취약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II 항.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법리적으로 다뤘다. 법리적인 측면에서 12·3 비상계엄의 발동요건으로서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절차적으로 적법하였는지, 이로

인해 침해된 헌법상 기본권 등을 살펴보았다.

Ⅲ항. 윤석열 파면 결정이 갖는 헌법적 의미가 무엇인지 다뤘다.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국가긴급권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적어도 대법원의 긴급조치 1호에 대한 위헌 판단(대법원 2010.12.16. 선고 2010도5986전합 판결)에서 이미 이뤄졌다. 이번 12·3 파면 결정에도 비상계엄 발동요건, 상황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긴급조치 판결과 궤를 같이한다. 그런 면에서 긴급조치 및 포고령 위헌 판결을 위한 민변 회원들의 노력이 또 다시 결실을 맺은 것이기도 하다.

Ⅳ항. 비상계엄 및 포고령 발령행위는 또한 형사상 내란죄로 평가할 수 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위헌적인 압수·수색,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방해한 행위 등은 충분히 내란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Ⅴ항. 윤석열의 비상계엄 및 포고령 발령 이후 윤석열이 탄핵소추로 인해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서, 전대미문의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자들간에서 백가쟁명식 논쟁이 붙었다. 다양한 쟁점을 소개하고 그만큼 제도적 보완을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Ⅵ항. 민변회원들, 그리고 민변과 함께 비상계엄, 포고령에 맞서 투쟁했던 교수님들의 후일담을 기술하였다. 민주법연은 이제까지 많은 법률쟁점 등에 대해 상호 토론하고, 협력해왔다. 연구자로서의 교수, 실무가로서의 변호사는 상호 보완재로서의 충분한 가치와 필요성이 있다.

백서발간을 위해 존음을 아껴 함께 해준 한분 한분 변호사님들, 그리고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이선경, 최새얀 변호사는 원고를 모으고 편집하는데 노고가 많았다.

한편, 발간과 내용에 한계가 있었음을 밝히며, 이번 「12·3 비상계엄과 탄핵 민변 백서」를 끝으로, 다시는 비상계엄에 관한 백서가 발간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또한 이 백서가 법학도가 읽는 법학 이론이 아니라 역사가 읽는 민주주의 역사서로 남길 원한다.

백서를, 한걸음으로 여의도로 달려온 시민들과 추운 겨울 광장을 가득 메운 응원봉을 든 빛의 전사들, 그리고 남태령과 한남동에서 날밤을 새운 전봉준의 후예들에게 바친다.

2025년 12월 3일
민변 헌법재판 지원단
단장 조영선

발간사	5
서문	8
12·3 비상계엄에서 파면, 그리고 그 이후 민변 활동사진	16
윤석열 12·3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문	22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24
 I.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발령 및 파면결정까지의 경과	25
1. 비상계엄 선포 사전 경위	27
2. 비상계엄 선포전 당일 상황	27
3. 12·3 비상계엄 발령부터 해제까지의 경과	28
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부재	
나. 12·3 긴급 대국민담화문을 통한 비상계엄 선포	
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주요 내용	
라. 12·3 비상계엄 발령 직후 헌법기관 침탈 행위들	
1) 국회의사당 봉쇄 및 계엄 해제 결의 방해	
2) 선거관리위원회 침입	
3) 정치인 등 체포 시도	
4) 국회 자금 차단 및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등	
5) 언론사에 대한 단수·단전 지시	
마. 2차 계엄 계획	
4. 비상계엄 해제결의안 가결 이후부터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까지의 경과	47
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이후 드러난 사실	
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1차 발의 및 무산	
다. 12·3 지령서, 계엄사 합수부 운영자료 공개	
라. 2차 탄핵소추안 발의 및 의결	
5. 윤석열 체포 시도와 극우들의 준동	52
가. 윤석열 체포 시도	
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	
다. 국가인권위원회 접거 사건	
라. 소결	

6.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와 헌법재판관 미임명	60
가. 국회의 3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나.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및 헌법재판관 미임명	
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7.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경과와 파면결정	65
가. 탄핵심판 변론 진행 경과	
나. 윤석열 구속 취소	
다. 안개 같았던 윤석열 탄핵시계	
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결정	
 II.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행위의 위헌·위법성	91
1. 파면의 판단기준 :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행위	93
2.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94
가. 실제적 요건 위반	
1) 비상계엄 선포의 실제적 요건	
2)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여부	
3) 병력 동원의 필요성 여부	
나. 절차적 요건 위반	
1)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헌법적 의의	
2) 국무회의 심의 절차 위반	
3) 계엄 선포 절차 위반	
3. 계엄포고령 발령의 위헌·위법성	107
가. 이 사건 포고령의 법적 성격 및 효력 : 직무집행행위 해당성	
나. 헌법 제77조 제5항 및 대의민주주의 등 위반	
다.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 침해	
라.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마. 국민주권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바.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 위반	
사.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침해	
아. 영장주의 위반	
자.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권위 위반	
차. 소결	

III. 윤석열 파면 결정과 의미 119

1. 국가긴급권 헌정사를 통해 바라본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중대성 121
 - 가. 국가긴급권에 관한 헌정사
 - 나. 역대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
 - 다. 박정희 군사정권 하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단
 - 라. 이 사건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 발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2. 국가긴급권을 남용한 역사에 대한 성찰 128
3.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 131
4. 소결 132

IV. 내란 행위에 대한 사법적 평가 133

1.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135
 - 가.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
 - 나. 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
 - 1) 비상계엄 선포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행위
 - 2) 위헌적인 계엄포고령 발령행위
 - 3) 경력과 병력으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무력화 시도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위법한 압수·수색
 - 5)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헌·위법성
 - 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사법적 평가
 - 1) 형법 제87조에 의한 내란행위
 - 2) 윤석열에 대한 외환 혐의
2. 계엄 선포 과정에 참여하거나 방조한 사람들의 행위 153
 - 가. 국무회의 참석자들
 - 나. 기타 내란행위 동조자들
 - 다.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선포 해제 요구 결의에 불참한 행위
3. 윤석열 석방의 문제 163
 - 가. 구속 취소 및 즉시항고 포기
 - 나. 재구속 이후 강제 구인 과정에서의 문제

V.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의 헌법재판관 임명부작위 및 권한 남용 167

1.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의 위헌성 169
 - 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 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 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대한 논쟁
 - 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기각결정
2.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의 위헌성 178
 - 가.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 나.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 다. 권한쟁의 사건 선고(헌재 2025. 2. 27. 2025헌라1)
 - 라. 모임에서의 헌법소원심판청구
3.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81
 - 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및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 나. 한덕수의 재판관 지명에 대한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 라. 가처분 결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VI.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파면결정에 이르기까지 민변 회원들의 소회 187

1. 모임 회원들의 소회 (민경현, 박순덕, 배수진, 윤재은) 189
2. 법학자, 교수들의 소회 (김현정, 방승주, 문병효) 209

12·3 비상계엄 선포에서 윤석열 파면,
그리고 그 이후 민변 활동사진



2024. 12. 6. 윤석열 즉각 퇴진·탄핵소추 촉구 집회 인권침해감시 활동



2024. 12. 31.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2025. 1. 7.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2025. 2. 10. 변호사·법학교수·법학연구자 탄핵심판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025. 3. 11.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국선언



2025. 3. 20.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민변 회원 164인 인증샷



2025. 4. 4. 한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선고 집회 인권침해감시 활동 (탄핵 인용 후)



2025. 3. 27.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 거리 행진



2025. 12. 3.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행진 인권침해감시 활동

윤석열 12·3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도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I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파면 결정까지의 경과¹

¹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2024년 12월 12일) 및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대한 공소장, 김용현의 내란중요업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소장, 기타 언론 기사들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탄핵소추안 및 공소장을 참조한 부분은 분량 등 이유로 별도 출처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 사전 경위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기로 결심하고, 2024년 11월경 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계엄 관련 현행법 검토 등을 지시하였다. 이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1980년 5월 17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포고령 제10호 전문을 확인하는 등 향후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하였다.

2024년 12월 1일 12:00경, 문상호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정성욱 대령, 김용군 대령은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서버 확보를 통해 부정선거 증거를 획득하려는 임무를 논의하였다.² 이 자리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예정되어 있음을 언급하였다.

같은 날,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박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반국가세력 척결을 명목으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기관, 민주당 당사 등을 확보·봉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 비상계엄 선포 전 당일 상황

2024년 12월 3일 19:20경, 윤석열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

² 이슬비, 〈전·현직 정보사령관과 '햄버거 계엄 모의'...예비역 대령 구속〉, 조선일보, 2024. 12. 22.

청장을 대통령 안가로 호출하여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윤석열은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계엄 선포 시 계엄군이 국회 등 주요 장소에 출동할 것”, “경찰이 국회 통제를 잘해 달라”고 말하고, 비상계엄 계획이 기재된 문서를 각각에게 건네며 계엄군과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해당 지시 문서에는 계엄 선포 계획 및 국회, 방송사 MBC, 여론조사 기관 등 10여 곳을 접수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같은 날 오후 8시경에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707특임단 대원들에게 헬기 출동을 지시하였다.

조지호와 김봉식은 안가를 나온 후 관용차를 함께 타고 이동하며, 윤석열과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출동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통제하기로 합의하였다.³ 이후 각자 경찰청으로 복귀하여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통제를 위한 경찰 기동대 준비를 완료하였다.

3. 12·3 비상계엄 발령부터 해제까지의 경과

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부재

대통령실은 2024년 12월 3일 20시경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태용

³ 이슬비, 〈경찰 동원해 ‘국회 봉쇄’… 조지호·김봉식 구속기소〉, 조선일보, 2025. 1. 9

국가정보원장을 소집했으나, ‘국무회의 개최’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20:55경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계엄을 선포하겠다”며 “국무위원을 모아보라”고 지시했다. 윤석열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통보했다.

초기 소집 인원을 보면,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계획의 참여자였으며, 행정안전부,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후 신속한 행동이 요구되는 핵심 부처들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특정 인원만 선별해 소집한 점으로 미뤄볼 때, 이 자리는 국무회의보다는 비상계엄 선포 후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총리는 사전에 비상계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윤석열을 설득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였다고 주장했으나,⁴ 김용현의 대리인단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덕수에게 먼저 보고하였다고 밝혔다.⁵ 최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되었다. 공개된 CCTV에 의하면 한덕수는 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오라고 독촉하고, 계엄 관련 서류를 직접 챙겼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모습이 드러났다.⁶ 현재 한덕수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에 대해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상황이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이

⁴ 김지숙, 〈한 총리 “대통령 설득 위해 국무회의 소집, 실체적 흠결”…절타에 사과〉, KBS, 2024. 12. 11.

⁵ 강버들, 〈“총리에 계엄 사전보고” vs “허위사실”…김용현-한덕수 ‘진실 공방’〉, JTBC, 2024. 12. 26.

⁶ 구승은, 〈한덕수 서류 건네고尹에 고개 끄덕…CCTV 속 내란 동조 정황〉, mbc, 2025. 10. 13.

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을 안전가옥에서 만난 다음 휴대전화를 교체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상계엄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⁷ 실제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박성재는 비상계엄 선포 후 10여분 지나자 법무부의 실·국장등 고위관료를 소집하여 “합동 수사본부⁸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⁹ 2025년 10월 13일 공개된 계엄 선포 당일의 대통령실 CCTV에 의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보고 있었던 점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박성재가 사전에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법무부의 고위관료들에게 계엄을 뒷받침하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날 윤석열과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총 11명이 비상계엄 선포 회의에 참석했다.

윤석열은 약 5분간 비상계엄 선포 취지만을 설명한 뒤, 22시 22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대접견실로 이동했다.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은 “개의 선포, 의안 상정, 제안 설명, 토의, 산회 선포, 회의록 작성 등 국무회의 필수 절차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계엄의 필요성, 시행 일시, 계엄사령관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설명하지 않았고, 국무위원들에게 의견 진

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실질적 검토와 논의도 없었다”고 밝혔다.¹⁰ 실제로도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12월 5일 저녁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덕수 총리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서명을 받고, 12월 7일 대통령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¹¹

당시 뒤늦게 소위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4년 12월 15일 경찰조사에서 국무회의에서 포고령에 대한 심의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나. 12·3 긴급 대국민담화문을 통한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은 2024년 12월 23일 10:27경 긴급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윤석열은 야당이 주도한 일련의 정부 관료 대상 탄핵소추를 사법부 및 행정부 마비를 획책한 악행으로 규정했으며, 정부 예산안 삭감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들을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간주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되었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

7 윤지원, 조문희, 〈[속보] 이완규 법제처장 “계엄 해제날 회동 후 휴대전화 바꿔”〉, 경향신문, 2024. 12. 17.

8 계엄사령부직제규정에 따르면 합동수사본부는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을 수사하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해당 직제에 검사 파견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합동수사본부에 법무부장관이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이다.

9 이유지, 〈계엄의 밤, 법무부서 무슨 일이... 박성재, ‘위헌 검토’ 의견에 손사래〉, 한국일보, 2025. 8. 11.

10 홍주환, 〈[다시 쓰는 공소장] 윤석열과 국무위원 ‘불법 회의’의 재구성〉, 뉴스타파, 2025. 4. 23.

11 박지영, 〈尹 비상계엄 끝났는데 ‘사후결재’? 부실 국무회의 의식했나〉, 헤럴드경제, 2025. 2. 20.

다”며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다. 또한 “중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비상계엄이 불가피했음을 주장하고,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실제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성도 확인되지 않았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사유로 제시한 국회의 권한 행사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정치적 영역의 문제일 뿐이었다.

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주요 내용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 박안수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적용되는 6개 항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국회·정당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언론·출판에 대한 강력한 통제, 시민들의 집회·시위 금지 등 초헌법적 조치들을 포함한다.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들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처단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었다.

포고령 제1항은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였다.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비상계엄 선포만으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다. 오히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계엄법 제13조에서도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포고령 제1항은 이러한 법적 보장을 전면 부정¹²하였다. 계엄사령부의 이와 같은 포고령 제1항은 국회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로 인해 비상계엄은 대통령 외에는 사실상 해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포고령 제2항과 제3항은 언론 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2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명시한다. 이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과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언론, 출판, SNS 등 모든 매체를 통해 비판적 의견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윤석열은 MBC의 비속어 발언 보도에 대한 억압,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고소,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사건을 통해 언론통제 의지를 이미 보여준 바 있다. 또한, 채상병 수사 관련 외압, 도이치모터스 사건, 명품백 수수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보도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해당 보도들을 가짜뉴스로 규정해왔다.

그 외에도 포고령 제4항은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하여 시민들의 윤석열 및 비상계엄 등 비판 집회 및 시위 등

12 정치활동 금지 조치는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고 규정한 전두환의 계엄포고 제10호(1980. 5. 17. 시행)에서 연원하는 것으로 보이나, 87년 헌법에서는 이러한 정치활동규제를 삭제하였다.

집단행동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포고령 제5항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하였으며, 포고령 제6항은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규정하였다. 윤석열은 2022년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낙인찍었고,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세력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공작을 일삼는다”는 왜곡된 이념적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윤석열은 위 포고령 등을 통해 자신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힌 정적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우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라. 12·3 비상계엄 발령 직후 헌법기관 침탈 행위들

1) 국회의사당 봉쇄 및 계엄 해제 결의 방해

윤석열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국회 담장 외곽을 경찰이, 국회 본관 외곽을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 본관 내부를 육군특전사령부가 각각 통제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국회 7개 출입문에 경찰 기동대가 배치되고 경찰 차벽을 설치하여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출입을 봉쇄하였다. 수도방위사령부는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등 출입문을 확보·차단·봉쇄하였고,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은 헬기를 이용해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내부로 진입하기로 하였다.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공소장 등을 기초로 재구성한 시간별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 2024년 12월 3일

- 19:20 윤석열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호출하여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계엄군이 국회에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고 지시하였다.
- 22:30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에게 전화하여 미리 준비된 경찰 기동대원들의 신체보호복 착용 여부, 승차 대기 상태, 국회 통제를 위한 배치 장소 선정 여부를 확인한 후 “무전 지시하라”고 말하여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 22:35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이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이미 국회 1, 2문에 배치되어 있던 기동대를 비롯한 6개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각각 배치하였다.
- 22:45 김봉식이 국회 출입문에 기동대가 배치된 사실을 확인한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서로 논의한 결과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결론내리고 그 무렵부터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기로 결정하였다.
- 22:46 김봉식이 경비안전계장에게 “국회로 들어가는 사람을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하였다.
- 22:47~49 경비안전계장이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지휘관 등에게 “외부에서 국회 안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전원 차단하라”, “국회 각 문 앞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하라”, “현 시간 이후 누구를 막론하고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은 불가하다”고 지시하여 22:48부터 23:06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이 금지되었다.
- 23:23 윤석열은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전화를 걸어 포고령 발령 여부를 확인한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을 알려줘라”고 지시했다.
- 한편, 박안수로부터 이 같은 지시사항을 보고받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은 박안수에게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제1호)을 공유하고,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도록 요청할 것을 추가로 지시했다.

이에 박안수는 김용현으로부터 통화를 받은 비화폰을 이용해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포고령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23:36 조지호 경찰청장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하였다.

23:37 윤석열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 연속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였다.

23:48 무장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였다.

▶ 2024년 12월 4일

00:00~01:30 김봉식이 국회 통제를 위한 경찰 기동대 약 22개 대를 증원해 국회 주변에 순차 배치하고 경찰버스를 동원해 차벽을 설치하였다.

00:34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이끄는 침투조가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하였다. 이는 국회 본청에 진입하여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01:45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로 인해 경찰 기동대가 국회에서 철수하였다. 결과적으로 조지호와 김봉식은 2024년 12월 3일 22:48부터 2024년 12월 4일 01:45까지 경찰 기동대 28개 대 약 1,680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하고 경찰버스 168대, 지휘 차량 56대 등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은 윤석열로부터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석열이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싹 정리해”라고 지시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조지호 역시 윤석열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계엄군은 국회 본관의 전기 차단 시도도 하였는데, 2025년 2월 16일 내란 국정조사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병력이 지하 1층 분전함을 열어 일반조명 차단기와 비상조명 차단기를 내려 국회 본관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하는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였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2024년 12월 1일, 김용현은 곽종근에게 계엄 발생 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기 위해 김용현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계엄사가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증거를 확보하면 국민적 지지를 얻을 것”이라며,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해 부정선거 증거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3일 22:27경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군은 즉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기관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인근에서 대기중이던 계획처장 등 대원 10명에게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내부로 진입해 서버실 위치를 확인하고 후속 지원부대가 올 때까지 그곳을 점거하도록 지시했다. 계획처장 등 대원 10명은 문상호의 지시에 따라 실탄을 소지하고 22:3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당직실로 진입했다. 그들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화선을 차단한 후 서버실과 통합관제실의 위치를 확인하고 점거했다. 대원들은 정보관리국의 통합명부시스템 서버, 통합스토리지 서버 사진 등과 같은 주요 설비의 사진을 촬영하고 전산실을

폐쇄했으며, 내부 조직도를 촬영해 문상호에게 전송하여 체포 대상이 될 주요 직원 30여 명을 선정했다. 여기에서 정보관리국은 선거정보 등과 관련된 데이터와 서버를 관리하는 곳으로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단체와 유튜버들에 의하여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어 온 곳이다. 실제 4. 10. 부정선거 수사촉구대책위원회는 관련 의혹을 명목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관리국 정보운영과 직원을 고발한 바 있다.

문상호는 실시간으로 작전을 지휘하며 체포 대상 명단을 직접 확정했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에게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포승줄 등을 사용해 다음 날 오전 출근하는 직원 30여 명을 체포하여 수도방위사령부 병커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인원은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므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아침에 출근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신원을 확인한 후 체포 명단에 오른 직원들을 포승줄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도방위사령부 병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작전에 투입된 부대원들에게 “이미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므로 의심하지 말고 상부의 명령을 수행하라”, “김용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와 병행하여, 계엄군은 과천청사에 110명, 수원 연수원에 130명, 관악구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47명 등 총 297명이 배치되어 약 3시간 동안 해당 기관들의 출입을 통제했다.¹³ 김용현의 지시를 받은 광종군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인 22:24경에 육군특전사령부에 병력 출동을 지시했고,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은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에게 “과천과 관악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그리고 여론조사 꽃 등 4곳

의 전산실을 확보하라. 건물은 경찰이 확보할 것이고, 우리가 전산실을 통제하고 있으면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분석팀이 올 건데 안되면 우리가 서버를 카피할 수도 있다”고 명령했다. 23:55경,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결의안을 의결할 상황이 되자 국군방첩부 제1처장에게 전화해 “서버를 카피하거나 강제로 반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국군방첩사령부 부대 115명이 2024년 12월 4일 00:58부터 01:34 사이에 출동했으나, 02:34경 복귀명령을 받고 철수했다.

군의 이 같은 행동은 김용현이 여인형에게 내린 지시에서 드러나듯, 형식적으로는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증거 확보를 명분으로 한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여론조사 자료 전체를 장악하려는 포괄적인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 침입 사태는 윤석열이 부정선거론에 깊이 심취해 있었던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는 취임 직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0.73% 차이로 이긴 것은 이상하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을 직접 제기한 적이 있었다. 또한 2022년 대선 당시 작성된 ‘부정선거관련 관리대책’ 문건에는 중선위 서버 로그 기록 확인 필요성, 양정철 당시 민주연구원장과 중국의 유착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비상계엄령에 ‘여론조작 금지’ 조항이 포함된 것 역시 그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했다는 점을 보여준다.¹⁴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나 법원과는 별개의 독립된 헌법기관으

13 김태훈, <[단독] ‘선관위’ 계엄군 297명…“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 SBS, 2024. 12. 5.

14 이황희, <[단독]尹, 국정원장에게 ‘부정선거’ 보고받고 “내 선거도 10%p 이상 이겼어야…”>, 주간조선, 2024. 12. 13.

로, 헌법 제77조에 따라 비상계엄 하의 특별조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은 명백한 위헌, 위법적인 행위였다고 할 것이다.

3) 정치인 등 체포 시도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20:22경 홍장원에게 “한두 시간 후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으라”고 전화로 지시하였다. 이어 같은 날 22:53 경에는 홍장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명확히 지시하였다. 그 외에도 윤석열은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계엄법 위반이니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하였다.

같은 날 22:27경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김용현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인 등 유력인사 10여 명을 체포할 것을 지시했다. 여인형은 이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연락하여 정치인 등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하였다. 조지호는 이후 경찰에서의 진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를 포함해 총 15명의 위치추적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¹⁵

22:30경에는 여인형이 조지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정치인 체포작전에 대한 경찰의 협조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였다. 여인형은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 정치인 등 15명의 위치정보 확인,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배치된 군 병력에 대한 경비 인력 지원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김용현은 여인형에게 총 14

명의 정치인 명단을 직접 알려주며 “포고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라 체포할 수 있으니 미리 위치를 파악하라”고 추가 지시하였다.

23:06경에는 여인형이 홍장원과 통화하며 정치인 등 유력인사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을 요청했다. 2025년 1월 22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홍장원은 여인형이 불러준 체포 명단에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¹⁶

여인형은 이들을 구금하기 위해 같은 날 23:30경 노형운 방첩사 군사기밀 수사실장에게 수도방위사령부 병커 사용을 요청하는 지시를 내렸다.

한편 전·현직 판사들이 체포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규정하며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¹⁷ 서울중앙지방법원 또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유감을 표명하였다.¹⁸

4) 국회 자금 차단 및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등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22:40경 대 접견실로 돌아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에게 이후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조치사항을 지시했는데, 당시 경

16 이지영, <홍장원 “尹 ‘싹 다 잡아들이라’ 지시…여인형이 명단 불러줬다>, 중앙일보, 2025. 2. 4.

17 이태윤, 김정연, <대법원 “현직 판사 체포 지시, 사법권 직접적, 중대한 침해>, 중앙일보, 2024. 12. 13.

18 김범주, <판사 체포 시도 의혹에 현직 판사 “사법부 겁박, 윤석열 사죄하라”>, KBS, 2024. 12. 13.

15 이영근, 나운채, <[단독] ‘이재명 무죄’ 준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 중앙일보, 2024. 12. 13.

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에게 미리 준비해 둔 비상계엄 선포시 조치사항 문건을 건네주고, 그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국가비상입법기구는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탈취한 전두환 등이 국회를 해산하고 만든 초헌법적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5)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소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제시하며 비상계엄 선포 후 실행할 구체적 조치를 지시하였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025년 1월 14일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서 “피청구인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2월 3일 18:00~19:30 사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본인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였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재판 중이어서 상세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피청구인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여 단전·단수 지시를 사실상 인정하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23:34경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하여 경찰 조치 상황을 확인하였고, 23:37경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하여 “24:00경 다수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에 경찰이 투

입될 예정이므로,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를 요청하면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이 지시를 김조일 소방청 차장에게 즉시 전달하였다.

김조일 소방청 차장은 23:40경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과 관련하여 경찰청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하라”고 반복 지시하였고, 허석곤 소방청장은 23:50경 황기석 본부장에게 다시 전화하여 경찰청의 협조 요청 여부를 확인하였다.¹⁹

이에 대해 이상민은 2025년 2월 11일 제7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계엄 선포 후 차량 이동 중 단전·단수 조치가 무분별하게 진행될 경우 국민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상황을 문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허석곤 소방청장은 2025년 1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경찰청이 요청하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직접 전화로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제7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이상민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청구인 집무실 문건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문건은 ‘소방청장’이라는 머리말로 시작되어 ‘한겨레신문·경향신문·MBC·JTBC·여론조사 꽃’ 및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소극적 취지의 진술만으로도 윤석열이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 윤상문, 〈서울소방본부장 “소방청장·차장이 ‘경찰 협조’ 언급…단전단수 이야기 안 해〉, MBC, 2025. 10. 30.

또한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은 2025년 1월 14일 내란 국조특위에서 2024년 12월 3일 22:32에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고,²⁰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23:35~23:37 사이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보여주며 ‘국회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이 발표되었으니 서울청에 전화하여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서 대통령으로부터 지도 않는 불법·부당한 지시를 받았으면 저항해야 하는 게 상식이고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하여 윤석열의 단전·단수 지시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진술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에 소방청을 통한 언론사 및 여론조사기관 단전·단수 지시문건이 존재하였고, 윤석열이 해당 문건을 국무위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계엄포고령 제1호 제2항(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및 제3항(모든 언론·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음)의 집행을 위해 계엄 선포 전부터 구체적인 지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마. 2차 계엄 계획

윤석열은 헌법 제77조 제5항 및 계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회가 해제결의안을 통과시키면 “지체없이”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24년 12월 4일 01:02 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하며 국회

의원을 끌어내라고 명령하여 ‘2차 계엄’을 할 의사가 있었음이 확인된다.²¹

또한 윤석열은 2024년 12월 4일 01:02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에도 즉시 계엄해제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30에야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 의결을 하고 같은 날 05:40에야 뒤늦게 계엄 해제 공고를 하였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계엄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거듭 주장하였으나, 선관위로 출동했던 국군방첩사령부 중간 간부들은 검찰조사에서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후 자체 판단해 전원 복귀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하였고, 또다른 방첩사 관계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자체 철수를 결정한 부하들에게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역시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선관위 군병력 재투입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광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특전사 고위 간부 등은 12월 4일 새벽에도 김 전 장관이 선관위 병력 재투입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계엄군 철수를 지시하지 않거나, 김용현 장관이 선관위에 계엄군의 재투입을 지시한 배경에는 12·3 계엄의 최고 결정권자인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역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지 2시간이 지난 2024년 12월 4일 03:00경 계엄사 참모진들을 서울 용산 합동참모

20 김형호, <서울청장 유력> 박현수, 12·3 계엄밤 내란 주도자들과 수차례 통화, 오마이뉴스, 2025. 2. 5.

21 KBS News, <윤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계엄 당시 4,700여 명 동원”>, 2024. 12. 27.

본부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고 윤석열이 이들에게 복귀 지시도 내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²²

특전사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은 2024년 12월 4일 3:30까지 대기 상태를 유지했고, 계엄군은 같은 날 1:50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에 집결해, 4:45 까지 배회했다. 이는 윤석열이 2024년 12월 4일 1:02 계엄해제 의결 후에 계엄군에게 철수지시를 하였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이며, 오히려 윤석열에게 2차 계엄을 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케 해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2024년 12월 4일 04:27분,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군을 철수시키고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새벽 시간대여서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인원이 모이는 대로 공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거듭되는 탄핵 시도와 같은 국회의 무도한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발표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01:01에 가결된 지 3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다.

신원식은 윤석열이 해제 결의 가결 이후인 01:41 국회법령집을 보고 있었다고 밝혔는데(탄핵심판 7차 기일), 이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거부권 행사를 검토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즉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관한 해제 결의안 의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사령관은 2차 계엄을 준비하였던 것이고 이와 같은 계엄사령관의 행동은 윤석열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윤석열이 2차 계

22 박진산, 정혜민, 배지현, 강재규, <[단독] '2차 계엄 의혹' 용산행 참모진 34명...박안수 “복귀 명령한 적 없다”>, 한겨레, 2025. 2. 28.

엄을 시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4. 비상계엄 해제결의안 가결 이후부터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까지의 경과

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이후 드러난 사실

2024년 12월 3일 계엄군이 체포할 대상 정치인 명단이 공개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계엄군이 출동했다가 이후 철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2024년 12월 5일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누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고 답변했다.

김용현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수사 필요성 판단을 위해” 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 진입한 제1공수특전여단 대원 2명은 부대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일단 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언론에 증언했다.

또한 2024년 12월 6일,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홍장원은 방첩사령부 체포 대상자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민웅, 권순일 전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노총위원장 1명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홍장원은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출테

니 방첩사령부 지원하라”는 발언을 공개했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광종근과의 인터뷰에서 “국방부장관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했다”는 증언 내용을 전했다.

국회 행안위는 선관위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계엄군 장성 6명이 권총을 차고 전산실에 들어가 사전투표 명부 관리 시스템(통합명부시스템) 서버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안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지시를 받았던 사실이 보도되었다.

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1차 발의 및 무산

2024년 12월 4일 오후 3시,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의 야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을 포함한 의원 191명이 14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하여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였다. 12월 5일 00:48경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2024년 12월 5일 00:12경, 국민의힘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윤석열 탄핵안 반대 의견을 박수로 추진했고,²³ 12월 7일에는 ‘김건희 특검법’ 반대와 윤석열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재확정하며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²⁴

23 전광준, 〈국힘 ‘윤석열 탄핵 반대’ 박수로 당론 채택〉, 한겨레, 2024. 12. 5.

24 김형원, 〈與, ‘尹대통령 탄핵안-김여사 특검법’ 부결 당론 확정〉, 조선일보, 2024. 12. 7.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반대 표결한 뒤,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 직전 집단적으로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을 일일이 호명하며 투표 참여를 촉구했고, 국회 앞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 시민들도 그들의 이름을 따라 외쳤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으나, 2024년 12월 7일 오후 9시 21분 탄핵소추안 표결이 종료될 때까지 국회재적의원 2/3인 200명 이상의 의원이 채워지지 않아 개표 자체가 이뤄지지 못한 채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투표불성립’되었다.

다. 12·3 지령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운영자료 공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12·3 비상계엄 지령서인 〈참고보고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²⁵

해당 지령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둘째,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국민 의식 수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계엄을 실시해야 한다”는 권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포고령에서 ‘선량한 국민’과 ‘반국가세력’을 구분하거나 야간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대규모 저항을 사전 차단하려 했던 점에서, 당국 역시 국민의 강한 반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지령서에는 각 군 총장을 합참의장이 아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내용도 담겨 있다. “계엄사령관은 장성급 장교

25 조주형, 〈[전문] 민주당 추미애가 내놓은 일명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문건 전문〉, 펜앤마이크, 2024. 12. 8.

중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 문제는 없으나, 작전지휘권과 직제상 계엄업무를 소관하는 합참의장이 수행한다”는 설명과 함께 “동원과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각 군 총장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병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실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은 이 논리를 적용해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침해하려 했다.

마지막으로 지령서에는 1980년 5월 17일 발표된 ‘계엄포고령 10호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언론·출판·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태업 및 파업행위를 일체 금한다”,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등의 내용은 박안수 명의의 포고령과 유사하다.

라. 2차 탄핵소추안 발의 및 의결

2024년 12월 12일 윤석열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1차 탄핵소추안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했다는 점을 핵심 사유로 내세웠다. 다만 1차와 달리 이번 소추안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죄(또는 내란행위)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대선 여론조작, 거부권 남용 등 기존 내용은 삭제한 반면, 국회 본회의장 내 의원 체포 및 구금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계엄군 점령과 휴대전화 압수, 법무부 등에 정치인 및 언론인 수감장소 마련 시도 등 새로 발굴된 증거들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비상사태 없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며, 5분간의 국무회의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계엄 선포

후 국회에 무장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규정했다. 아울러 계엄군의 선관위 서버 확보 시도,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와 수감 시도 등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들도 2차 탄핵소추안에 포함시켰지만 법관 체포 등은 별도의 소추 사유로 추후 추가되었다.

당시 탄핵소추안에는 형법상 내란죄 조항이 포함됐으나,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인용해 “탄핵과 형사소추는 요건과 절차가 각각 독립된 제도”임을 명시했다. 이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별개의 절차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신속한 탄핵심판 결론을 도출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이었다.

같은 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부정 의혹을 주장한 윤석열의 담화에 대해 반박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²⁶ “북한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설령 해킹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정선거에 대한 강력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며 윤석열을 강력히 비판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강력 규탄!〉, 2024. 12. 12.

5. 윤석열 체포 시도와 극우들의 준동

가. 윤석열 체포 시도

윤석열에 대한 체포는 두 차례에 걸쳐 영장이 발부된 뒤에서야 겨우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나, 윤석열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영장이 즉시 집행되지 못했다.

1) 1차 체포 시도

윤석열이 특별검사의 소환에 3회 연속 불응하자, 2024년 12월 3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2024년 12월 31일 윤석열의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공수처는 윤석열의 죄목을 내란 우두머리로, 구금 장소를 서울구치소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2025년 1월 6일까지로 밝혔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측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의 효력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에는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 그의 주장은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근거 규정이 없어 경찰기동대가 체포를 보조하면 위법이며, 이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는 인력들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법에 해당하므로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이들을 합법적으로 체포할 수 있

다는 것이었다.

2025년 1월 1일 19:30경 윤석열은 측근인 석동현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전달했다. 이 편지에는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그는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며,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여러분의 노고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 한 분 한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끝까지 싸우겠다”며 자신의 복귀를 암시하기도 했다.

결국, 대통령 경호처와 군 부대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1차 체포영장 집행은 실패로 돌아갔다. 현장에는 차벽이 설치되고 군인 및 경호처 직원들이 인간 방벽을 형성했으며, 경호 인력이 개인 화기를 소지한 상태라 집행 인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구체적인 저항 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²⁷

윤석열 1차 체포영장 집행 타임라인
▶ 2025년 1월 3일 04:30 경찰 버스들이 한남동 일대에 배치됨 05:00 현장에 경찰이 배치되고 버스로 차벽이 구성됨 06:14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차량 출발 07:18 공수처 차량이 대통령 관저에 도착 07:44 공수처, 관저 앞 미니버스에 차단되어 진입 불가 및 대기 08:02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이 관저 진입 시도

²⁷ 1차 및 2차 체포영장 집행시간은 각 기사의 속보 헤드라인이 보도된 시간에 따라 재구성하였습니다.

08:30 경호처가 인력으로 벽을 형성해 경찰과 대치
 08:57 공수처와 군 부대 간 대치 상황 발생
 09:16 공수처 등이 대치선을 뚫고 관저 앞 미니버스 장애물 돌파
 09:45 제55경비단과 공수처 간 추가 대치
 09:56 공수처, 관저 군 부대 저지선을 돌파하고 건물 앞에서 경호처와 재대치
 10:13 공조수사본부가 경호처장 박종준에게 영장 제시하였으나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거부당함
 13:30 공수처, 영장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인원 안전을 고려하여 체포영장 집
 행 방법 재검토 발표
 14:49 2차 체포 집행 시도는 검토 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힘

한편, 2025년 1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측이 제기한 체포영장
 의의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수색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대통령 관
 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이로써 1차 체포영장의 적법성이 사법적
 으로 확인되었으나, 실질적인 집행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2) 2차 체포 시도

2025년 1월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수사기관의 재청구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이 체포영장을 근거로 2025년 1월 15일,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 관저를 압박하여 계획된 작전을
 통해 윤석열의 체포를 최종적으로 성공시켰다. 당시 체포 작전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윤석열 2차 체포영장 집행 타임라인

▶ 2025년 1월 14일

23:00 관저 입구 앞 도로 양측에 경찰 기동대 버스들이 차벽을 구성함

▶ 2025년 1월 15일

01:00 윤석열 지지자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며 경찰과 충돌
 03:10 한남동 관저 일대에 경찰 버스 및 차량 집결. 경찰기동대 51개 부대
 3,000여 명, 형사 1,000여 명, 공수처 체포팀 검사 및 수사관 40여 명,
 장애물 제거 및 진압 체포조 투입 예고됨
 04:13 공수처 차량,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도착
 04:40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체포 저지를 위한 인력
 띠 형성
 05:11 공수처와 경찰, 체포 및 수색영장을 경호처 직원들에게 제시
 05:26 관저 앞에 경찰 기동대 3,000여 명 투입해 진입로 확보
 05:45 체포영장 집행 시작. 버스 벽 앞에서 인력 띠를 형성한 국민의힘 의원들
 을 제거
 05:50 경찰, 윤석열 측 1차 바리케이드 돌파
 06:34 관저 입구 앞 지지자들 강제 해산
 06:35 구급대원 현장 투입,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 수습
 06:47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발표
 07:06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및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 집결, 김기현 입장
 발표
 07:29 경찰, 사다리를 이용해 차벽 넘어 관저 진입 시도
 07:32 경찰 및 공수처 인력 관저 정문 진입 성공
 07:43 경찰 및 공수처 인력 2차 저지선 도착
 07:48 경찰 및 공수처 인력 2차 저지선 우회
 07:56 경찰 및 공수처 인력 3차 저지선 이동

08:08 관저 앞 출입문을 통해 수사 인력 본격 진입 시작
 08:09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윤갑근 관저 진입
 08:13 수사 인력, 정진석과 영장 집행 협의
 08:40 석동현, 윤석열의 자진 출석 협의 중 발표
 08:43 윤석열 지지자들 한남대로 무단 점거 및 놓기 시위
 09:00 공수처, 윤석열의 자진 출석 계획 없음을 공식 발표
 10:02 국민의힘 의원들, 윤석열 요청에 따라 관저로 이동
 10:05 석동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공수처 직접 출석 예정 발표
 10:16 국민의힘 의원들 관저 진입
 10:33 공조수사본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진행

한편, 2025년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석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1월 16일, 17일, 19일의 검찰 조사를 모두 거부하였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공수처가 세 차례에 걸쳐 강제 구인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

2025년 1월 19일,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반자, 그의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법원에 진입한 폭도들은 경찰의 방패를 탈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고, 유리창과 외벽을 파손하였다. 법원 내부에 진입해서는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렸다. 법원 직원들은 자판기로 문을 막는 등 저항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경찰 저지선마저 뚫리자 옥상으로 대피해야 했다. 심지어 폭도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찾아다니기까지 하였으며, 언론사 직원들도 폭행을 당하였다. 경찰은 16시경부터 진압에 나섰으나, 일부 폭도들은 바닥에 드러눕거나

19:30경까지 경찰과 대치하는 등 극심한 혼란이 지속되었다.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해 폭동을 일으킨 배경에는 음모론적인 세계관과 윤석열의 직접적인 선동이 있었다. 윤석열은 1월 15일 체포 당시 영상 편지를 통해 자신의 체포가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하였다.²⁸ 또한 전광훈은 1월 18일 “국민 저항권이 최고의 권리이므로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한다”는 극단적인 발언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였다.²⁹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전에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공수처 차량을 파손하며 “오동운을 끌어내 죽여버리자”고 외치는 등 과격한 행동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다.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사건

2025년 2월 10일,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을 점거하고 폭력적인 출입 통제를 시도하였다. 이는 윤석열에 대한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일어난 일로, 이들은 회의가 열리는 14층 복도를 점거하며 반대 측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방청을 막았다.

이들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소위 ‘사상 검증’을 시도하며³⁰ “우파 시민인가”라고 묻거나, “오는 순간 뽀 한 대를 때려버린

28 이승준, 〈체포된 윤석열 “불법의 불법의 불법”…600자 최후 메시지〉, 한겨레, 2025. 1. 16.

29 김지성, 〈법원 앞 ‘아수라장’…경찰 밀치고 취재진 위협하고〉, mbc, 2025. 1. 18.

30 고나린, 〈윤석열 지지자들 인권위 난동…“이재명·시킨평 옥해봐”〉, 한겨레, 2025. 2. 11.

다”³¹고 위협하며 엘리베이터 문에 주먹을 휘둘렀다. 심지어 캡틴아메리카 방패를 든 사람이 다른 이들과 스크림을 짜 직원들을 엘리베이터에 감금하는 일까지 벌여졌다.

이날 인권위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 가결하였다. 권고안에는 윤석열의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증거조사가 필요하며, 계엄 선포 관련 피의자들에게 불구속 재판 및 수사 원칙을 유념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제안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점거 사건은 윤석열 측의 비상계엄 선동과 함께, 디시인사이드 내의 극우 성향 게시판(미국정치 갤러리, 국민의힘 갤러리 등)에서 ‘내일 전략 X팸’이라는 제목으로 구체적인 점거 방법이 공유되는 등 온라인을 통해 조직적으로 선동된 것으로 드러났다.

디시인사이드 ‘내일 전략 X팸’ 발췌³²

내일 인권위랑 현재 둘다 중요한데 시간이 겹친다면 제 생각에는 이거예요.

일단 인권위를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아야 근해요.

서울 인권위 건물은 인권위만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서 정확히는 층별로 우리가 이 사진처럼 자리를 잡아야해요.

인권위는 10층~15층을 사용하고 있고 그 중에 인권위 전원회의실이 있는 14층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층별로 썩다 내부를 이렇게 우리가 자리 잡아야 해요.
건물 밖에서만 자리 잡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오전 내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평일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권위에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다 들어가지 못한다면 못 들어가신 분은 현재로 이동해서 마은혁 임명 함부로 못하도록 1인시위 해주세요.

둘다 중요해서 분산은 어쩔 수 없이 해야하지만 지금 인권위는 일반인 출입도 가능할테니 인권위에 자리를 먼저 잡고 꼭 차면 현재 가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현재만 갈 수 있다 하신다면 그냥 현재로 바로 가주시면 좋아요.

어쨌든 결론은 둘다 중요.

같은 날 오전 7시경에는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국가 인권위원회 도착을 인증하는 글과, 사전 계획에 따라 14층 및 11층에서 대기 중이라는 전략적 게시글이 공유되었다.³³

또한 이들은 미국정치 갤러리에 ‘13일 현재 앞 집합’을 촉구하는 글을 게시하고, 헌법재판소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상세 내부 평면도를 공개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13일을 ‘퍼지데이(Purge Day)’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는 살인과 폭력이 합법화된 가상의 공휴일을 소재로 한 영화 <더 퍼지>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보인다.

31 현예슬, <“뺨 때린다” 경찰·기자 위협…극우집회 등장한 격투기 그 남자>, 중앙일보, 2025. 2. 12.

32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uspolitics&no=1247251>

33 최원정, 최윤선, <尹지자 커뮤니티, ‘난동’ 사흘 전 서부지법 답사 정황>, 연합뉴스, 2025. 1. 26.

라. 소결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고, 체포 영장이 집행되어 구속이 이루어졌으며,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측에 불리한 증거가 계속 제시되는 가운데, 그의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를 시도하는 등 폭력적 행동을 벌였다. 이러한 사태의 배경에는 윤석열 측의 직접적인 선동과 더불어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극우 성향의 선동 행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6.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와 헌법재판관 미임명

가. 국회의 3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13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하 ‘재판관’이라고만 한다)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이 2024년 10월 17일자로 임기만료 예정임을 국회에 통보하였고, 퇴임 재판관들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과 정계선을, 국민의힘은 조한창을 각 추천하는 내용의 공문을 2024년 12월 9일 국회의장에게 각 송부하였다. 이에 국회의장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법 제46조의3과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위 선출안들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청문위’라 한다)에 회부하였다.

국회 인사청문위는 2024년 12월 23일 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정계선에 대

하여, 2024년 12월 24일 재판관 후보자 조한창에 대하여 각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2024년 12월 24일 위 선출안들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였다.

국회의장은 2024년 12월 26일 제42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위 선출안들을 상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은 총 투표수 195표 중 가 19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은 총 투표수 195표 중 가 193표, 부 1표, 기권 1표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은 총 투표수 195표 중 가 185표, 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각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같은 날 대통령(인사혁신처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수신자로 하여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재판관으로 선출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나.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및 헌법재판관 미임명

2024년 12월 14일 19:24 윤석열의 직무 정지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한덕수는 2024년 12월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같은 해 12월 24일에는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가 아닌, 일시적·제한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은 지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이 부재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024년 12월 22일 “24일까지 두 법안

을 공표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했으며,³⁴ 같은 해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보고 탄핵 소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덕수는 2024년 12월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³⁵ 당시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퇴임하여 6명만 남은 상황에서, 탄핵 의결에는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덕수는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보류하는 한편, 2024년 12월 27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에 이석준 정책교육장을 임명하는 등 정부 인사 ‘알박기’를 시도했다.

2024년 12월 27일 16:37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2024년 12월 31일 제5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으나, 마은혁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같은 날 최상목은 윤석열 내란 특검법(1차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으며, 2025년 1월 31일에는 다시 내란 특검법(2차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그 이유는 해당 법안들이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고, 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국가 기밀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34 박경준, 〈野 “韓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물겠다”〉, 연합뉴스, 2024.12.22.

35 이승준, 〈속보〉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할 때까지”, 한겨레, 2024. 12. 26.

최상목의 이러한 태도는 지속되어, 2025년 2월 6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여야 합의 부재”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며, 2025년 3월 18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위법 여지를 지적한 법원 결정과 상반되는 행보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21일 최상목을 고발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2025년 3월 24일 한덕수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종료되어 탄핵소추안은 실효성을 잃었다.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후에도 윤석열 탄핵 선고일(2025년 4월 4일)까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다가, 탄핵 가결 이후인 2025년 4월 8일 여야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또한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하며 차기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잠탈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자,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심판은 2024년 12월 31일과 2025년 2월 10일 두 차례의 변론 기일을 열었다. 2025년 2월 27일 선고된 판결에서 ①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점은 인용되었으나, ② 마은혁의 재판관 지위 확인 또는 임명 의무를 명하는 부분은 각하되었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①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인사를 자격 요건이

나 헌법·국회법상 하자가 없는 한 임명을 보류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라고 명시했다. 또한 ② 국회의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단순 다수결 선출이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각 선출 과정에서 교섭단체의 수와 의석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추천 방식이 결정되었을 뿐 여야 합의가 관행이 아니라고 밝혔다. 나아가 ③ 해당 사건에서는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재판관 추천을 합의하고 인사청문회 구성까지 양당 합의 하에 진행되었으므로,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에 불참했다더라도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한 점을 인정했다. 이때 재판관 선출안 제출 이후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정치적 상황이 변했다더라도 기존 교섭단체 합의에 따른 선출안 제출이 무효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한편 ④ 탄핵소추 의결 당사자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재판관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재판관 선출권과 탄핵소추권 행사는 임명·선출·지명권자와 무관하게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므로, 이해당사자의 재판관 선출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7.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경과와 파면결정

가. 탄핵심판 변론 진행 경과

■ 2024년 12월 27일 제1차 변론준비기일

윤석열 측은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발송송달이 적법한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헌법 재판은 일반 재판과 다릅니다. 염두에 두고 심판에 임해주세요”라고 말했다. 이는 헌법 재판에는 엄격한 증거재판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를 밝혀 헌정질서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정형식 재판관은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1) 계엄 선포, 2) 포고령 1호 발표, 3) 국회 봉쇄 및 진입,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으로 정리했다. 이에 국회 측은 “자칫 헌법재판인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 우려스럽다”며 내란죄를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을 기준으로 심판해 달라고 주장했다.

■ 2025년 1월 2일

국회 측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관 체포 시도를 별개의 쟁점으로 두고 탄핵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 2025년 1월 3일 제2차 변론준비기일

윤석열 측은 “모든 것이 계엄 이전으로 회복돼 탄핵심판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며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할 것인지, 형사소송법이 준수되고 있는지, 그리고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 배경에는 ‘무차별 탄핵’이라는 배경이 있었다”며 국무위원 탄핵심판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제2차 탄핵소추 의결서의 ‘피소추자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중략)… 내란죄를 범하였다.’, ‘헌법이 부여한 계엄 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중략)… 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지름으로써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를 했다.’, ‘피소추자는 내란죄(형법 제87조) 등 범죄행위를 통해 …(중략)… 헌법 규정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했다.’는 부분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함으로써 국회 의결 없이 소추안을 변경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측은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법관 체포 등을 별도의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서버 압수, 휴대전화 압수뿐 아니라 새로 밝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 계획을 추가하고자 했다. 이에 피청구인 측은 청구인이 소추의결서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체포 및 구금 계획을 심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도, 2025년 1월 7일 윤석열 측은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 사유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서 내용의 80%가 무효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탄핵심판의 본질은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의결한 탄핵 사유의 사실관계를 형법적 내란죄 여부가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헌재 2017. 3. 10. 2016헌나1)에서도 국회가 뇌물죄 등을 포함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유를 제외하고 나머지 헌법 위반 사유만으로 탄핵을 인정한 전례가 있다. 당시 이 과정을 주도한 인물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었다.

정형식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의 탄핵심판 적법성 주장을 1) 국회법 제130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를 거치지 않음, 2)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3) 탄핵소추권 남용, 4) 보호 법익 결여로 인한 탄핵심판의 필요성 부존재 등 네 가지로 정리하고, 국회 경내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 2025년 1월 13일 변론준비기일

윤석열 측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5년 1월 14일로 예정된 정식 변론 개시와 변론기일 일괄지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윤석열 측은 이러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리인단 전원이 사임할 것이며, 따라서 변론절차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본인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강제주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탄핵심판 절차는 대리인 없이도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 2025년 1월 14일 제1차 변론기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윤석열 불출석으로 인해 1차 변론기일은 4분 만에 종결되었다. 국회 측은 헌법재판소에 선거관리위원회 CCTV 영상을 제출해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고, 계엄 실무편람을 제출해 비상계엄 선포 등이 실무편람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충했다.

■ 2025년 1월 16일 제2차 변론기일

윤석열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었다. 정형식 재판관이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과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고 윤석열 측에 답변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윤석열 측 배진한 변호사는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인용하여 “미국에서 (부정선거를) 조사했다면 곧 발표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조대현 변호사는 “고도의 통치행위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국가원수로서 국민의 국익, 모든 정보를 제일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법원·헌재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대법원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로서, 그 당부를 판단할 권한은 헌법상 계엄 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79. 12. 7. 선고 79초70 재정 참조). 다만 동 판결은 “선포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단서를 함께 명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금융실명제 위헌확인 사건에서 “통치행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은 기본권 보장의 한계를 지켜야 하며,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작용이라도 기본권 침해와 직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특히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같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행위 역시 헌법에 기속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대법원(대법원 1979. 12. 7. 선고 79초70 재정 참조) 논리에 의하더라도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심사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어,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의 요건을 명백히 위반한 무효행위일 경우 사법적 심사의 문이 열려 있음을 확인해준다.

■ 2025년 1월 21일 제3차 변론기일

윤석열이 직접 출석하여 국회의원 체포 시도를 부인했다. 국회 측이 계엄해제 요구 의결 뒤에도 국회의장 공관 주위에 계엄군이 머문 CCTV 영상을 공개하자, 윤석열은 “마치 새벽 2시에 (국회의장을) 체포할 것처럼 (청구인 쪽이 주장) 하던데 내가 볼 때 아마 퇴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 같다”고 발언했다. 문형배 재판관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박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 묻자, “없다”고 대답했다. 윤석열은 또한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사실은 저도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회의장 간 관계에서 ‘빨리 합시다’이려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절차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국회법에 맞지 않는 그런 신속한 그런 결의를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측 차기환 변호사는 포고령이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해산권이 존재했던 군사정권 시절 계엄 예문을 그대로 필사해 작성한 것을 피청구인이 몇 자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들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윤석열은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 장비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며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항들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부정선거 자체를 규명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수 있으면 진행해보라’는 취지였다”며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 확인 차원이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측 대리인 조대현은 “선관위 보안 시스템이 극히 취약해 누구나 해킹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국정원 보고가 있었다”며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 정보만을 강조해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선거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비상계엄 직후인 22:33분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의 행적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는 계엄군이 선관위 서버실을 촬

영한 CCTV 영상을 재생하며 “계엄군이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계엄 선포 4~5분 만에 즉시 침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에는 선거정보센터 서버실에 침입한 군인들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다.

■ 2025년 1월 23일 제4차 변론기일

제4차 변론기일에서는 비상계엄의 목적,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요건 충족 여부, 포고령의 적법성, 비상입법기구의 설치 근거 및 적법성, 국회 침입 사건 등이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윤석열 측은 “대통령이 민주당의 권력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동일한 날 “거대 야당의 독주에 대한 경고 차원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호소를 위한 조치”라는 상반된 설명을 제시하며 모순된 입장을 보였다.

이미션 재판관이 “계엄 선포 목적이 거대 야당에 대한 경고나 부정선거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냐”며 “그러한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질문하자, 김용현은 “비상계엄 요건 충족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 영역에 속하므로 그 부분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여, 계엄이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윤석열 측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강변했다.

정형식 재판관이 “국무위원 11명이 대접견실에 모였을 당시 윤 대통령이 계엄의 구체적 내용, 실질적 요건, 시행 일시 및 지역, 계엄사령관 지정 등에 대해 설명했는가”라고 묻자, 김용현은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국무위원에게 의안을 나누어 주고 알렸다”고 응답했으나, 현장에서 했냐고 거듭 질의하자

“11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설명을 한 것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포고령과 관련하여 윤석열은 김용현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김용현에게 “포고령에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미비점이 많았으나, 계엄이 하루 이상 지속되기 어렵고, 국가 비상사태가 국회 독재에 기인한 것이므로 포고령 1호 등이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는 판단 하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질문했다. 그러나 포고령 제5항에는 “모든 의료인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그 문언 자체로 최소 이틀 이상의 계엄 유지와 포고령 집행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김용현은 이른바 “체포 명단” 14인에 대해 “체포 명단이 아니라 포고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 리스트”라고 설명하며, 포고령에 따른 집행 의사가 존재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김형두 재판관은 “포고령에서 국회 및 지방의회, 정당의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실제로는 국회 봉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였다. 김용현은 “정치활동을 빙자한 국가체제 교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필요적 조치였을 뿐, 입법 활동 자체를 막으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답변하였으나, 동일 변론기일에서 논의된 국회 침탈 및 최상목 문건 등의 정황을 종합하면 국회 기능 자체를 억압하려는 의도가 읽혔다.

최상목 문건의 작성 주체 및 국회 권한 침해 가능성도 문제되었다. 해당 문건에는 ① 예비비 신속 확보 및 보고, ② 국회 관련 보조금·지원금·임금 등 자금 전면 차단, ③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용현은 문건 작성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작성에 사용된 컴퓨터와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에는 “LG 노트북”, “하나 워드 추정” 등 모호한 답변을 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다만 그가 문건 작성자를 자처함에 따라 증거로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고, 문형배 헌법소장 권

한대행은 해당 문서를 증거로 채택하였다.

국가비상입법기구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선 재판관이 “국가비상입법기구 말씀하셨는데 입법 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5공화국 당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하고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라고 질문하였고,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는 “국보위와 연관 지어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으나, 정작 비상입법기구의 구체적 성격과 기능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김형두 재판관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 내용이 왜 필요했습니까? 가운데 거는 왜 쓰셨어요? 저거는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뜻인 거잖아요.”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포고령 1항을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정치활동 금지 조항과 최상목 문건의 내용을 종합하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어 정형식 재판관이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군 병력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파손하고 진입한 필요성이 무엇이나”고 추궁하자, 김용현은 “불필요한 인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였으며,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가 아니라 “요원을 데리고 나오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여 국회의원 체포 시도를 부인하였다.

한편 윤석열 측 대리인 조대현은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이해

하고 있는데 반국가세력이 내란죄로 몰아 대통령까지 구속됐다”고 발언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 2025년 2월 4일 제5차 변론기일

제5차 변론기일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주된 쟁점으로는 계엄 선포의 위헌성,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 부정선거 의혹, 언론사 단수 지시 등이 다뤄졌다.

윤석열 측의 “병력 투입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냐”는 질문에 이진우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해서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위헌·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의 체포 지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국방장관으로부터 체포지시 받은 바 없다”라고 하여 이를 부인했으며, 국회 본관 진입 지시에 대한 윤석열 측의 질문에 대해서도 “지시가 아니라 매뉴얼상 우리에겐 (본관)내부 진입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진우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윤석열은 직접 발언하여 “합수본이나 계엄사령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군 철수 지시를 했다”며 “계엄은 신속히 해제됐으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이야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여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희석시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편, 여인형은 정치인 체포 관련 명단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비록

형사 재판 사항이라 자세히 진술할 수 없다며 탄핵심판에서 직접적 진술을 거부했으나, 조지호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름이 담긴 명단을 전달해 위치 정보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여, 정치인 등 체포 명단의 존재, 위치 추적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 외에도, 홍장원은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이번 기회 싹 다 잡아들여’라며 방첩사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하였고, 체포 대상자 확인을 위해 여인형에게 전화하니 “여 전 사령관이 ‘체포조’라는 워딩을 명확히 사용했다”며, 체포 명단은 “14~16명 정도 됐나,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체포 명단 보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하여, 정치인 등 체포 명단을 인정했다.

그러나 윤석열 측 김계리 변호사는 “간첩들을 싹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다. (대통령은) 구체적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증인(홍장원) 혼자 그렇게 이해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으며, 윤석열이 홍장원에게 비상계엄 당시 전화를 건 것은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가지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해야겠다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 주장했다.

당해 기일에서 부정선거 의혹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 투입을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하였는데, 의혹에 대한 점검성일 뿐이라며 그 심각성을 일축하였다. “내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엉터리 투표지가 많아서 출동을 지시한 것”이라 하였는데, 다만,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있고,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린하라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동한 군인들은)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것이었다”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 2025년 2월 6일 제6차 변론기일

제6차 변론기일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전 경제수석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주된 쟁점은 국회 의원 체포 지시 등이었다.

윤석열은 곽종근의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윤석열이 지시했다는 발언을 직접 반박하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놔두고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국회 의원 체포 시도를 부인했다.

또한, 홍장원의 진술을 정치 공작과 유사하다며 그 신빙성을 낮추려 시도했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는 홍장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라”는 대통령 발언을 증언하고, 곽종근이 김병주 TV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을 ‘공작’으로 규정한 것이다.

한편 곽종근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이 마이크를 지금 이게 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할 때부터 마이크가 이제 명령하다 이게 켜져 있었는데 이걸 안 끄고 그대로 끝날 때까지 그대로 뒀었던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장관 지시하는 것, 대통령 지시받고 막 얘기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명령 하달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예하 전체 인원들에게 라이브로 생방송이 돼 버렸습니다”고 증언했다. 이는 윤석열의 지시와 실행 논의가 실시간으로 모든 부대에 생중계되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는 야당의 예산 삭감이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있었다. 박춘섭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안보 확보와 산유국 지위 획득이라는 혜택이 기대된다”고 말했으며, “야당이 미래 성장동력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 2025년 2월 11일 제7차 변론기일

당해 변론기일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주된 쟁점으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비상계엄의 요건, 부정선거 의혹 등이 다투어졌다.

우선 이상민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으나, 단전·단수 등 내용이 적힌 쪽지를 보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이상민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이태원 참사 직후 탄핵소추되었던 일에 대해 “그 때문에 행안부가 고통당하고 국정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마치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 비극을 체제 전복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조직적인 세력이 있다는 듯이 언급했다. 나아가, “온몸을 바쳐서 막아야 할 대상은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이상민은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국무회의 회의록 등이 작성되지 못한 것을 내란 프레임의 탓으로 돌렸다. “선포 이후 ‘계엄이 내란이다’ 몰아 붙이면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계엄에 동조 혹은 방조하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회의록을 작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서(국무위원의 서명)가 생략된 것에 대해서도, 이상민은 “부서 시점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아주 특수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부서는 사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여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옹호했다.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자꾸 누르니까 아마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간담회를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윤석열은 야당의 행태로 인해 비상계엄을 일으켰다며 그 정당성을 강변하기도 했다. 국회 측이 “대통령이 야당과 타협을 안 해놓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위헌성이 짙다”고 주장하자, 윤석열은 직접 “제가 취임할 때 야권은 선제탄핵을 주장하며 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며 “문명국가에서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을 하는 건 대단히 악의적이고 대화·타협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게 우리 목표라고 하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우리 헌정사상(야당이) 예산을 일방삭감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일방 통과시킨 것은 지난해 12월이 유일하다”고 비난했다.

국정원,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했다. 중앙선관위가 국정원의 조사를 거부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관위 보안 서버’ 점검에 참여한 백종욱이 증인으로 나와 “선관위가 서버 점검에 불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선관위 보안 서버 점검을 5%만 실시한 것은 선관위가 불응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정원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김용빈 역시 국정원과 합동 보완 점검에 대해 “당시 모의 해킹환경을 구성한 것이고 실제 상황에선 데이터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사전 투표함의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거나 개표 과정을 감시하는 수검표를 도입해 왔는데도 계속 부정선거라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하였다.

■ 2025년 2월 13일 제8차 변론기일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석열 측은 홍장원의 증언 신빙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 시도했다. 조태용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른바 체포조 명단을 받아적었다는 메모는 4개 존재하며, 홍 전 차장이 국회와 헌재 등에서 메모와 관련해 설명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증언했다. 또한 “홍장원 차장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그의 교체를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태용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조태용의 증언과 관련해 “조 원장을 보면 느끼는 것이, 대통령인 제가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홍 전 차장에게 ‘조

원장이 부재중이니 국정원을 잘 챙겨라'라고 말하려고 전화했는데 받지 않고 20여분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딱 들어보니 술을 마신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김봉식은 "윤석열로부터 주요 인사 체포나 국회 봉쇄를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조지호 경찰청장이 2차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성현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국회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하여 윤석열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 방해 의도를 부인했다.

■ 2025년 2월 18일 제9차 변론기일

국회와 윤석열 측이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였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 입증을 위해 조지호, 여인형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조지호는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말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고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여인형은 "대통령께서 비상대권, 비상조치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언급을 하시면서 비상대권,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했다.

반면, 윤석열 측은 부정선거 의혹, 중국 간첩 의혹 제기를 되풀이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2021년 제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의 칸에 투표표장이 찍힌 투표용지 동영상을 제시하며 "가짜 투표지로 의심받는 투표지들 사진"이라 하고, "배춧잎 투표지와 본드 떡칠된 투표

지들인데 대법원이 이렇게 붙은 투표지들이 우편 봉투의 풀이나 정전기 때문이라고 판결문에 기재한 뒤 2020년에 제기된 126건의 부정선거 소송에서 다른 판결문들이 따라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과 동시에 사법불신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차기환 변호사는 "지금 현재 방금 봤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하는 입법 활동들이 중국인들의 스파이 활동을 처벌하는 간첩법 개정을 미루고 있고 오히려 중국으로 국가 핵심 기술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그러한 법안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사드 배치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문제 삼는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있습니다"라며 "이러한 상황을 다 종합해 보면 국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쟁이나 사변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위험한 상태이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여 중국 간첩이 대한민국을 위협한다고 선동했다.

■ 2025년 2월 20일 제10차 변론기일

당해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덕수는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느냐는 국회 측의 질문에 한덕수는 "모두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고 걱정했다"고 증언했고, "김 전 장관의 진술과 왜 다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덕수는 "(김 전 장관의 진술은) 제 기억과는 다르다"고 하며, "저는 기본적으로 (당시 국무회의가) 실체적·형식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장원은 체포조 메모를 들고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해 변론기일에서 홍장원은 메모 작성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말을 들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했다.

윤석열 측은 홍장원이 야당에 인사 청탁을 하다 해임되자 탄핵 공작을 벌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증인이 다른 정치적 목적, 증인 입지를 확고히 할 목적으로 (메모를) 작성한 것 아니냐”고 의도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홍장원은 이를 반박하며 “메모지로 어떤 정치적 입지를 만들 수 있냐”며 반문하고, “원본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정치적 활용 목적, 민주당 제공 목적이 아니냐”는 윤석열 측 질의에 “이미 (정보위에서) 관련 사항 다 나왔는데 이후 이걸 활용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냐)”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조지호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관련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초동 대처를 잘 해줘서 덕분에 상황이 아주 빨리 끝났다.”고 말한 것에 대해 특별히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 2025년 2월 25일 제11차 변론기일 (최후 변론기일)

국회 및 윤석열 측 최후 진술이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 또 계엄을 하겠

냐”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건 국민, 국회 보좌관 등 덕분”이라고 윤석열을 비판했다. 또한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 행위를 지켜봤다”며, “호수에 떠 있는 달 그림자도 목격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민이 목격자이고, 전 세계 외신들도 한국 비상계엄 쿠데타를 실시간으로 타전했다”고 강조하여,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필요 충분 조건은 이미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는 윤석열 파면 이유로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계엄 조건을 위반했다”며, “12월 3일 대한민국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던 평온한 하루였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계엄 선포 절차적 정당성도 위반했다”며, “국회의 권한과 권능을 강압에 의해 방해하려고 국회를 무장병력으로 통제, 봉쇄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측이 주장한 예산 삭감 및 탄핵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해명하며, “국가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고, 예산 심의 의결권은 국회의 권한”, “1%도 되지 않는 예산을 깎았다고 비상계엄을 한다면 매년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데 현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또 비상계엄을 할 작정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위헌, 위법한 고위직 공무원들을 탄핵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피청구인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20여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 본인과 아내에 대한 이해충돌이 있는 법안도 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는가”라며 “국회도,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자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는 윤석열에게 직접적으로 “이쯤 되면 피청구인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머리 숙여 사과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국민 사과는커녕 경고성 짧은 계엄이었다느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니 변명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찍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 공로인가, 사상자 없이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 자랑인가”, “계엄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계엄군을 막아선 국회 보좌진들,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은 최후 진술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그는 “북한을 비롯한 외부 주권 침탈 세력과 우리 사회 내부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진술 내내 한국이 ‘망국적 위기’와 ‘국가비상사태’에 처해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대통령의 자리에서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인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다”며 계엄 선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윤석열은 소위 “간첩들이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들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윤석열은 2022년부터 178회에 걸쳐 열린 대통령 퇴진 집회를 근거로 “이 집회에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다.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이라며 “간첩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했다”고 선동했다.

총 1만4811자에 이르는 진술 중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거나 사죄한다는 등의 표현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지지층에 대한 선동으로 일관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동 사태에서는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며 폭력·범법 행위를 두둔했다.

부정선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음모적 주장도 반복되어, “202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에게 해킹당하고도 점검에 응하지 않았고,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 투표용지” 등을 예로 들면서 계엄 당일 군을 선관위에 투입한 데 대해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국회 무장병력 투입 시도의 심각성을 축소하려 “정말 계엄을 하려 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했겠느냐”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데 대해서는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이라는 해명을 제시했다.

나. 윤석열 구속 취소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측이 청구한 구

속 취소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윤석열은 2025년 3월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었으며, 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지 52일 만이었다.

법원은 구속 취소 사유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며, 구속기간 만료 후 검찰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이었다. 둘째, “공수처가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은 있으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는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구속기간은 관행적으로 ‘일’ 단위로 계산되어왔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관행과 달리 이론적으로 ‘시간’ 단위를 적용한 사례였다.

한편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는 직권남용죄가 공수처의 수사 가능 범죄로 명시되어 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가 연관되어 있다고 보인 만큼, 공수처가 내란 수사를 관련 사건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검찰은 이론적인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 형사소송법 제97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포기하였다. 대검찰청은 이후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불복이 법원 판단보다 우선시 될 경우 영장주의 원칙과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10년 전 검찰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었다. 2015년 6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의 2012

년 구속 집행정지 즉시항고 위헌 판결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구속 집행정지’뿐만 아니라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조항 삭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당시 검찰은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위헌 판결을 구속 취소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구속 취소 즉시항고 조항을 삭제하는 것 역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10년 만에 검찰은 이 입장을 완전히 번복했다.

당시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구속집행정지 결정과는 달리 사유가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출석을 보장할 만한 조건을 부과할 수도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구속 취소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집행정지 사유라는 것은 부모의 장례 참석이라거나 그런 한시적인 것들이라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집행정지의 의미가 없어지는 사유가 대부분인데, 구속 취소는 그냥 그 자체가 종국적인 신병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검사의 즉시항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여기에도 그냥 유효하다 그렇게 보기 어렵고 더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라고 부연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법리는 윤석열에게만 선택적으로 적용되었다. 대검찰청은 2025년 3월 11일 ‘구속 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라는 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보내 “각급 청에선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라고 명시한 바 있다.

다. 안개 같았던 윤석열 탄핵시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2025년 2월 25일 제11차 변론기일 종결 이후 선고까지 38일이 소요되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린 사건이 되었다. 탄핵소추안 가결일인 2024년 12월 14일부터는 111일이 경과한 상태였다.

초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11일)과 유사하게 3월 초 선고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예상 시기가 넘어도 선고일이 발표되지 않자 불확실성이 커졌다.

법조계와 언론은 탄핵 인용, 5대 3 정족수 미달로 기각, 또는 소추 요건 미비로 각하와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지연되며 5명의 재판관이 인용, 3명이 기각 의견을 가진 데드락 상태라는 추측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2025년 4월 18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장기간 탄핵 심판이 계류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윤석열 탄핵소추의 다섯 가지 쟁점—비상계엄 및 포고령 발령,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은 하나만 인정되어도 파면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각하나 데드락 가능성이 거론된 것은 선고 장기화에 따른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다.

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결정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일,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2025년 4월 4일 11:22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통한 헌정질서에 대한 공격이 민주공화국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반임을 보여줌으로써 붕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된 것이다.

만일, 5:3 구도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지 못하였다면 문형배, 이미선 퇴임 이후 탄핵심판을 선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장기간 국정 마비가 발생할 수 있었다. 탄핵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은 제2, 제3의 비상계엄 선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40~50년 전의 유신 시대 내지는 제5공화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 및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위와 농성을 하였으며, 이에 호응하여 위로부터의 헌법 질서 파괴 시도가 저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Ⅱ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행위의 위헌·위법성

1. 파면의 판단기준 :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행위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마련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탄핵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때”라고 좁혀서 해석하고 있다. 나아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구체적 의미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거나, 대통령이 법 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라고 한 바 있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기준에 기초하여, 과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에 임박한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 선거법의 정당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행위,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가 헌법 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여 법 위반의 중대성을 부인하였다.

한편,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는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친분 있는 사인의 국정 개입을 허용한 행위, 그 과정에 기업에 출연을 요구한 행위,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문건을 유출한 행위 등)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하여 파면을 결정하였다.

이에 이어 2024년 12월 국회가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에서 문제되는 법 위반행위의 핵심은 아래와 같이 헌법 제77조 제1항 등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한 행위, 이를 통해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이는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제기된 법 위반행위와는 달리 헌법에서 정한 국가긴급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권한행사인 계엄 선포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수행하는 군정통치의 수단을 실현하겠다는 것으로서 헌법질서 자체의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행법 체계 내에서 더 이상의 중대한 헌법위반을 상정하기 어려운 정도의 극단적인 반헌법적 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가. 실체적 요건 위반

1)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헌법 제7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계엄 선포권은 제76조와 함께 인정되는 이른바 국가긴급권 조항으로, 국가에 전쟁이나 내란, 경제공황 등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발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의 유지가 위태롭게 된 때, 국가를 보전하고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동할 수 있는 비상적 수단으로서의 국가긴급권이다. 이는 정상적인 헌정질서의 예외로 진입하는 특단의 비상(非常)적 수단으로 본질상 극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우리 헌법은 이러한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긴급권의 내용, 효력, 한계 및 그에 대한 통제수단을 분

명히 함으로써 그 남용과 악용을 막아 국가긴급권이 헌법보호의 비상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엄격성을 담보하고 있다(헌재 1994. 6. 30. 92헌가 18;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

만약 이러한 헌법적 제약을 지키지 않고 국가긴급권이 발동됨으로써 정상적인 헌정질서의 중단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헌법이 상정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계엄법 제2조 제2항은 헌법 제77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헌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여 보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 ②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
- ③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상계엄은 국가의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경력(警力)만으로는 이를 수습할 수 없는 경우에 병력으로써 기존 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적·예방적으로 선포할 수는 없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 선포할 수도 없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2)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여부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의미

먼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데(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 이에 관하여는 헌법에 따라 계엄 선포권을 부여받은 윤석열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판단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윤석열에게 판단 재량을 인정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주관적 확신만 존재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윤석열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경우에는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그러나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 오후 10:20경 대한민국이 이에 해당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처해있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나 대적행위를 한 때부터 그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와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사변’이란 국토를 침략하거나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봉기한 모든 형태의 무장 반란 집단의 폭동을 의미한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국민담화에서 스스로 비상계엄의 목적이 ‘중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당시 정치 상황

과 사회 상황이 ‘중북 반국가세력들’이 전시, 사변을 일으킨 상황에 해당한다거나 그 밖의 적과 교전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물론 나아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고,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역시도 전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적의 침입, 국토를 침략하거나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이 없는 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 질서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어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이러한 국가비상사태에 처해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음은 물론,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향후 심판 절차에서 드러난 윤석열의 주관적인 인식도 이에 이르는 합리적 판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반론에 대한 검토

이 쟁점에 관해 윤석열은 국회가 ① 다수의 고위공직자를 탄핵하거나 그 탄핵을 시도함으로써 사법 업무 및 행정 업무를 마비시켰고, ② 위헌적이거나 국익에 반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이 높은 법안을 추진하거나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반대하였으며, ③ 2025년도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으며 안보 공백을 초래하였고, ④ 더불어민주당이 200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를 열고, 안보·외교 분야에서 반국가 행위를 한 것이 이에 해당하고, 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⑥ 북한, 중국, 러시아 등과의 이른바 ‘하이브리드전’ 상황 하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주장 ① 탄핵, 탄핵시도 관련

윤석열의 대통령 임기가 개시된 후부터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행정안전부 장관 1인, 검사 12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3인 및 그 직무대행 1인, 감사원장 1인에 대하여 재발의를 포함한 합계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탄핵소추는 헌법이 국회에게 부여한 권한이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사되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일 뿐, 국가가 소추안을 의결한 행위 자체에 어떠한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윤석열의 주장을 국가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 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라고 선해해 볼 수 있겠으나, 이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정치적 책임의 문제일 뿐이며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정지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법률에서 정한 직무대행체제가 존재하는 이상 곧바로 국정의 공백이나 마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탄핵소추 의결만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위 22건 중 6건은 철회되었고 3건은 폐기되어 그 중 5건만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탄핵소추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그 중 3건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단지 2건의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 질서, 사회질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므로 이를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는 없다.

주장 ②, ③ 위헌적 법안 추진 또는 여당안 반대 관련

국회의 입법권 및 예산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헌법 제53조는 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에게 국회의 입법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실제로 윤석열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률안 다수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거나 그 공포를 보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상황이었으므로, 국회의 입법권 행사로 인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예산심의권 역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의 행사이고, 국가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권한 행사 범위에 포함된다. 정부는 국가가 의결한 예산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준예산,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정부 운영을 꺾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해서는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아직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여당과 야당의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단지 대통령이 국가가 어떠한 의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만으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주장 ④ 야당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활동에 관하여 보건대, 오늘날의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는 여러 정당들이 각자의 논리와 정당성의 우위를 통해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복수정당 체제를 기본 바탕으로 하므로(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뿐 아니라, 단순히 여당

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시하거나 비판·견제하는 것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계 법령에 의해 대처할 수 있는 것이거나 시민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토론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이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장 ⑤ 부정선거 의혹 관련

윤석열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단순히 어떠한 의혹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경우, 선거소청 또는 선거소송을 통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고(공직선거법 제219조, 제222조), 공직선거법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하는 등의 경우에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243조, 제249조 등) 이러한 의혹이 있는 경우 형사 수사 절차를 통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

또한 윤석열의 주장과 달리, 선관위는 2023년 7월경부터 2023년 9월경까지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받으면서 점검 대상으로 요청된 장비를 전부 제공하였으며, 2020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

지, 접착제가 묻어 있는 투표지, 투표관리관 인영이 뭉개진 투표지 등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감정을 거쳐 법원의 확정판결로 그 의혹이 해소되기도 하였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5028 판결 등 참조).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에 정보보안 업무 담당자의 PC만이 선거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보안을 강화하였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정당 참관인의 입회하에 두 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 점검을 시행하였다. 부정선거에 관한 윤석열의 의혹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나 정황이 없음에도 막연하고 주관적인 의혹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주장 ⑥ 북한 등의 하이브리드전 관련

윤석열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우리나라가 북한 및 중국, 러시아와 같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들이 종래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전면전 이외에 비정규전, 테러, 심리전, 여론전, 사이버전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전개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여 공격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전’ 상황이었다고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윤석열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단순한 추상적인 가능성을 넘어서서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비군사적 공격으로 인하여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하이브리드전’

과 같은 비군사적 공격에 대하여 국회에 병력을 동원하여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 소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긴급 담화문에서 윤석열은 직접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파렴치한 중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거나, 2024년 12월 12일자 담화문에서는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비추어 위와 같은 탄핵 심판에서의 윤석열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직면했던 소위 ‘여소야대’ 구도(국회의 다수 정당과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달라지는 현상)를 극복하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정치적 반대파를 일소에 척결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1987년 이후 현행 헌법 하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여소야대’ 상황에 대해 대화, 타협 등을 통한 정치적 해법이 아니라 국회에 강제력·물리력을 행사하여 이를 타개하고자 한 것으로서, 현행 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새로운 헌법 질서를 창출하고자 한 것이다. 즉, 이 사건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법 질서내에서 용인될 수 없는 사법 파괴행위를 통한 새로운 국가 비상 상황의 창출이라 평가해야 할 것이다.

3) 병력 동원의 필요성 여부

비상계엄은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선포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1항). 그리고 비상계엄은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때,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선포될 수 있다(계엄법 제2조 제2항).

즉 병력의 동원이 위기 상황을 수습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거나 경력(警力)만으로 위기 상황이 수습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비상계엄이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만으로도 윤석열이 이 사건 계엄을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 정부나 법원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침해, 정지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예외적 효과를 고려할 때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체적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위헌·위법성이 명백하다.

나. 절차적 요건 위반

1)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헌법적 의의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의 행사는 권력의 집중과 평상시 권력 통제 장치의 부분적 해제를 수반하므로, 이를 남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발동은 헌법에 의해 엄격히 통제된다. 이러한 점에서 비상계엄은 그 본질상 ‘경고’에 그칠 수 없으며, 헌법 질서에 초래할 수 있는 해악을 고려할 때, 헌법 및 법률에 규정

된 절차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2) 국무회의 심의 절차 위반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반이 있다(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 제5조 제1항).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그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이익을 반영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만일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실질적으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을 정도로 형식적이었다면 이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헌법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문언상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순한 자문기관에 해당하는 미국식 대통령제의 각료회의(Cabinet Meeting)나 의결기관에 해당하는 의원내각제의 내각(Cabinet)과는 다른 심의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³⁶ 즉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결정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국무회의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업무상 지시를 하는 자리라고 볼 수 없으며, 국무회의 구성원이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해당 안전에 관하여 실질적인 토의를 거쳐 논의하는 경우만이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돕는 ‘국무회의의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36 (사)한국헌법학회 편, 헌법주석[국회, 정부], 경인문화사, 2018, 805-806쪽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비상계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환경부 장관 김완섭,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는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지 못한 점,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도 국무회의를 개최한다는 연락이 아니라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한 것만으로 적법한 국무회의 소집 통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윤석열이 주장하는 국무회의는 5분 정도 진행되는 것에 불과하였는데, 개의 선포, 의안 상정, 제안 설명, 토의, 산회 선포, 회의록 작성 등 통상적인 국무회의 절차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 윤석열은 계엄의 필요성, 시행 일시,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참석자들 사이에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마련된 대통령령인 국무회의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의록을 작성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참석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도 법령에 따른 국무회의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국무회의 진행 절차 위반 역시 문제가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면, 공공기관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정부조직법 제12조 제4항에 근거하여 규정된 대통령령인 국무회의의 규정은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국무회의의 간사가 되어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동 규정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 그런데 윤석열

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국무회의 사전 공지를 받지 못해 참석하지도 못했고, 행정안전부 역시 해당 국무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못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헌법재판소에 발송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위 국무회의 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국무회의 심의 사항은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의 개최 및 종료 선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요지 기록 또한 일체 남아있지 않다고 하므로, 이러한 사정들 또한 위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성립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계엄 선포 절차 위반

윤석열은 계엄 선포는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절차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헌법 제82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국무위원들에게 나누어 주기는 했으나 여기에 장관들이 부서를 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윤석열의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부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그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한 계엄법 제3조도 위반하였다.

나아가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이 역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도 위반하였다. 윤석열은 제1차 대국민담화를 방송에 송출하는 방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국회 통고 의무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적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국회의원이 방송을 통해 인지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연속적인 절차 위반과 관련하여 윤석열은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비상 상황이어서 이를 준수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윤석열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여있을 때 비상계엄 선포문 10부를 복사하여 김용현에게 전달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자로서 헌법 및 법률이 정한 절차가 모두 준수되는 것을 담보할 책임이 있고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하는 절차인 점을 고려할 때 무시될 수 있는 절차라고 볼 수는 없다.

3. 계엄포고령 발령의 위헌·위법성

가. 이 사건 포고령의 법적 성격 및 효력 : 직무집행행위 해당성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김용현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을 검토하여 포고령의 내용을 확정하였고(2025. 1. 23. 탄핵심판 4차 변론 내용 참조), 이렇게 작성된 포고령 초안을 김용현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엄사령관 박안수가 직접 서명하여 2024년 12월 3일 23:23경 발령하였다.

이를 통해 발령된 이 사건 포고령은 계엄법 제9조 제1항, 제14조 제2항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참조). 포고령은 결코 단순한 상징이 아니며, 모든 국민에게 포고령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영장 없는 체포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다.

더욱이 윤석열은 포고령을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통령령이 내심의 의사로서 이를 상징으로만 삼으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포고령이 시민들과 그 밖의 국가기관에 대해서 갖는 효력과 효과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윤석열은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야간 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한 점, 국회 활동 금지를 의도한 점, 계엄사령관 및 경찰청장에게 직접 지시한 정황 등을 볼 때 포고령을 실제 집행하려고 한 의사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 포고령 제1호 제1항에 부합하는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은 국회 출입 통제를 실시하였는 바, 윤석열의 주관적인 진의가 이와 달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명한 대통령령으로서의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실체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사건 포고령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반행위의 집합체이다. 이는 단순히 특정 법 조항 몇 개를 어긴 수준을 넘어, 아래와 같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과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법심사가 필요하다.

나. 헌법 제77조 제5항 및 대의민주주의 등 위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침해

국회는 입법부이자 국민을 대표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의사 결정기관으로서, 그리고 국정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이 사건 포고령은 헌법에서 그 내용과 한계를 정하고 있는 계엄권의 행사 범위를 넘어서 국회의 활동을 정지한다고 명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을 파괴했다.

헌법은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관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국회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포고령은 국회의 모든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을 무력화하였다. 이는 단순히 국회의 기능을 일시 정지시킨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입법부를 군사력의 위협 아래 강제로 마비시킨 행위로서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붕괴시킨 것이다. 윤석열은 국회의 '반국가적 활동'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나 예산심의권 행사까지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의 모든 합법적 권한 행사를 금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특히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국회의 통제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에서, 행정권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

여 헌법 제44조 제1항에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계엄법 제13조에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회기 중 인지 여부 및 국회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더욱 강화된 형태로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헌법 제77조 제5항이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하여 계엄이라는 비상 수단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포고령을 통해 국회 활동 자체를 봉쇄한 것은 이러한 헌법적 통제 장치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위헌성은 더욱 중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포고령은 헌법 제77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국회가 제 기능을 충실히 실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 및 계엄의 상황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 침해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지방자치는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 통치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 영역은 어떠한 경우라도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헌재 2014. 6. 26. 2013헌바122).

그러나 이 사건 포고령은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제도인 지방자치와 정당 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 지방자치는 중앙 권력을 분산하고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소멸시킨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이다.

라.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

이 사건 포고령이 모든 정당의 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 요소인 정당 제도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의 설립만이 보장될 뿐 그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자유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므로, 위 조항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헌재 2004. 12. 16. 2004헌마456; 헌재 2014. 1. 28. 2012헌마431). 또한 당대표, 원내대표 등 정당 기관의 활동은 정당 자신의 활동이므로 당연히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그런데 김용현은 이 사건 포고령 발령 이후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각 정당의 대표 및 원내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을 지시하였는 바, 위 지시는 윤석열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각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당원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 사람들의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각 정당의 활동도 제약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행위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이라는 명분 아래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고

표출할 통로를 마련하고자 한 헌법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이 사건 포고령은 이처럼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표출될 수 있는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림으로써 민주적 여론 형성 과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실상 특정 정치 세력의 독주를 가능하게 하는 반헌법적 조치이다.

마. 국민주권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 전체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 민주 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기타 헌법상의 여러 원칙도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다(헌재 1989. 9. 8. 88헌가6).

헌법재판소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우리 헌법 질서의 최고 기본가치로 파악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이해하며, 가장 엄중한 기준인 정당 해산 사유가 탄핵 사유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그러나 이 사건에서 나타난 윤석열의 비상계엄 및 포고령 선포의 목적이 정치적 반대자의 절멸(絶滅) 시도에 있다는 점은 정치적 반대자와의 공존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반대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주의 혹은 절대주의를 대변한다. 국민들이 선거에서 다수당으로 선출한 야당과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단정하고, 이를 적대한 나머지 국가비상권을 정치적 반대자 절멸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했다는 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물론 그 핵심을 구성하는 권력분립원리와 대의제 민주주의 위반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이 사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의 핵심은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박탈했다는 점에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표현하거나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를 통해 설파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인 보장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포고령은 민주주의 제도를 마비시키는 것을 넘어, 주권자인 국민의 입과 귀를 막고 손발을 묶는 조치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포고령 제2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국민의 사고 및 견해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를 제한한다.

또한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예정하여, 누구든지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진실임이 증명된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을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는 시민이 처벌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과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의견 형성에 영향을 행사하고 자신의 견해를 관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더욱이 시민의 정치 활동과 정부 비판을 일체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은 국민을 국가의 주인이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은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보장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포고령은 이러한 비판 자체를 ‘사회 혼란 조장 행위’로 규정하여 범죄시함으로써, 국민주권의 이념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나아가,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을 가능하게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인 영장주의를 형해화한 것이다. 이는 사법부의 통제를 완전히 배제하고 행정 권력이 자의적으로 인신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이다.

바.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 위반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 선포 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 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77조 제3항에 근거한 ‘특별한 조치’는 당연히 헌법이 정하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 합헌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만 취할 수 있으며, 헌법상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의 경우에는 취할 수 없다. 또한 헌법 제77조 제3항의 ‘특별한 조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해져야 하므로, 그 수권에 의하여 제정된 계엄법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상 요건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발령된 이 사건 포고령은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이 사건 포고령은 계엄 제도 자체의 법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했다. 헌법과 계엄법이 비상계엄 시 기본권 제한을 일부 허용하는 것은, 그 목적이 ‘군사상의 필요’가 있을 때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기 위함이라는 대전제하에 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전쟁이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또는 계엄의 전제 조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기본권 제한 조치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설령 대한민국에 비상사태가 초래된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영장주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조치

도 포함되는지,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하거나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할 수 있는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는 제한을 할 수 있는지, 행정권과 사법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군의 관할하에 둘 수 있는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다. 헌법 제77조 제3항은 전시, 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특별한 조치가 다른 헌법적 한계를 모두 초월하는 무제한적인 조치 또는 최대한의 조치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국가긴급권의 특성상 헌법 제77조 제3항의 특별한 조치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상황 요건에 비례하여 취해져야 하며, 영장주의, 권력분립, 기본권 제한의 한계와 같은 헌법의 기본원칙들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은 계엄법이 허용한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 계엄법에 규정되지 않은 정당 활동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 심지어 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한 것은 명백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다. 이는 국가긴급권이라는 명분 아래 법률이 부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이자,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군 통수권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남용한 위헌적 행태의 극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포고령은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 조치로 정당화될 수 없다.

사.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침해

이 사건 포고령 제4항에서는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계엄법 제9조에서 단체행동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 것에 근거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위에서 검토한 바와 마찬가지로 계엄법 제9조는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군사상 필요가 없는 경우에까지 파업·태업·집회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계엄법 제9조에 근거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포고령은 ‘사회혼란을 조장하는’이라는 요건을 부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문언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예상하기 어렵고 사실상 법집행기관에 의하여 자의적인 금지 또는 전면적인 금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체행동권을 과잉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아. 영장주의 위반

우리 헌법이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를 통하여 채택하여 온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법관의 구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데에 있다(헌재 2018. 6. 28. 2012헌마 191).

또한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가 인정되어 특별한 조치로서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속한 시간 내에 법원에 의한 사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가5; 헌재 2013. 3. 21. 2010헌마132).

그런데 윤석열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일체의 정치활동’,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행위’ 등 광범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어떠한 제약 조건도 두지 아니하고 법원의 구체적 판단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사후적 심사장치도 두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가긴급권이 발동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켜져야 할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자.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 위반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헌법 제74조 제1항).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헌법 제74조 제1항은 대통령이 헌법과 국군조직법 등 법률이 정하는 한계 내에서 국군통수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관련하여 헌법이 정하고 있는 한계 중 하나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이다(헌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정치권이 국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거나, 국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헌법 제5조 제2항에 위반되고,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군통수권을 행사하여 국군을 이용하는 것은 헌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하는 등의 의도로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다. 이러한 윤석열의 행위는 국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여 국군통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헌법 제5조 제2항 및 제74조 제1항에 위배된다.

차. 소결

윤석열이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발령하게 한 이 사건 포고령은 헌법 제5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였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 제8조, 국민주권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였다.

또한 이 사건 포고령은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이처럼 헌정질서의 근간을 침해하여 그 전복을 도모한 윤석열의 행위는 적극적이고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러한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여 본다면, 이는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 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그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된다.

III

윤석열 파면 결정과 의미

1. 국가긴급권 헌정사를 통해 바라본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 · 중대성

가. 국가긴급권에 관한 헌정사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은 총 9회 선포되었다.

	선포사유	선포기간	선포지역
1	여수 · 순천 ¹⁰ · 19사건 ³⁷	1948. 10. 21.~1949. 2. 5. (108일)	여수 · 순천
2	제주 4 · 3 사건 ³⁸	1948. 11. 17.~ 12. 31. (76일)	제주도
3	6 · 25 한국전쟁	1950. 7. 8.~1953. 7. 23. (3년16일)	전국 또는 지역
4	4 · 19 혁명	1960. 4. 19 ~ 6. 7. (50일)	서울 등 5개 도시 → 전국 확대
5	5 · 16 군부쿠데타	1961. 5.16 ~ 5. 27. (12일)	전국
6	6 · 3 항쟁	1964. 6. 3. ~ 7. 29. (57일)	서울 일원
7	10월 유신	1972. 10. 17. ~12. 13. (63일)	전국
8	부마항쟁	1979. 10. 18. ~10. 27. (9일)	부산, 마산
9	10 · 26 사건	1979. 10. 27.~1981. 1. 24. (456일)	제주도 제외 전국
		1980. 5. 17. 24:00	전국 확대

³⁷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약칭: 여순사건법)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51호, 2025. 1. 7., 일부개정]

³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약칭: 4·3사건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64호, 2024. 1. 30., 일부개정]

먼저, 비상계엄의 역사를 보면, 첫 비상계엄은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제주 4·3 사건이 있었던 때에 발동하였는데, 계엄법이 제정된 1949년 11월 24일 이전에, 즉 계엄법이 제정되지 않았을 때임에도 일제 강점기 계엄법³⁹을 적용하여 위헌 논란이 있었다.

또한,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이 일어나자 이승만 대통령은 15시를 기해 서울지역에 계엄군을 보내 학생 시위를 막도록 했지만, 같은 날 13시 30분경 발포로 사망자가 나오자 오후 1시로 위헌성 시비를 막고자 소급하기도 하였다.

박정희 군사정권 하에서는 4차례에 걸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는데, 군사 쿠데타 당일인 1961년 5월 16일 아침 9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장면 정권을 해체하였다. 그리고 한일협정반대투쟁이 한창이던 1964년 6·3 대규모 학생 시위가 일어나자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영구집권을 위하여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다.

박정희 군사정권 말기, 1979년 10월 16일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부산 지역 시위가 격화되자 1979년 10월 18일 0시를 기해 부산시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위가 확산된 마산 창원 지역에는 10월 20일 위수령이 발령되었다.

39 '일본은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을 모방하여 정도가 덜 심각한 긴급사태(전쟁상태)인 臨戰地境과 정도가 심각한 긴급사태(합위상태)인 合圍地境으로 하여 1882년 계엄령을 제정하였다. 臨戰地境戒嚴에서는 지방행정사무 및 사법사무 중 군사에 관한 사건에 한하여 계엄사령관이 관장하고, 合圍地境戒嚴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모든 지방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는 권한을 가졌다.' 백윤철, [일제치하에서 계엄법 The Martial Law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2012.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시해 사건이 발생하자 10월 27일 04:00를 기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가, 12·12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1980년 5월 17일 24:00을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후 5·18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였으며, 1980년 9월 1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대회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나. 역대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

통상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은 포고령을 발령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직후 발령된 포고령 제10호, 비상계엄 하 1980년 8월 4일 발령된 삼청교육대 관련 포고령 제13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해당 포고령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의 '정치권력의 위기'를 면할 목적으로, 또는 집권을 목적으로 행해진 것일 뿐 당시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른 요건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먼저, 대법원은 1972년 10월 17일 유신정권을 위한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 포고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계엄 포고 1호⁴⁰의 내용은 1972년 10월 17일 대

40 <1972년 10월 17일 계엄포고 1호>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하기 사항을 포고함.

1.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3.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4. 정당한 이유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행위를 금한다.
5.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이하 생략…)

통령 특별선언을 통하여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엄 포고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구 헌법·현행 헌법·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다.

또한, 박정희가 부마민주항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1979년 10월 18일 선포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 제1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계엄 포고 제1호의 내용은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계엄 포고 제1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 상황과 사회 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엄 포고 제1호는 유신헌법과 구 계엄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계엄 포고 제1호의 내용은 유신헌법 상으로도 인권 최대보장 및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현행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아가,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발령한 포고령 10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20. 선고 2019재고단3).

이 사건 계엄 포고의 내용은 국군보안사령부 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

수사본부 본부장이던 전두환 등이 군사 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장악한 다음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폭력적 불법 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발령된 것으로 위헌이다.

대법원은 1980년 8월 4일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 포고 제13호 삼청교 육대 관련 포고령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2. 28.자 2017모107 결정).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다. 박정희 군사정권 하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단

소위 10월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에 의해 명문으로 사법심사를 배제한 긴급조치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70).

국가긴급권의 행사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고,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 배제조항을 둔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은 입헌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일 뿐 아니라, 현행 헌법이 반성적 견지에서 사법심사 배제조항을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행 헌법에 따라 이 사건 긴급조치들의 위헌성을 다룰 수 있다.

‘북한의 남침 가능성의 증대’라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상황인식만으로는 긴급

조치를 발령할 만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주권자이자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이 유신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정을 주장하거나 청원하는 활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긴급조치 제9호는 국민주권주의에 비추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총화를 공고히 하고 국론을 통일하는 진정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긴급조치 제9호는 국민총화와 국론통일이라는 목적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또한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⁴¹

긴급조치 제1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1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1호에 의하여 침해된 위 각 기본권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이다.

⁴¹ 긴급조치 제4호에 대해서, “유신헌법” 제53조에 기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와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폐지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다.”라고 판결하였고(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서도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다.”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판결).

라. 이 사건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 발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역사적으로 비상계엄 및 포고령, 긴급조치, 또는 긴급재정명령 등에 대한 사법심사 여부, 그 발동 요건 및 내용의 위헌·위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수차례에 걸쳐 판단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사법심사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국가긴급권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를 보전하고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헌법 보장의 한 수단이지만,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므로,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 계엄의 선포에 관해서는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그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절차는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비록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에서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 선포행위가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가긴급권을 남용한 역사에 대한 성찰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피청구인은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었음에도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으므로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엄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피청구인은 헌법 제77조 제4항, 제82조,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 제3조,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 역시 위반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함으로써 헌법 제5조 제2항 및 제74조 제1항도 위반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서울고등법원은 1979년 10월 27일 계엄 포고 제1호가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고 판단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0재노26 판결 참조), 대법원 역시 위 계엄 포고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던 1979년 10월 18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 포고 제1호 등을 위헌·무효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대법원 2018. 12. 13.자 2015모2381 결정; 대법원 2018. 12. 28.자 2017모107 결정;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6185 판결 참조)고 적시하면서, 포고령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1979년 10월 27일자 계엄 포고 제1호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다. 이 사건 포고령은 국회,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며,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하고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고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전면적으로 침해하였으므로 그 법 위반의 정도가 엄중하고,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역시 매우 크다.

즉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발령되었던 위헌·위법한 계엄포고들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발령한 이 사건 포고령 역시 위헌·위법한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전면적으로 침해하였으므로 그 법 위반의 정도가 엄중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1952년 계엄 선포, 박정희 전대통령의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71년 12월 27일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2년 10월 17일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이른바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참조), 1979년 10월 18일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을 탄압하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참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 이른바 12·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년 5월 17일 당시 대통령 등을 강압하여 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선포(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참조)가 있었고 위 계엄 선포에는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계엄 포고령이 수반되었다.“고 일갈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국가긴급권 규정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1987년 헌법에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한을 폐지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국가긴급권 행사를 남용하였다면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국가긴급권의 심각한 남용은 유신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된 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권의 발동에서도 나타났다. 긴급조치는 9차례에 걸쳐 발동되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남용되었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헌에서 이를 폐지하고 비상조치 권한(제51조)으로 대체하였으며, 1987년 10월 29일 제9차 개헌에서는 비상조치 권한도 폐지하였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

대통령 유고를 이유로 1979년 10월 27일 선포된 계엄이 1981년 1월 24일 해제된 이후,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 명령’이 발령된 외에는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가긴급권이 행사되지 않았다. 이는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국민의 헌법수호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지면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였다. 앞에서 본 것처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과거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함으로써 입헌민주주의를 공고히 하

였다. 피청구인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하였다.

3.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계엄 선포의 본질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남용의 재현임을 명시하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피청구인에 의한 국가긴급권의 남용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한 외교적, 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국익을 중대하게 해하였음이 명백하다. 결국 우리의 헌정사적 맥락에서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이 국민에게 준 충격과 국가긴급권의 남용이 국내외적으로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어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여러 권한들 가운데서도 ‘국가긴급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상시의 헌법질서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비상적 권한이므로, 그 행사에 있어서 헌법적 한계가 특히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헌재 2015. 3. 26. 2014

헌가5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본래 그러한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계엄 선포권을 여소야대의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것과 다름없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해 파면 결정을 하였다.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 중 하나인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만약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시금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으로서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등을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4. 소결

헌법재판소의 이번 파면 결정은, 피청구인 윤석열의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행위가 우리 헌정사에서 반복되어 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의 재현이고, 그러한 국가긴급권 행사는 대한민국 헌법 체제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IV

내란행위에 대한 사법적 평가

1.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⁴²

형법 제87조⁴³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고 각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모의참여 등 중요임무종사자, 부화수행 또는 단순 폭동관계자 등으로 구별해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다.

내란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다. 누구나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의 정범으로 처벌되고, 다만, 폭동을 일으켜야 하므로 다수의 참여가 필요하고,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정도의 조직화된 다수인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죄의 행위는 폭동이고, 통설에 의하면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의 폭행과 협박은 최광의로 사람에게 대한 것과 물건에 대한 것이 모두 포함된다. 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체의 수단과 방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례의 태도도 동일하다(대법원 1980.

⁴² 이하 주석형법을 참고함 : 주석형법, 형법각칙, 한국사법행정학회, 2024. 8. (제6판)

⁴³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이하생략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관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5. 20. 선고 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10·26 사건),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12·12 및 5·18 사건),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통진당 사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다수인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목적범에서 목적의 달성 여부는 범죄의 성립과 무관하지만, 고의 이외에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이란 대한민국 영토에서 불법적으로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을 말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은 형법 제9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란죄는 집합범으로서 관여한 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 보호를 공고히 하고, 우두머리가 아닌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한 자, 모의 참여나 지휘에 준하는 중요임무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한 자도 법정형이 동일하며 부화수행하거나 단순 폭동에 가담하기만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나. 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

1) 비상계엄 선포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행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 선포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이 있고,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을 통해 사회와 국정 등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법률로 요건이나 절차 등을 미리 정해 이를 따라야 한다.

헌법의 위임에 따라 계엄법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고,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등(계엄법 제2조 제2항)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할 수 있고, 경비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다(계엄법 제2조 제3항).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선포할 수 있으므로 적과 교전하고 있는 급박한 상태이거나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 등 일반적인 기관이나 기능만으로 국정이 마비돼 이를 정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최후적인 방법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윤석열은 국회가 정부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2024년 11월경 여인형에게 계엄 관련 현행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여인형은 1980년 5월 17일자 계엄포고령 제10호 전문을 확인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하였으며, 2024년 12월 1일 문상호, 노상원, 정성욱, 김용균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서버 확보를 준비하였다.

이어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조지호, 김봉식 등을 불러 계엄 선포 시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계엄 선포 계획 및 국회, 방송사 MBC, 여론조사 기관 등 10여 곳을 접수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서도 전달하였고, 김용현은 707특수임무단 대원들에게 헬기 출동을 지시하였다. 조지호와 김봉식은 안가를 나온 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합의하였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통제를 위한 경찰 기동대를 준비하였다.

윤석열은 계엄 선포 준비를 마친 후 2024년 12월 3일 20:55경 한덕수에게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알리고 국무위원을 모아보라고 지시하였고, 한덕수, 김용현, 박성재, 김영호, 조태열, 조태용 등이 있는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통보하고 순차적으로 대통령실에 도착한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 최상목 등 11명의 국무위원 앞에서 약 5분간 비상계엄 선포 취지를 설명하였다.

윤석열은 이와 같이 준비한 후 2024년 12월 3일 22:25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유로 정부 관료를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가 남발되고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갈등, 특히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횡포로 사법 업무와 행정 업무가 마비되고 정치적 편향성이 높거나 위험적인 법안이 추진되고 이 과정에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행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며 정부 예산안이 삭감되었기 때문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윤석열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전횡이나 입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 국회의원은 이러한 윤석열의 주장에 동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결정에서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내란 혐의의 형사재판에서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합

법적이고 정당한 계엄 선포로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수의 정당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갈등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전제되어 있으며, 법령에서 정하는 여러 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으며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소추 등 법령이 예정한 절차를 따른 것이 일부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험적이라고 볼 수 없다.

2) 위험적인 계엄포고령 발령행위

윤석열은 불법한 비상계엄임이 확인된 1980년 5월 17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포고령 제10호 전문을 토대로 마련한 계엄포고령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표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윤석열은 여인형, 문상호 등과 상의해 미리 계엄포고령을 준비하였다.

계엄사령부가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고, 포고령 제1호는 서문과 6개조 및 별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와 지방의회의 활동을 비롯해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계엄령 하에서 예정된 내용이 아니고, 가짜뉴스나 허위선동, 반국가세력 등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야당을 억압할 의도를 드러냈으며, 전공의를 비롯한 파업중인 의료인이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고 해 의료인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포고령에서 금지하는 내용에 의하더라도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예정한 비상사태에서 발표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박탈하는 것이고 이는 국회의 심의표결권인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

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포고령의 위헌성은 분명해 보인다.

나아가 국민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주권주의의 본질이라 할 것인데, 이를 포괄적·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 할 것이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계엄사의 통제하에 두고 전공의와 의료인의 파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 등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이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위헌이다.

이렇듯 위 계엄포고령은 과거 위헌으로 확인된 1980년 5월 17일자 이회성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포고령 제10호 전문을 바탕으로 수정한 것이므로 윤석열 스스로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인 행위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계엄포고령의 내용도 위헌적인 내용을 다수 담고 있으므로 비상계엄 선포와 별도로 계엄포고령도 그 자체로 위헌이라 할 것이다.

3) 경력과 병력으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무력화 시도

윤석열과 김용현은 국회 담당 외곽을 경찰이, 국회 본관 외곽을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 본관 내부를 육군특전사령부가 각각 통제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회 7개 출입문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김봉식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김봉식은 조지호에게 보고해 국회를 차단하기로 하고, 경비안전계장에게 국회로 들어가는 사람을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경비안전계장이 국회 각 문 앞에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을 봉쇄하였다. 윤석열은 조지호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였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침투조를 이끌고 국회 외벽의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하였다. 수도방위사령부는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등의 출입을 차단하고, 707특수임무단은 헬기를 이용해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내부로 진입하였다. 광종근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은 윤석열로부터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홍장원은 윤석열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싹 정리해”라며 체포를 지시받고 여인형으로부터 체포 대상 명단을 들었다. 국회로 들어간 계엄군은 국회 본관의 조명 차단기를 내려 국회 본관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하였다.

헌법과 계엄법에 의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 권능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국회가 견제자로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호전될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경찰력과 군병력을 국회에 출동시키고 국회 출입문을 차단해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의 국회의 출입을 막아 계엄해제요구권을 무력화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헌법 기구인 국회의원의 계엄해제 요구권한을 무력화 내지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내란행위에 해당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위법한 압수·수색

김용현은 2024년 12월 1일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광종근에게 계엄 선포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민주당 사, 여론조사 꽃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였다. 특히 김용현은 여인형에게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증거를 확보하면 계엄이 국민적 지지를 얻을 것이라며 선

거관리위원회 전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문상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계획처장 등 대원 10명에게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내부로 진입해 서버실 위치를 확인하고 후속 지원부대가 올 때까지 그곳을 점거하라고 지시하였고, 계획처장 등은 실탄을 소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당직실로 진입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화선을 차단한 후 서버실과 통합관제실의 위치를 확인하고 점거했다. 대원들은 주요 설비의 사진을 촬영하고 전산실을 폐쇄하고 내부 조직도를 촬영해 문상호에게 전송해 체포 대상이 될 주요 직원 30여명을 선정하였다. 계엄군은 과천청사에 110명, 수원 연수원에 130명, 관악구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47명 등을 배치해 약 3시간 동안 해당 기관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문상호는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에게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포승줄 등을 사용해 다음날 오전 출근하는 직원 30여명을 체포하여 수도방위사령부 병커로 이송할 것을 지시하고 그 과정에 “체포 대상인 인원은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므로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고 지시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등의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이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을 주장한 것은 자신과 여당을 지지한 일부 국민들의 부정선거 음모론의 정당성을 찾으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헌법 제114조 제1항)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하에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 아니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해 주요 설비를 파악하고 사진으로 촬영하며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한 것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내란행위에 해당한다.

5)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헌·위법성

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은 계엄 선포를 위한 형식상 절차 수행을 위해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국무위원을 모아보라고 하여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을 소집했으나 국무회의 개최를 선언하지 않았고,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무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국무총리가 나머지 국무위원을 소집해 정족수 11명이 모였으나 역시나 국무회의가 진행되지는 않았고 윤석열은 약 5분간 비상계엄 선포 취지만을 설명한 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거나 논의하는 기회를 갖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헌법 제89조), 국무위원들을 전화로 부르기는 하였으나 형식적으로 국무위원을 소집하였을 뿐 국무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급급하였으므로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헌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사법적 평가

1) 헌법 제87조에 의한 내란행위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대하여 대통령이 고위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내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맞서고 있으나,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이 계속중이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지위에 따라 내란죄로 처벌된다(형법 제87조). 윤석열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데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군과 경찰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원이 국회로 출입하는 것을 막았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해 주요 시설을 촬영하고 관리하면서 직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시키는 등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야 하는 여인형 이하 군인과 조지호 이하 경찰을 통제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장악하려고 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군병력과 경찰력을 통해 집단적으로 폭력행위를 일으키려고 시도하였으므로 이는 내란죄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석열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일부 국회의원을 체포할 것을 지시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일반인은 물론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의 국회 출입 자체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심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시도하고, 이와 별도로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일시적으로 장악하였다.

헌행법은 해석상의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정의하고 있고, 국헌문란의 목적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형법 제91조). 헌법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엄중한 조건을 명시하면서 계엄령 하에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허용하였을 뿐이다. 국회의 권능

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나 조치를 할 수 없고 비상계엄하 상황이 호전된다면 지체 없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통해 평상시로 회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계엄령 하에서도 국회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으므로 윤석열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분명히 드러난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으므로 윤석열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이 인정되고, 내란죄의 고의를 인정함에도 부족함이 없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원과 주요 인원을 체포하려고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탈취하려고 하는 등 다수인이 폭동을 일으키도록 지휘하였으며 내란죄의 미수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집단적 폭력행위인 폭동으로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헌법상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77조).

계엄법 제2조 제2항 역시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

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고, 제11조의 2(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는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석열은 야당 주도로 정부 관료를 탄핵소추하고 정부 예산안 삭감 등을 한 국회나 야당이 반국가세력이고, 행정부를 마비시킨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헌법이나 계엄법에 따르면 야당과의 정치 대립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윤석열은 국회와 협치하고 국회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국회를 통제하고 힘으로 억압해 장악하려고 계엄을 선포하였고, 계엄 선포 후에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등의 방법으로 계엄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후에도 윤석열은 계엄 선포가 합당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거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이었던 지위를 망각한 채 국정 혼란을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라거나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전무하므로,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행위 역시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은 윤석열의 왜곡된 욕망일 뿐이다.

특히 윤석열은 대통령이므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윤석열 탄핵 결정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바와 같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인정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더라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내란죄의 책임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계엄법상 적과 교전 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나,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적과 교전 중도 아니고 큰 사변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으며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만한 사건이 일어날 일말의 가능성이 없던 상태였다.

계엄법상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었는지도 불분명하거나와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평온한 일상에 찬물을 끼얹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엄청난 선전포고였다. 윤석열은 국회의 독재로 인하여 정부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지극히 윤석열의 주관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일 뿐이다. 윤석열이 좌지우지하지 못하였을지는 몰라도 모든 국가 기능은 법령이 예정한 일반적인 범주 안에서 제 역할대로 잘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하여 국민 누구도 다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거나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소하기도 하나, 내란죄에서의 영토 침점의 목적이나 국헌문란의 목적은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주관적 요건으로서 영토 침점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덕분에 고작 150분만 비상계엄 상태 하에 놓여 있었으므로 그 지속 시간이 짧아 내란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하고,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과 군을 배치 또는 투입하였으며 수백 개의 영현백을 준비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윤석열이 처음부터 150분 동안만 비상계엄을 유지하려던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 가사 150분만 불법적인 비상계엄 하에 있었다 하더라도 시간의 장단이 내란죄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으며,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가 비상계엄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에도 두어 시간이 더 지날 때까지 비상계엄 해제 선포를 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는 상황을 모든 국민이 목도하였다. 계엄법에서는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계엄법 제11조 제1항), 윤석열은 제2, 제3의 계엄을 준비라도 하듯이 두어 시간 동안이나 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미적거렸다. 사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윤석열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된 사실을 안 뒤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무시라도 하듯이 제2의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윤석열이 내란죄의 우두머리로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윤석열이 헌법과 계엄법상 비상 계엄의 요건이 부재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과 경찰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을 체포하려고 하고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일반적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한 것은 명명백백 내란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윤석열은 이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2) 윤석열에 대한 외환⁴⁴ 혐의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론 북한을 도발하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10월경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하고 대북 비방 메시지를 담은 빠라를 살포했다면서 중대한 군사정치적 도발로 규정하고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이후 오물 풍선을 대한민국에 수 차례 보내 남북 관계가 긴장 상태에 놓였었다.

2024년 12월 7일경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발생한 평양 무인기 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기획한 것이고 내부자의 제보를 받았다고 발표해 큰 논란이 되었고, 2024년 12월 10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지난 8월 드론작전사령부의 드론 보관 컨테이너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 증거인멸의 목적인지를 질문해 의혹이 더욱 커졌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고 일부러 소음이 큰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다’는 의혹을 촉발했던 무인기(경기도 연천에 추락)가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같은 기종이라고 보도했다. 윤석열의 지시로

44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시작되었고 드론에 대북 전단을 장착하는 훈련이 실시됐다는 군 내부 증언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윤석열의 지시라고 들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확보됐다. 이에 내란 특검은 윤석열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갈등을 조성하고 이를 계엄의 빌미로 삼으려 했다는 외환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⁴⁵

외환유치죄(형법 제92조)에서의 외국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이고, 여적죄(형법 제93조)에서의 적국이나 준적국 이외의 국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⁴⁶ 준적국은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말한다(형법 제102조).

일반적으로 외환의 죄가 성립하려면 북한이 외국이나 적국 또는 준적국에 해당해야 하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이중적 지위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북한을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독립한 국가로 취급할 수 없고,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헌재 1997. 1. 6. 92헌바6 참조).

45 JTBC 2025. 7. 1.자 뉴스-단독 '무인기 납품' 실무자 조사.

46 주석 형법 / 편집대표 : 노태약 / 한국사법행정학회 / 발간연도 : 2024.08 (제6판)을 참고함 (이하 동일함)

이러한 이중적 지위론에 의하면 북한은 외국이나 적국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간첩죄를 적용할 때 적국에 준하여 볼 수 있다(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다1498 판결).⁴⁷

또한 외환유치죄가 성립하려면 외국과 통모하여야 하고, 여적죄가 성립하려면 적국과 합세하여야 하는데, 윤석열의 무인기를 발견한 북한의 태도가 환영하거나 반기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외국과 통모하거나 적국과 합세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결국 북한의 이중적 지위론에 의하면, 북한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인정되나 외환죄에서의 적국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므로, 외환유치죄나 여적죄 등이 성립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군용물건제공이적죄가 성립하는가이다. 군용물건제공이적죄(형법 제95조 제2항)는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用に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하면 성립된다. 평양에 보낸 무인기가 군용물건에 해당한다면 군용물건제공이적죄가, 일반 물건이라면 물건제공이적죄(형법 제97조)가 성립할 것이다. 그러나 군용물건제공이적죄도 적국에 제공해야 하므로, 북한이 반국가단체이고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군용물건제공이적죄가 성립하려면 새로운 이론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일반이적죄(형법 제99조)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여기서 군사상 이익이란 군사 활동에 도움이 되는 유형·무형의 일체의 이익을 말하고, 침해나 공

47 '북한은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36 판결).

여행위는 직접이거나 간접이거나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⁴⁸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였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윤석열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비상계엄의 발미를 마련하고 나아가 실제로 북한의 남침을 도발하려던 것이라면 대한민국에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일반이적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비상계엄의 발미를 마련하려고 한 것이라면 북한의 군사상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어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반국가단체에 제공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일반이적죄가 성립될 수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2025년 11월경 윤석열에 대하여 불법 계엄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불법 침투시켰다는 내용으로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기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2. 계엄 선포 과정에 참여하거나 방조한 사람들의 행위

가. 국무회의 참석자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비상계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

의하였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형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총 11명의 국무위원을 소집하였다.

여기서는 주요 가담자인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행위가 윤석열이 행한 내란죄의 공범이 되는지 살펴본다.

1)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내란 방조 혐의 공소장을 분석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는 2024년 12월 3일 당일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 등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건네받고, 비상계엄 선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윤석열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했다.

한덕수는 윤석열 탄핵 심판 및 본인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줄곧 본인은 2024년 12월 3일 당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만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한덕수는 적극적으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확인하고 계엄 문건을 다른 국무위원들과 돌려 보는 등 계엄을 반대하지 않고 계엄 선포에 동의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만약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반대 의사를 통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좌절시키려던 것이라면 한덕수에게는 내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보면 한덕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서 윤석열을 전혀 만류하지 않았고, 현행

48 주석 형법 / 편집대표 : 노태악 / 한국사법행정학회 / 발간연도 : 2024.08 (제6판)

법상 절차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국무위원을 소집하였고,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다른 국무위원들과 서로 돌려보면서 이를 이의하거나 반대하는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므로(헌법 제86조 제2항)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국무위원들을 통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한덕수는 그러한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라는 지시에 대하여도 한덕수가 이를 반대하거나 막아내지 못하였고 막으려고 했는지조차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계엄이 해제된 이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한덕수는 CCTV 영상과 다른 내용으로 위증하면서 국무회의에서 자신이 비상계엄을 만류했다고 거짓말을 해 자신의 책임을 은폐하려고 하였고, 이후 국민의힘당 당원으로 새벽 시간에 가입한 후 국민의힘당의 대통령 후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청산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결국 한덕수는 내란 주요임무종사죄⁴⁹가 성립하므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⁴⁹ 한덕수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로 기소한 것에 대하여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2)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로부터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단전과 단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2024년 12월 4일 자정경 다수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에 경찰이 투입될 예정이므로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를 요청하면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허석곤이 김조일 소방청 차장에게 즉시 전달하고, 김조일 소방청 차장은 황기석 서울 소방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과 관련하여 경찰청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하라고 순차적으로 지시하였다. 당시 소방청 관계자들은 단전·단수가 소방 업무인지, 소방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등에 대해 회의를 했다고 이상민에 대한 형사 재판에 출석해 증언하였다.

이상민은 윤석열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이상민은 한덕수와 마지막까지 회의실에 남아 문건을 들고 논의하고 있고, 그 문건에 단전·단수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만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하게 의결되지 않았다면 해당 언론사들의 언론의 자유는 단전과 단수를 통해 사실상 침해될 것이었음이 명약관화하고 그 파장은 언론기관 장악과 통제로 이어졌을 것이다.

2024년 8월 1일 이상민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

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⁵⁰

이상민의 혐의 중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많으므로 단전·단수를 통해 언론사를 통제하려고 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이상민에게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윤석열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윤석열과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한 후 준비하였으며, 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양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수행하는 등 계엄 선포 전반을 주도하고 계획하였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표할 계엄포고령도 여인형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지휘하였다.

윤석열 대리인 차기환 변호사는 포고령은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이라면서 “포고령은 김용현이 국회해산권이 존재했던 군사정권 시절 계엄 문언을 그대로 필사해 작성하고 윤석열이 몇 자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김용현은 국방부장관이면서도 계엄 관련 현행법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현행법을 무시하고 친위쿠데타를 준비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비상계엄 선포 후 체포 명단에 있는 14인을 체포할 것을 지시하였고, 비상계엄 선포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진입을 지휘하기도 하였으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이후 김용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재투입하기도 하였으며, 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라면서 계엄 선포를 수사·재판하려는 시도가 내란이라는 궤변을 벌이는 등 준법의식이 없는 위험한 인물로 평가된다. 실제로 김용현은 비상계엄 요건 충족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 영역에 속하고 그것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김용현은 비상계엄 전반을 계획하고 준비하였으므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맞추려는 것일 뿐 실행할 의사가 없다는 등 형사소송 계속 중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기타 내란행위 동조자들

1) 군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결정한 후 구체적인 계엄에 대한 계획은 군인들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2월 1일 12:00경 문상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김용군 등은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서버 확보를 통해 부정선거 증거를 획득하려는 임무를 논의하고, 김용현은 광종근에게 반국가세력 척결을 명목으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기관, 민주당 당사 등을 확보하고 봉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계엄 설계자로 알려진 노상원은 불명예로 군에서 전역한 상태였으나 정보계통의 경험을 살려 현역 군인들과 부적절한 접촉을 이어갔고, 비상계엄에도 깊게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직업이 무속인으로 알려져 있는 노상

⁵⁰ 한국일보, 2025. 8. 2. 국무회의 CCTV에 포착된 이상민 위증 정황..기사

원은 민간인임에도 노상원의 수첩에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관련된 중요 내용이 발견되었다. 노상원은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알선수재 혐의로 형사 소송 중이고, 위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¹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은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 외벽의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였으며 국회의 전원을 차단하려고 시도하는 등 국회의원의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심의의결을 방해하려고 하였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부정선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기도 하는 등 계엄하 윤석열의 수족이 되어 주었다.

반면에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군인도 있었다. 조성현 육군 대령은 임무를 부여받고도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건너지 말고 대기하라고 명령하였고, 김형기 육군 중령 역시 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김문상 육군 대령은 3차례에 걸쳐 긴급 비행 승인을 보류하거나 거부해 헬기의 국회 진입을 42분 지연시켰다. 선관위로 출동한 방첩사령부 중간 간부들은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 자체 판단해 전원 복귀 지시를 내렸다.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병력들이 국민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이행한 덕분에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을 결의할 수 있었다. 이에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군인들에게 1계급

특별진급이라는 정부 포상이 있었다.⁵²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이행한 수 많은 군인 덕분에 국회가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계엄해제 요구안을 결의할 수 있었고, 국회로 찾아온 비무장 국민들이 단 한명도 다치지 않았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겼다.

2) 경찰

조지호, 김봉식 등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 및 계엄군의 협조 요청을 듣고도 그것이 필요하고, 합당한 것인지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상명하복과 계급이 중요한 군이 아닌 경찰이 대통령의 요청을 단순히 명령과 지시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조지호와 김봉식은 협의하여 계엄군 요청에 응하기로 하였고, 계엄군이 국회를 차단하려는 것을 알면서 국회 출입구를 막고, 경찰 차벽을 설치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회에 출입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경계가 허술한 곳을 찾아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야 했던 당시 상황은 SNS 등으로 당일 일반 시민들에게 전파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상민의 단전·단수 지시에도 협조했다.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의 꽃 등 단지 윤석열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위 기관들에 출동해 사회를 혼란시켰다. 2024년 12월 3일은 해당 기관들에 경찰을 투입해야 할 구체적인 위법적인 상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평온한 날이었다.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위 기관들을 침해하려고 한 것이므로 치안이나 질서 유지, 범죄

51 뉴스1, 2025. 10. 29. 전 정보사 대령 “노상원, 진급 도와주겠다고 전화…현금 건네”(종합)

52 연합뉴스, 2025. 9. 23. ‘위법·부당 명령 거부’ 박정훈·조성현 등 군인 11명 정부 포상

수사 등과 거리가 먼 것이었다.

조지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으로부터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하여 위치추적을 요청받았고, 체포 대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에게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윤석열로부터 계엄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도 받았다.

여인형은 조지호에게 정치인 체포 작전에도 경찰의 협조를 요청한 것 이외에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 정치인 등 15명의 위치정보 확인,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경비인력 지원 등 구체적인 요청을 전달하였다.

위법·부당한 지시를 받고도 그 지시의 위법·부당함을 전혀 고민하지 않은 조지호는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등에게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는 지시를 따르도록 하였다.

군 뿐만 아니라 경찰까지 나서 군을 도와 불법한 계엄에 협조한다면 단시간에 기관들이 함락되고 선량한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체포될 위험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안전망을 마련해야 함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었다.

3) 법무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에게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정황이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 간부 회의를 개최하고 법무부 산하 기관 상황실장에게 수용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속한 상황관리 보고체계를 유지하며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 대기를 지시하였다. 이에 법무부 교정본

부장은 영상회의로 ‘수용 여력 확인’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유력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체포해 구금하려고 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박성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포고문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시 국무회의 심의 후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 등 5명의 서명을 받아야 계엄포고문이 유효하게 성립하나, 박성재의 발언으로 계엄포고문이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국정원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20:22경 홍장원에게 전화해 비화폰을 챙기라고 당부하였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하라”며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테니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여인형은 정치인 등 유력인사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을 요청하였다.

홍장원은 체포 명단을 받아적다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메모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체포 명단에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국민의힘당 대표 한동훈,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홍장원은 사안의 심각성과 부당함을 인지하고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하려고 하였으나 조태용은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태용은 행정각부의 장이 아님에도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자리를 함께 하여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해제요구안 결의 등에 대해 세세하게 알

고 있었으나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장악하기 위하여 군과 경찰은 물론 국정원까지 통제 하려고 하였으나 예상외로 국정원이 윤석열의 지시와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음으로써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었다.

다.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선포 해제요구 결의에 불참한 행위

추경호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과 직접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돕고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고 당일 국민의힘 당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 대다수 계엄 해제요구안 심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못된 명분을 제공하였다.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요구안 심의에 불참한 것은 국회의원의 각 개별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당이 집단적으로 계엄 해제를 방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후 국민의힘당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탄핵 불가를 당론으로 정하고 윤석열 탄핵소추안 심의에도 불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수습하는 단계에서도 국민의힘당은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국민의힘당의 위헌 정당 여부 또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3. 윤석열 석방의 문제

가. 구속 취소 및 즉시항고 포기

윤석열은 ‘뜬금없는’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마비시키려고 하였으며, 계엄해제요구안이 결의된 이후에도 제2의 비상계엄을 준비하려는 정황을 보이며 대한민국의 헌행법과 제도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

이후 극우집단의 유튜브 방송에 빠져 경찰의 소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결국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에 이르렀다. 윤석열은 체포영장 집행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고, 윤석열의 대리인과 대통령 경호처, 일부 군부대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1차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없었다. 다행히 2차 체포영장 집행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협동 작전으로 대통령 관저를 압박해 윤석열을 어렵사리 체포할 수 있었다. 윤석열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며 검찰 조사를 모두 거부하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윤석열은 구속되었으나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수사를 위한 강제 구인도 세 차례나 실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판사는 2025년 3월 7일 윤석열의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구속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였고 윤석열의 석방이 확정되고 말았다.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인용하고 검사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사법부와 검찰이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동조한 것이라는 역사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검찰은 2015년 6월 17일 헌법재판소의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 위헌 판결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구속 집행정지와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삭제 필요성에 대해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위헌 판결을 구속 취소에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구속 취소 즉시항고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즉시항고 포기는 검찰의 기존 입장과도 모순되는 것이다.

또한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 구속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유지되어왔다. 윤석열에게만 법 해석을 달리 해 구속기간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할 타당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귀연이 거의 유일무이하게 윤석열에게만 선택적으로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것은 대단히 위법한 법해석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구속기간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야 하나 그러한 법개정 움직임을 찾을 수 없다. 법은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윤석열을 위해 윤석열에게만 달리 적용한다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며 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여야 한다.

나. 재구속 이후 강제 구인 과정에서의 문제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는 자유롭게 만남을 이어갔다. 결국 윤석열은 위

법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만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구속되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16차례에 걸쳐 재판에 불출석하였고 윤석열에 대한 형사재판은 변호인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증인신문 및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은 관종근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만 출석하는 등 선별적 출석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사와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266조의 8 제1항) 피고인에게 출석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이 규정의 반대 해석상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예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형사소송법 제63조 참고)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다.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윤석열은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수의를 입지 않은 채 강제 구인에 저항하는 등 일반 피의자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행을 이어가고 있다. 수사 와 재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출석할 경우 어느 정도로 강제구인이 가능할지 논란이 있다.

윤석열처럼 속옷만 입은 채 강제구인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끌고 나올 수 있는지, 강제로 끌고 나오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공론의 장을 거쳐 절차를 마련하고 출석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V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의
헌재재판관 임명부작위 및 권한 남용

1.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의 위헌성

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2024년 12월 14일 19:24 윤석열의 직무 정지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한덕수는 2024년 12월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⁵³ 당시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퇴임하여 6명만 남은 상황에서, 탄핵 의결에는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덕수는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보류하였다.

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발언에서도 헌법 재판관 임명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궁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의 견해는 국민의힘당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 그동안 권성동 대

53 이승준, <속보>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할 때까지”, 한겨레, 2024. 12. 26.

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 대행으로선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⁵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4. 12. 23.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가’에 대한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⁵⁵

대법원은 또 “대법원장이 11월 26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기로 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12월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고 설명해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상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의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로”고 요청했다.⁵⁶

헌법재판소 역시 한 권한대행이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57 58}

한편, 이와 관련하여 우리 모임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⁵⁹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서도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를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행정권을 총괄하고 정부를 조직하며 행정을 지휘·감독한다. 그런데 헌법 제71조에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대하여 단순히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통령의 지위에 따라 권한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학설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권한을 전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임시적인 현상 유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대통령의 지위에 따라 직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표결처리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 심판 청구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기관 내부에

57 연합뉴스, 2024. 12. 25. 대법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 헌법원칙 위배 아냐”

58 당시 국민의힘 당의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등이 제기한 주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로 나누어 해석하면서, 장관 임명이나 법안 재의요구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나아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하여 임명동의안이 표결처리되는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59 민변 2024. 12. 23.자 성명 <https://www.minbyun.or.kr/?p=61573>

54 한겨레, 2024. 12. 24. 여권 핵심 “한덕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않기로 입장 굳혀”

55 법률신문, 2024. 12. 24. 대법원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 헌법원칙 위배 아냐”

56 연합뉴스, 2024. 12. 25. 대법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 헌법원칙 위배 아냐”

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토론과 대화에 의하여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려는 노력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국회의원은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7. 7. 26. 2005헌라8, 헌재 2007. 10. 25. 2006헌라5, 헌재 2020. 5. 27. 2019헌라6 등 참조).^{60 61}

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대한 논쟁

1)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쟁 개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정당한 이유도 없이 임명하지 않고 버티자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⁶²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무총리에 준할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였다.⁶³

2)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보는 입장-신분기준설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이 없고,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수준의 '단순 대리자' 역할만 하는 것이므로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무총리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수(151석)로 보아야 한다거나⁶⁴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상 대통령 역할을 하지만 신분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국무총리이므로, 총리 탄핵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⁶⁵가 있다.

또는 대통령 탄핵 의결에 가중 정족수를 둔 것은 탄핵소추권을 신중하게 행사하게 하려는 것이고 권한대행은 긴급한 상황에 대통령의 권한을 일정하게 대행하는 것일 뿐 그 지위는 여전히 국무위원, 국무총리의 지위를 가지므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에서 가중 정족수가 요구되지 않거나,⁶⁶ 대통령은 선거 등을 통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취득함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였다는 점, 정치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가중 정족수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단지 후임 대통령 선출 전에 임시로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신분을 획득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 정족수에 의하면 될 것이어야 한다는 견해⁶⁷가 있다.

3) 대통령 의결정족수인 2/3이상 이어야 한다는 의견-직무기준설

조선일보는 2024. 12. 20.자 기사에서, 2016년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과 관련하여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로 탄핵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2016. 12. 9. 자 뉴스원 기사에 의하면,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정족수로 탄핵할 수 있다는 입장⁶⁸과 권한대행이긴 하나 총리이니 일반 탄핵요건에 의한다는 입장으로 견해가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권한대행자는 차상의 직급자가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직을 보유

60 민변 2024. 12. 23.자 성명 <https://www.minbyun.or.kr/?p=61573>

61 민변 2024. 12. 24.자 성명 <https://www.minbyun.or.kr/?p=61595>

62 제6차 개헌(소위 3선 개헌 1969. 10. 21.)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 요건을 대통령의 상징적인 지위나 정치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여소야대 대통령인 경우에도 탄핵의 남용에 의하여 시달리지 않도록 가중하였다. 지금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전례는 없다.

63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SYfVlIgLI6uJZaA2PGXcgTJnUs-z2R9T-UE4nQmFNQ/edit?usp=sharing>

64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

65 김선택 교수

66 신미용 변호사

67 국회입법조사처

68 김하열 교수

하면서 그 상위직을 대행하므로 겸직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로 된다.

4) 소결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직무'가 아니라 '신분'을 기준으로 하여 국무총리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인 1/2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국무총리는 헌법 제71조에 의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데, 권한 범위에 대하여 여러 학설(전권행사설, 현상유지설 등)이 있으나 학설과 실무는 현상유지설에 따라 권한대행의 역할을 소극적이고 현상 유지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권한대행이 선출직이 아니어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권한대행자의 직무를 대통령의 직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둘째,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하는 것으로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헌법 제65조 제2항은,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다른 공무원들과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달리 가중하고 있는바, 대통령의 직무 권한은 대통령의 신분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점에서,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대통령 신분'에서 비롯되는 의결정족수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위 헌법 규정 취지에 반한다.

셋째, 국회입법 조사처가 비록 2016년에는 권한대행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했지만, 2020년 현안분석에서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단지 후임 대통령 선출 전에 임시로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신

분을 획득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정족수에 의하면 될 것으로 보임'이라고 입장을 정리한바 있다.

참고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나 선례가 없기 때문에 입법 공백으로 인한 해석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를 탄핵하여도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히효는 아니므로 공정력이 있어 유효하게 통용될 수 있고, 대법원이 회의장의 행정행위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기각결정 (헌재 2025. 3. 24. 선고 2024헌나9)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하여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한 탄핵심판청구 적법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또한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여기에 해당 공직의 박탈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①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②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③ 공동 국정운영 관련, ④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재판관 5인의 기각의견, 재판관 1인의 인용의견, 재판관 2인의 각하의견으로 결정하였다.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의 헌법재판관 임명부작위 부분 의견: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로부터 헌법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하여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하였고, 이는 헌법상 탄핵소추사유인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

다만,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⁶⁹

69 재판관 김복형 기각의견: 피청구인의 구체적 작위의무는 피청구인이 국회로부터 헌법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은 이후 비로소 발생하는데, 헌법재판관 선출 통지 후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의사를 밝힌 적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국회 선

재판관 정계선의 인용의견: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각하의견: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결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상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그 권한이나 직무의 수행은 해당 지위에 근거한 것이어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함께 포섭되어 판단되는 경우, 탄핵소추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가중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출 3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국회가 그 자격요건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합성을 법정의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을 통해 검증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독자적인 자격 및 선출과정 심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되어 국회와 대통령 간의 재판관 임명에 관한 권한 분배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 아니라는 비판을 자초하였다는 비판이 있다.

2.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의 위헌성

가.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2024년 12월 27일 16:37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그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최상목은 윤석열 내란 특검법(1차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으며, 2025년 1월 31일에는 다시 내란 특검법(2차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또한 최상목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2025년 1월 1일자로 정계선, 조한창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였으나,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들에 의한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의 부작위가 계속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기본권 주체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논의 되었다. 우리 모임은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추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대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나.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국회는 2025년 1월 3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행위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하는 결정 및 마은혁이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2025헌라1).

아울러 국회는 2025년 2월 14일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청구(2025헌라1)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다. 권한쟁의 사건 선고(헌재 2025. 2. 27. 2025헌라1)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결정하였다.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의의가 헌법기관의 침해된 권한을 회복하여 헌법적 권한 질서와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헌법이나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등에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관한 절차적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권한과 관련하여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그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와 같이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받고 있는 데에 대한 방어적 행위로서 해당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의 별개의견: 권한침해확인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데, 국회는 심판계속 중 2025년 2월 14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을 의결하면서 국회가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이 부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

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승인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심판청구의 소송요건 흠결은 보장되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 및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임명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고 있다.⁷⁰

별개의견에 대한 비판 및 가처분 기각에 대한 탄식이 있었지만 조속히 전원일치의견의 권한 침해 결정이 이루어져서,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의 작위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라. 우리 모임에서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우리 모임 또한 헌법 재판관 임명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을 준비하면서 청구인 자신의 헌법 재판과정에서의 재판청구권 침해를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기왕에 헌법재판소에 심판이 계속 중인 청구인을 확보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심판청구일(2024년 12월 31일) 기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명의 의무가 있는 자는 한덕수, 최상목이므로 적절하게 두 사람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였다.

70 다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지위확인을 구하는 청구 등을 기각하였다. 즉, 국가기관의 부작위가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 또는 국회로 하여금 재판관 임명을 명하는 결정을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 경우의 헌법소원은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므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여야 하는 바, 이러한 요건을 논증하고 재판청구권의 침해를 주장하였다.

3.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및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헌법재판소가 2025년 3월 24일 한덕수 탄핵심판청구(헌재 2025. 3. 24. 2024헌나9)를 기각함으로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5년 4월 8일 임기가 4. 18.에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문형배, 이미션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하 ‘이 사건 후보자’)를 지명하였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면 대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임명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로까지 이어졌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

한 행위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2025헌라1)이 있었던 것이 권한대행의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였다면, 위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하 ‘이 사건 지명’)은 이 사건 후보자의 적격성에 더하여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였다는 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권한의 범위는 헌법이나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권한대행이 최소한의 행정 유지 외에 정무적 영역에 해당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나 헌법 제71조 내지 다른 법률이 권한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만큼 제약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일시적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고려할 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사건 지명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아니하였으면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였다는 점에 더하여, 지명된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이후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나. 한덕수의 재판관 지명에 대한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1) 김정한 변호사의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김정한 변호사는 2024년 12월 9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24헌마1131)을 청구하여 해당 심판이 계속 중임을 전제로 2025년 4월 9일 이 사건 지명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위 헌법소원심판을 재판하게 되어 자신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지명 및 국회에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5헌마397).

그리고 같은 날 위 2025헌마397 헌법소원심판의 중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 사건 지명,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절차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2025헌사399).

2) 우리 모임의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우리 모임도 2025년 4월 9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사건 지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이므로 권한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자격이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그에 의한 재판은 2025년 1월 7일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2025헌마19)을 제기한 청구인들의 공정하고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25헌마405), 같은 날 위 2025헌마405 헌법소원심판의 중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 사건 지명행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2025헌사406).

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6일 김정환 변호사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본안심판에서 문제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가처분을 인용한 뒤 중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는 기존 결정에서의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에 기초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이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보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사건 지명으로 임명의사를 공표하고 임명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임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중국결정 선고 전에 이 사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해당 가처분신청의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나면 신청인이 적시에 이 사건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이 사건 후보자가 헌법재판의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이 사건 후보자

가 관여하여 중국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어 이를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인용과 기각 시의 비교형량에 있어서도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재판관 2명의 임명이 지연될 것이나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는 점, 가처분을 기각하여 이 사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처분을 인용한 뒤 중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사건 지명에 기초한 국회에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절차의 속행을 본안사건(2025헌마397)의 중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⁷¹⁾을 하였다.

라. 가처분 결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은 이 사건 지명이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헌법

71 위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하여 국무총리실은 “정부는 현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중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재판관 임명에 관한 추가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채 2025년 4월 18일 문행배, 이미션 재판관이 퇴임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5일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6월 26일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였으며, 7월 24일 두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결원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재판관 임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임명된 이후 해당 재판관에 대한 적격성을 다룰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긴급성이 인정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후보자를 임명하게 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지 아니한 자에 의하여 헌법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 포함되는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다만 가치분의 성격상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고 이 사건 지명에 기초한 임명절차의 속행만을 중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하고 말았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촉발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논의를 발전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본안사건)을 다른 후보자가 임명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하여 각하하는 대신, 이 사건 지명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사건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헌법 내지 법률로 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VI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파면결정에 이르기까지 민변 회원들의 소회

1. 모임 회원들의 소회

민경현 회원-미래를 향한 작은 용기

많은 사람들이 그 날 밤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집 근처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하고 택시를 타고 국회로 출발하였습니다. 계엄선포에는, 계엄사범으로 처단됨에 따라 변호사로서의 직업 및 재산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내일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형량하던 고뇌가 숨어있습니다. 국회를 가는 도중 속보를 통해 포고령을 접하였고, 체포될 경우의 전략과 마지노선을 가늠해보며 알팍한 셈법을 하던 중, 뇌리에 스친 민변 노동위나 과거사위 대화방을 기웃거렸습니다.

민변은 제가 고등학생이던 2008년 거리에서 노란색 조끼로 현현한 비대칭적 무력(?)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이에 2021. 1.경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곧바로 가입하였습니다. 미취업 상태이던 당시에는 신난 마음에 여러 위원회에 가입하여 회의도 참여해보았으나, 부끄럽지만 2021. 6.경 취업한 무렵부터는 몰아치는 속세의 무게와 타협하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절감하면서 이른바 후원회원으로 자리잡게 되었지만요. 그래도 당장의 비상사태에 민변이라는 무력이 생각났던 점은 제가 후원회원으로나마 남아있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라 생각합니다.

해제요구 의결 전 공지되었던 지침은 일단 지켜보고 내일 보자는 취지로 읽혀 조금 뜨악하였지만...그래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변호사집단 중에서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이 민변이었고, 탄핵과 그 이후까지 제가 변호사

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곳도 민변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급한 편이긴 하나, 서면을 2시간 만에 와장창 써내는 경험은 스스로의 능력이 가치관과 일치하는 방향에 투사될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목격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고요.

생일 저녁도 먹지 않고 국회 회의록을 정리하고, 위약금 50만 원을 부담하고 여행 항공편을 취소하는 등의 불이익도 있었지만, 함께 하는 변호사님들이 있어 종군의 사명감으로 상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마음으로 그 날들에 모이었던 민변 회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그날 밤 크고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했던 계기는 개인마다 다를 테니 이를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비관적인 성격이기도 하고, 국내 자산 분배를 둘러싼 세대 단위의 불평등, 점차 일상으로 전화하고 있는 전쟁, 극우 개신교 등의 모습으로 재현되는 반지성주의, 이 거대한 조류들을 역전시킬 힘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저는 과거에 부끄러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경이 국회 점령에 성공하고, 군인들이 양복으로 환복하고 거들먹대며 제1대 국가비상입법기구에 입성하는 치욕을 망월동이 바라보는 앞에서 우리가 견뎌야 하겠습니까? 좋은 싫든 한 시대의 전형을 주조한 87년 체제의 수혜를 입고 자란 자로서 이 유물조차 것처럼 무력하게 빼앗기기에는 지나온 역사가 너무나 찬란했습니다.

요컨대 그 날의 저를 움직였던 힘은 과거에 대한 염치에 있습니다. 저처럼 미래를 낙관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 문제는 과거에 사는 놈은 보통 미래를 그리는 자를 이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머지않은 장래에 비상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작 탄핵심판 선고일에는 낭독되는 심판이유의 요지가 너무나 당연한 진술들로 다가와서 스스로 억울할 정도로 별다른 감동을 느끼지 못하였는데요. 돌이켜보니 이것도 심판이유의 내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파면결정 이후에 다가올 과제의 크기를 예감한 데 따른 무력함에서 유래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관적이면서도 지나간 역사에 대한 염치에 준거한다면 오히려 미래와 희망에 기대지 않고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주어진 과제를 열심히 풀어가 봅시다.

최근 들어 작년 12월 3일 밤처럼 놀라서 심장이 요동치고 공포에 질렸던 적이 있을까 싶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말 정말 큰 충격이었다. 12월 3일 밤 다음날인 4일 부산에 재판이 있어서 평소보다 일찍 자려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다가 핸드폰이 자꾸 울려서 무슨 일인가 싶어 살펴보니 공부모임 텔레그램에서 계엄 선포 뉴스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라니 감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다들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였듯이 가짜 뉴스가 아닌가 해서 확인을 하고 또 확인해 보았는데 진짜였다. 윤석열이 밤 10시 23분에 그 잘난 얼굴을 들이밀며 직접 카메라 앞에서 말도 되지 않는 이유들을 대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계엄 포고령 내용이 가관이였다. 정치활동 금지, 언론 통제, 전공의와 의료인 처단, 영장 없는 체포구금과 압수수색이라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내용들이었고 특정 직업군을 ‘처단’하라고 하다니. 윤씨에게 조금이라도 대적했다고 생각하는 직업군에 대한 화풀이까지 들어 있었다.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포고령을 내리나 싶었다.

계엄 선포는 공포와 함께 1980년의 ‘5·18민주화운동’을 떠올리게 했다. ‘5·18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광주사태’였다. 나는 광주가 고향으로 초등학교 때 쿠데타 주역 전두환(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은 이름임)의 계엄 때문에 가족 모두 총탄을 피하기 위해 문에 이불을 걸치고 지냈으며 젊은 오빠들은 공사 중이던 지하에 숨어 지냈고 아버지는 시내에 계시다가 곤봉으로 머리를 다치셨으며, 주변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체험하였던 사람이다. 계엄은 내게 트라우마다.

다른 분들도 그러했겠지만, 비상계엄 소식을 접하는 순간부터 온갖 생각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국민을 기만하면서 광주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을 사태로 폄하·은폐한 것도 모자라 광주시민들을 무참히 죽였던 ‘광주사태.’ 이는 광주시민들이 일으킨 사태가 아니라 전두환을 위시한 군인들이 일으킨 사태, 또 하나의 군사 쿠데타였다. 범죄자 집단의 헌정질서 파괴였다. 현장을 목격했던 광주시민들마저 기만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가렸던 전두환 일당들의 만행, 그래서 광주시민으로서 늘 가슴 아프고 트라우마로 남은 심연의 기억, 그 기억을 소환해 냈던 것이다. 윤씨의 계엄령으로 이러다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우리 애들이 살아야 할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등등 불안한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범죄자 집단들이 ‘광주사태’라고 불렀던 그 시절 이후 얼마나 많은 흥흥한 소문들을 듣고 자랐던가! 많은 공수부대들이 와서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더라, 누구를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죽였다더라, 병원에 환자들과 시체가 넘쳐 났다더라, 어린애와 임신부까지 죽였다더라, 어디에는 암매장한 사람들이 얼마더라, 누구는 못 볼 것을 보고 꺾어서 정신이 미쳤다더라, 누구는 감옥에서 몇 년을 지내다 왔다더라 등 수없는 이야기들이 내 주위를 맴돌았다. 나중에 서울로 대학교를 진학하고 나서 알았다. 흥흥한 소문들이 소문이 아니라 다 사실이었다는 것을. 1980년 이후 군인들은 내게 칼과 같은 존재로 보였다. 흥기도 되고 유용한 물건도 되는 칼. 정서적인 면에서 군인들은 폭압적인 사람들로 상대도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었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나라를 지켜주는 고마운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한동안 가시지 않았다.

다음 날 부산 재판이 있어서 국회에 갈 상황은 아니어서 계속 뉴스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접했다. 국회가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새벽 1시경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평상심을 어느 정도 되찾았지만, 윤씨가 몇 시간 동안이나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아 공포스러운 불안감이

가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윤씨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기괴하고 반헌법적, 위법적인 일들을 했는지 생각해 보니, 국회가 합법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를 했어도 윤씨가 또 무슨 미친 짓을 꾸미고 있나 싶었다. 늘 상상을 초월하던 윤씨였기에 별의별 생각이 들었다.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천만다행히도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그리고 조금은 불안감도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다. 12월 7일 너무나도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되었어야 할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당의 조직적인 방해로 무산되었다. 국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집단적으로 퇴장해 불참하면서 국힘 소속 국회의원 108명 의원 가운데 105명이나 불참하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면서 무산되었다. 법률가로서 볼 때 윤씨의 비상계엄은 당연히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제정한다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탄핵소추안 표결을 방해하였다. 도대체 그들이 배우는 법이 어느 나라 법인지 묻고 싶었고, 내 앞에 있다면 가만히 두고 싶지 않다는 분노감이 치밀었다. 윤씨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기까지, 언제라도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 윤씨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았다. 또다시 나의 일상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윤씨를 탄핵시켜야 했다. 미약할지라도 그 행동에 힘을 보태고 싶었다. 친구들과 함께, 또는 남편과 함께 윤씨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윤씨에 대한 탄핵 여론 때문에 국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12월 14일 토요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시 어쩔 수 없이 국회에 출석했지만 무려 85명이 탄핵에 반대하였다. 겨우 204표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다. 겨우 4표 차이였지만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다. 여의도에 모인 많은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추위에도 불구하고 ‘윤씨의 탄핵’이라는 하나의 염원을 위해 한 마음이 되었다. 역사의 현장이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지만 탄핵소추안 통

과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나도 남편과 함께 펴 듯이 기뻐했고, 성취감을 맘껏 누렸다.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는 법조인으로서 씁쓸함이 밀려왔다.

탄핵에 반대한 국힘 국회의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소위 그 잘난 법조인들이었고, 심지어 그들은 탄핵을 반대하는 선봉에 섰다. 그들은 탄핵에만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량한 법률 지식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계엄을 옹호하였다. 국회의원만이 아니었다. 수많은 유명 법조인이나 판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의 법조인들마저 적극적으로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며 권력에 부화뇌동하였다. 일부는 계엄에 반대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교묘하게 양비론을 들어 사실상 계엄을 옹호하거나 탄핵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명백히 위헌적인 계엄에 대해, 너무나 명백한 탄핵에 대해 법조인들이 나서야 했으나, 오히려 일부 과격한 극우세력을 부추기고 명분만 심어주기도 했다. 법률가는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주변의 상당수 법조인이, 특히 판사나 검사, 헌법재판관까지 했다는 사람들이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국민들에게 올바른 소리를 하지 않고 법률 지식으로 치장한 궤변으로 사람들을 선동하였다. 정말 법조인으로서 너무나 창피하고 어딘가로 숨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다. 정말 부끄러웠다. 쌍욕이 나왔다. 법률가로서 너무나도 창피하고 직업을 바꾸고 싶을 정도였다. 그리고 보수 언론은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을 액면보다 더 포장하여 국민을 선동했고, 그나마 계엄 당일에는 계엄은 잘못되었다고 대부분 언론이 주장하다가 완전히 논조를 바꾸기까지 하는 것을 보고, 절망을 느꼈다. 왜 언론개혁이 반드시 필요한지가 절실하게 다가왔다. 괴로움과 절망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남편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했다. 애들에게도 이번 비상계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젊은 우리 아들딸이 잘못된 정보에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

각도 들었다. 주말에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 나갔다. 그리고 힘과 희망이 생겼다.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 나갈 때마다 나의 키보다 대여섯 배는 큰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써진 대형 용기(龍旗)가 힘차게 나부끼는 것을 보면서 나라와 백성을 구하고자 불의에 항거한 동학농민혁명의 현장이 재현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정말 국민이 주인이었다.

어떤 여성분이 지금까지 하고 싶은 말을 눈치가 보여서 하지 못했는데 여기 집회 현장에서는 눈치를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할 때 묘한 동지의식이 느껴졌다. 그 여성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정치경제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때로는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소외당한 학생, 여성, 장애인, 소수자, 농어민, 노동자 등이 여의도에서 용산에서 남태령에서 광화문에서 탄핵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희망을 노래했다.

여의도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던 날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친구들과 깃발을 들고 온 모습에 마음이 울컥했다. 광화문에서는 어린 여학생들이 응원봉을 들고 ‘다시 만나는 세계’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마치 축제현장을 보는 듯하여 하루 빨리 윤씨 탄핵 인용되어 축제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나도 응원봉을 처음으로 사 보았다.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의식이 들어서 좋았다. 현장 모금에도 돈을 냈고 계좌로도 돈을 입금했다. 집회가 끝나고 저녁을 먹을 때 옆 테이블 사람들의 식사값도 내어 주었다. 젊은 분들이었고 감사의 인사를 해 주셨을 때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 사이의 동지의식을 강하게 느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모임의 집회시위지원단 분들이 집회 후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옆 테이블 사람들이 식사값을 결제해 주었다고 하였다. 평소 변호사들이 다른 사람로부터 밥을 얻어먹기는 쉽지 않은데, 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마음을 써 주셨던 것 같아서 흐뭇했다.

이런 집회 현장에서의 동지의식이나 공동체의식과 다르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늦어지면서, 일상에서는 ‘국힘’ 정치인이나 행정관료들, 일부 검찰이나 법원이 보여준 위헌, 위법적인 행태들을 보며, 심한 분노와 함께 불안함을 느끼기도 했다. 이러다가 윤씨가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이 된 뒤에 윤씨가 보인 상상할 수도 없는 위헌·위법적인 행태들을 보며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평소 사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스승이 사주에 일가견이 있다고 하는 지인 변호사님께, 윤씨 부부의 사주풀이를 혹시나 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던 적이 있었다.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채울 수 있는지, 추후 처벌되어 감옥에 가지 않는지 등을 물었다. 너무나 절망적이게도 윤씨 부부는 대통령 임기를 다 채우고 퇴임 후에도 부부가 너무나 잘 지낼 것이라는 대답이었다(나중에 들으니 시중에 떠도는 윤씨 사주팔자가 진짜가 아니라고 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탄식했었는데, 갑자기 그 사주 이야기가 떠올랐다. 헌법에 전문 지식이 별로 없는 가사전문변호사가 보기에 당장이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인용되어 윤씨가 파면되어야 하는데, 탄핵심판이 늦어지면서 윤씨가 대통령으로 복귀하여 멀쩡하게 지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길함이 더욱 증폭되었다. 그러나 사필귀정이라고 윤씨는 파면되기 전, 구속에서 풀려났으나 특검이 구성되어 다시 구속되었고, 최근 만행의 공범이자 주도자였던 김씨도 구속되어 천만다행이었다.

일반 국민들에게도 충격이었겠지만 평소 법원을 드나들면서 재판을 하던 변호사인 내게도 2025년 1월 19일 새벽의 서부지법 폭동은 윤씨의 비상계엄 선포, 국힘의 조직적인 계엄 옹호와 탄핵반대에 이어 또 다시 충격이었다. 법률가로서 양심을 버린 일부 법률가들의 선동이 있었다. 그동안의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건이 많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법원을 조직적으로 물리적 공격을 가하면서 마치 영웅이나 된 듯이 생증계까지 하는

사람들을 보며, 극우세력의 준동에 대해 법적으로 억제, 방지할 방법이 없는지 향후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하고 지난한 시간의 약 4개월이 흐르고 드디어 결정의 날이 되었다. 2025년 4월 4일 11시 시민들과 함께 모여서 탄핵선고를 듣고 오후까지 함께 있으면서 탄핵을 축하하고 싶었는데 그날 오후에 재판이 있어서 일정상 갈 수 없어 정말 아쉬웠다. 변호사라는 직업상 늘 승패가 따르는 일을 하므로 단련이 되어 중요한 사건의 선고가 있더라도 가슴이 떨리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그날은 정말 가슴이 많이 떨렸다. “탄핵 될 거야, 법리적으로 보면 탄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어. 법리적 판단은 정파를 떠나서 법률가로서 해야 하므로 만장일치로 탄핵 될 거야.”라고 무수히 외쳤지만, 혹시라도 모르므로 가슴 졸일 수밖에 없었다. 탄핵선고 결과 너무나 다행히도 아직은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구나 싶었다. 너무나 당연한 탄핵이라는 결과에 이렇게까지 기뻐해야 하다니 일면 씁쓸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님께서 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결정문을 쓰셔서 감사했다. 결정문의 문구 문구들 모두 훌륭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마음에 닿았던 부분은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는 부분이었다. 시민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그때 소극적으로 행동했던 군경분들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으로 말미암은 군인들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인식도 그들로부터 위로받은 듯하다. 4월 4일 이후에도 문형배 재판관님께서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문구를 계속 반복하여 들으면서 그 동안의 마음고생에 대해 내 스스로 위로를 해 주었다. 문형배 재판관님께서 탄핵선고 이후 인터뷰 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언급하시면서 시민들 저항을 말씀하실 때 눈물이 났

다. 한강 작가가 말했던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 극우 보수 세력이 북한군 투입설 등으로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더럽힐 때 침묵하던 세력들이 국힘의 뿌리이고 그래서 국힘은 또 조직적으로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도 반대했다. 역사에서 어떤 것을 배우느냐는 정말 중요하다. 폭력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폭력을 답습하고 인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폭력을 배제한다.

윤씨의 비상계엄은 무척 조직적으로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이다. 빨리 해제되었기 때문에 졸속인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할수록 특정 세력들에 의해 매우 조직적으로 행해졌음을 잘 알 수 있고, 해제 후에도 조직적으로 탄핵이 되지 않거나 처벌되지 않도록 행동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탄핵까지도 너무나 멀고 험난한 여정이 되었고 아직도 내란 관련 세력들이 제대로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위협과 음모가 있었던가.

한시를 놓았다고 생각되었을 때,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전광석화처럼 서둘러 전원합의체로 파기환송하였다. 무려 대법관 10명이 찬성하여서. 만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대법관들처럼 사고하여 윤씨를 파면하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만일에, 만일에 고등법원에서 정말로 재판이 진행되어 국민의힘당 출신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우리의 헌정질서가 어떻게 되었을까?? 윤씨의 계엄과 그 옹호세력들의 뿌리를 파헤치면 뉴라이트에 극우세력까지 끝도 없는 헌정질서와 국익훼손자들(이 나오는 데, 이들)의 척결을 어떻게 하지? 비상계엄 선포에서 탄핵에 이르는 지난 과정에서 광장을 지키고 세웠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법과 제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법조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2024년 12월 3일. 그 일이 있기 전까지 그 날은 평범한 날이었다. 일정이 많지도 않았다. 평온하게 퇴근하고 늦은 귀가를 하는 아이들을 기다렸다가 늦은 저녁을 챙겨주고 자녀와의 대화를 나누며 내 일상을 누리느라 계엄 선포하는 생방송을 보지 못했다. 계엄 선포하고 20여분이 지났을 때 쯤 텔레비전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뉴스를 보고는 누군가가 딥페이크 기술로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 황당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뉴스가 이상해서-윤석열은 법조인 아니던가, 계엄 요건을 누구보다 잘 알텐데 그것도 대통령이 전년도 아닌데 계엄을 선포한다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북한이 남침을 했나도 잠시 생각해보았지만 그건 더더군다나 아니었다. SNS에 “이거 실화인가요?”라고 올렸더니 진지한 지인이 “실화입니다”라고 답변을 달았다. 허, 참. 실소가 나왔다. 실소도 잠시, 뇌가 마비되는 것 같지만 가족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차분하게 생각했다. 잘 준비를 하고 있는 친정엄마에게 “엄마, 지금부터 윤석열, 김건희 욕하면 안돼”라고 외쳐 엄마의 외출을 금지시키고, 내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서 뉴스에 집중했다.

광주민중화운동에서 본 사진과 영상들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재생되었다. 군홧발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하다. 점점 머리가 하얘져서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요구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고맙게도 많은 시민들이 여의도로 향했고, 국회에 밀집해 있었다. 빠른 판단으로 국회로 향한 그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고마웠다. 난 계엄 선포 말만으로도 머리가 굳고 몸이 마비되는 듯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국회에 군인들이 있고...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이 있고...야심한 시간에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이 있고...보고도 그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12월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을 바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뭘 이렇게 꾸물거리는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지 않아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밤을 꼬박 샀다. 정말 별꼴이다.

아침이 밝았고 일상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출근길에 본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논쟁답지 않은 논쟁이 벌어졌다. 그 자리에 서서 내 눈을 의심하며 스크롤을 올려 다시 보았고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혈압이 치솟았다. ‘국회가 잘못했으니 대통령 입장에서 비상계엄을 할 수 밖에 없다, 계엄 선포 자체는 잘못되었지만 민방위 훈련을 하듯이 계엄군 훈련을 한 것이니 문제가 없다, 누구 하나 다친 사람 없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라니 말문이 막히고 분노가 일었다. 다들 헌법을 공부한 법조인인데 국회가 잘못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비논리적인 말을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고, 화가 났고 이런 논리로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무게를 실어줄 것을 생각하니 무섭고, 한편으론 부끄러웠다. 계엄 부분은 강사가 사법시험에 안 나온다고 풀로 붙여 버리라고 한 부분인가 기억을 떠올려보았으나, 너무 오래 돼 기억나지 않는다. 변호사시험을 본 후배 변호사들은 헌법을 배운지 얼마 안 되었을 텐데 단체방에서의 대화는 계엄 찬반이 비등비등해 보여 어처구니가 없었다. 법조인이라면 정치적인 영역과 법적인 영역을 잘 구별해서 선명하게 판단해야 했다. 적어도 이때는 그래야 했다.

정신 건강을 위해 법조인들답지 않은 법조인들 논쟁을 보지 않기로 하고 단체방 창을 닫고 출근하는 길을 걸었다. 건다가도 멈춰 서서 심호흡을 해야 했고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집단이 생각보다 많고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목소리를 내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다. 고등학교 때 광주민중화운동을 친구들과로부터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군홧발이 얼마나 무서운지 직접 당해봐야 아는 사람들이 두려웠다. 자신은 군홧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오

만도 두려웠다. 군대를 안 가봤지만 군에서는 위에서 하라면 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러지 싶었다.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내용이 이러하다보니 내가 비정상처럼 느껴졌다.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과 서로 의지했다. 이상한 궤변에 물들지 않아야한다고 다잡아야 할 정도로 법조인들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다. 지인들이 누구 말이 맞느냐며 연락해왔고, 법조인들의 신뢰가 땅에 추락했다고 느꼈다.

주말에 국회 앞에 가서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전화도 카카오톡도 연결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국회 앞에서 지인들을 바로 찾았다. 옳은 일을 하니 지인도 바로 찾는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정의로운 일을 하니 하늘이 이끌어준 것이라고 믿고 다 같이 목이 터져라 외쳤다. 조금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밖은 너무 추웠다. 예전처럼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다. 역시 현장은 익숙하지 않다. 탄핵 소추가 부결된 것을 보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하철역으로 갔는데 지치지 않는 젊은이들이 여전히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아이돌 응원할 때 사용하는 형형색색의 응원봉들을 흔들는데 마음 속에 감동이 꼭 차올랐다. 윤석열은 탄핵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다. 그리고, 나는 현장보다는 법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제대로 된 숨을 쉬어야겠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끼리 위로도 받고 조금 이나마 힘을 보태자 마음먹고 이선경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그런 일을 할 것이라는 오랜 믿음이 있다. 이선경 변호사가 한번 들어오면 일이 계속 있다고 만류하는 듯하더니 가입신청서를 온라인 접수하지 말고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자고 민변 사무실로 불렀다. 이선경 변호사가 뭐라고 추천했을지 사실 궁금한데 회원 가입된 것을 보면 너무 잘 써줬나 보다 싶다.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상원 수첩에 체포 명단으로 민변이 있었다는 뉴스를 보고 한편으론 ‘호랑이굴에 들어왔

구만’ 싶었다. 그러나 부당하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으므로 그 때 민변에서 위로 받자는 결심에는 여전히 후회 없다. 거리에서 그리고 TF 회의에서 회원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많은 힘을 얻고 있고,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그렇지만 다 정의롭고 합법적인 말들—를 듣고 있으면 뿌듯하고 대리 만족을 얻는다. 그리고 안심이 된다.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 사람들이니까.

어려서부터 꿈꾼 법조인이 되었을 때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비록 주변을 챙기면서 소소하게 살아왔지만 그 속에서도 나름 늘 “정의로움”을 잊지 않고 실천하려고 했다. 소소한 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뿌듯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선고가 미뤄져 종중 광화문 집회에 나가 목소리를 높여야 했다.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무기력해지기도 했고, 억지 폐를 쓰고 난동을 부리는 극우세력과 일부 국회의원의 망발을 보면서 80세까지 변호사로서 활동하려던 내 마음에도 금이 갔다.

서울지방법변호사회의 회훈은 ‘정의의 붓으로 인권을 쓴다’이다. 변호사회관을 다닐 때마다 늘 회훈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돕겠다고 다짐하고 하였는데, 윤석열, 나경원 등을 보면서 법조인인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그나마 민변에서 정기적으로 회의하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법조인을 만나 심신을 정화할 수 있어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지 계엄 찬성 의사를 소극적으로 드러내거나 정의로움을 회피하면서 윤석열을 옹호하는 법조인들이 생각보다 많아 답답했다. 본의 아니게 커밍아웃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SNS에 계엄 선포에 대한 문제점을 적은 것을 글을 보고 지인 변호사가 동감한다는 댓글을 달지 않았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다. 그 말이 맞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하다고 한다. 다들 별 일 없

었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공감하는 분위기이고, 먹고 살아야 하므로 수임을 위해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니 도저히 소신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 침묵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숨을 쉬고 흥분하기도 했다. 한참을 혼자 열변하더니 이제야 살 것 같다면서 전화를 끊는데, 변호사는 자기 의견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변호사조차도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라니 위법한 계엄 선포의 후유증이 심각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이익만을 좇다가 정의나 양심은 뒷전이고 국가기관의 불법에 대해서는 눈감고 귀 닫는 악습이 몸에 밴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웠다.

극우세력은 막대한 자본과 집결력으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 목소리의 힘이 커지니 그들의 주장이 합법인지 아닌지, 정당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두고 극우세력은 대한민국이 아닌 윤석열 지키기에 더욱 열을 올렸고 여기에는 일부 정치인과 국회의원, 법조인이 가세했다(물론, 더 많은 정치인, 국회의원, 법조인 등이 옳고 정의롭게 살아간다고 믿는다!). 내로라하는 정치인, 국회의원, 법조인이 윤석열 지키기에 열을 올리니 극우세력이 성찰하고 과오를 깨닫기란 불가능한 일이 되어 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이라는 기관에게 인권을 인정하는 웃지 못할 결정을 하기도 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대한 단호한 척결이 있을 후 극우세력을 교화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윤석열이 탄핵 선고가 되면 극우세력이 어느 정도 수용하고 약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 빗나갔고 극우세력의 방종은 극을 향해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국정 농단 때 시국선언을 하고 8년이 지나서 다시 시국선언을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윤석열 계엄 선포 직후 법정단체인

서울지방법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서 답답하고 부끄럽고 화가 났다. 서울회나 대한변협의 인권위원들이 서울회나 대한변협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하려고 나섰으나, 각 집행부가 양해를 구한다며 시국선언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1000인의 시국선언문’을 ‘대한변협 및 지방변호사회 전·현 인권이사와 인권위원’의 이름으로 발표한 것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일로 기억될 것이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고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나 정황 등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었는데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를 신속하게 하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 커졌지만, 그래도 탄핵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텼다. 민변에서도 변호사 시국선언을 준비하여 대부분 참석해 답답한 마음을 세상에 알렸다. 서울지방법변호사회 광화문회관에서 시작해 광화문광장까지 함께 걸어가는데 자랑스러웠고, 광화문 광장에서 선배님들의 주옥같은 시국선언문을 들으면서 몽클거렸다.

수년 동안 민변 회원으로 오해 받았던 뿌듯한 기억이 있다. 박근혜가 국정농단을 해도 거리에 가서 탄핵을 외치고 다시 돌아와 생계형 변호사로서 소소한 정의로 만족하며 살만 했다. 그런데 윤석열의 내란과 극우세력이 부리는 난동을 보면서 그들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정의로움을 구별하는 판단력을 되찾길 기대할 수 없다는 위협감을 느껴 뒤늦게 민변 회원이 되었다. 아직도 극우와 일부 정치인의 계엄 선포 옹호가 계속돼 여전히 그 스트레스가 크지만 갈 길이 멀다. 극우세력에 대처하고, 내란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사법부가 정치화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기만 하면 극우세력의 결집과 반발이 더 커질 것이므로 당근과 채찍으로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25년은 4월 4일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난 12월 3일부터 올해 4월 4일까지는 시간이 멈춰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2025년에 일어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즐겨 보던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화면 하단에 단신으로 뜬 ‘계엄 선포’라는 글자를 보고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국회로 모여달라는 메시지를 보고 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국회로 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을 보며 여기서 말하는 ‘반국가 세력’에 나도 포함이겠구나, 잡혀갈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공포심이 들었습니다.

밤 11시 30분쯤 국회 앞에 도착해보니 이미 사람들이 제법 모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핸드폰이 터지지 않을 정도로 국회 앞 도로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찬 사람들 위로 끊임없이 군용 헬기가 날아들었습니다. 광주에서 있었던 헬기 사격이 생각났습니다. 저기서 총을 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니 막연했던 공포심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국회 앞에 함께 있던 사람들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두렵지만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요, 계엄령을 해제하라는 구호는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바로 윤석열 탄핵, 퇴진 구호로 바뀌었습니다. 다행히 그날 밤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저도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집회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기겠다 싶었습니다. 윤석열이 석방된 3월 8일 전까지는요.

그날도 노란 조끼를 입고 광화문 앞 광장에 민변 회원분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한창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광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석방 소식이 전해진 때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법 해석으로 내란범이 빠져나오는 것을 본 순간, 법률가라는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직 저연차 청년 변호사인데, 앞으로 법률가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법으로 싸워보자고 말할 수 있을까... 괴로웠습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광장에 나왔습니다. 사실 나오지 않으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대부분 저와 같은 마음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트럭 옆에서 행진하면서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행진 대열을 보며 불안하기도 했었습니다(물론 주말에는 많이 나오셨지만요).

그래도 계엄이 선포되자 바로 모여 대응책을 논의하고, 팀을 꾸려 사안마다 성명을 발표하고, 집회에 참가하고, 시민들에게 법률적 사안을 해설하고, 현재에 보낼 의견서를 쓰는 민변이라는 조직이 있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광장에서 함께한 민변 회원분들을 보며 변호사의 ‘사’가 왜 선비 士자를 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계엄부터 파면까지, 살아오며 이토록 간절히 바라고 일상을 다 바친 일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마침내 ‘파면한다’는 주문을 들은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옆에 있던 민변 동료들을 끌어안고 다 같이 평평 울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했을 때도 어머니만 우시고 저는 전혀 울지 않았었는데, 파면 결정이 있던 날의 감정은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습니다. 계엄으로 멈춰있던 4개월의 시간을 시민들의 힘으로 다시 흐르게 한 경험은 앞

으로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되돌리기 위해 함께 힘써 주신 모든 민변 동료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다시금 이 나라 민주주의에 위기가 온다면 언제든지 푹푹 뭉쳐 위기를 헤쳐나가면 좋겠습니다.

2. 법학자, 교수들의 소회

김현정 박사-법학자들, 거리에 나서다

○ 박사님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법대를 졸업하고 2008년부터 여러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대학원에서 법학 석·박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 헌법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2022년도에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석·박사 학위 논문 모두 ‘정당’을 주제로 작성했습니다. 현재는 (주)판지일보에서 기자로 일하면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고려대학교 정당법연구센터 전임연구원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민주법연과 헌법학자모임 양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민주법연은 잘 아실테고,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모임’은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직된 모임입니다. 윤석열의 불법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을 알리고 이후 탄핵과 헌정회복을 위해 헌법학자들이 법률적 대응을 하고,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 내기 위해 조직된 모임입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명예교수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광석 명예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현환 교수님이 공동대표를 맡았고요, 100여명의 저명한 헌법학자들이 모여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헌정 회복을 위해 지식으로 실천투쟁한 헌법학자들의 모임입니다.

○ 계엄 선포 당일에 뭐 하고 계셨나요?

집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12월 9일~10일 1박 2일 동안 홍콩에서 제10회 아시아헌법학자포럼이 개최될 예정이었고, 저는 거기의 한 세션을 조직한 팀장이었습니다. 동시에 발제도 할 예정이었습니다. 발제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밤에 잠시 뉴스를 볼까 싶어 TV를 틀고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던 중 화면 아래에 자막이 떴습니다.『윤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수호”위해 비상계엄 선포』라고...

○ 계엄 선포를 듣고 제일 처음 하셨던 일은 무엇인가요?

한 2~3분 멍했던 거 같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정신 차렸습니다. 오래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 중’이라는 말이 돌았고, 작년 여름 단행된 군 인사를 보면서 수상하다 싶었습니다. 제가 2023년 10월 21일까지 국방부 출입 기자로 일했습니다. 그때는 판지일보가 아닌 다른 방송사에서 국방부와 노동부, 인권위 출입 기자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 부처의 장들이 가장 말이 많았고, 정책 변화가 급작스러웠던 부처였습니다.

바로 정신 차리고 지도교수님께 전화드렸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모임의 공동대표였던 고려대학교 김선택 교수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다고 하니 교수님께서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도 높아지고 현실임을 인식시켜 드렸습니다. 이후 논문 심사위원이자 오래도록 함께 원서 강독 공부 모임을 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큰 한숨 소리를 내쉬더군요. 일단 추후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고민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지도교수님 문하생들이 모여 있는 연구실 모임 단체톡방을 통해 비상계엄임을 알렸습니다. 여러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부하는 모임의 단체톡방에도 알렸습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는 가장 먼저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기 위해 줌으로 긴급회의를 열어 논의를 했습니다.

반쯤은 언론계에 걸치고 있는 기자이다 보니 여러 소식을 받을 수 있어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을 명백히 인지했습니다. 비상계엄해제 결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마음이 놓이긴 했지만 정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아 애를 먹다가 기사를 썼습니다. 판지일보 편집장이 왜 문제인지 빨리 써달라고 해서 새벽 7시까지 기사 마감하고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 내란 국면에서 헌법학자모임과 박사님은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그 활동 중에 민변과 같이 연대하셨던 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일단 정식으로 헌법학자모임이 조직되기 전에, 헌법·행정법 등 공법학자들이 내란 직후 불법비상 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서명을 받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이때 앞장서 주신 교수님이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종철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모임을 조직하고 거기서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프랑스 AFP와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 비상계엄의 불법·위헌성을 알렸고요, 이후 윤석열 탄핵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최상목의 선별 임명이 왜 위헌인지에 대해서도 알렸습니다.

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승주 교수님과 경실련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도 함께 했습니다. 이때가 1월 21일이었습니다. 민주법연의 회원이자 학술부위원장의 지위도 겸하고 있어서 당시 민주법연에서 성명을 낼 때도 함께 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촉구를 위한 집회에도 참여하였고요, 민변과 민주법연, 법률가들이 함께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낼 때 함께 했습니다. 2월 1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도 같이 하고, 3월 중순부터 민변의 김남주 변호사님과 함께 ‘윤석열 체포단’에서 활동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4월 3일까지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민변과 함께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3월 21일부터 4월 4일 선고되는 날까지는, 광화문에서 천막을 치고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모임’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승주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연구자분들과 함께 릴레이 단식농성도 했습니다.

○ 계엄 후 윤석열 탄핵되기까지 과정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였나요?

첫째로는 선포된 날 밤입니다. 무장한 특수부대 군인들이 국회로 진입하는 걸 보면서 ‘끝났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해제결의를 했는데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해제결의에 대한 수용 입장 발표가 늦어져서, 2차, 3차 비상계엄이 있겠구나 싶어서 견딜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그후에도 모든 순간이 힘들었지만, 윤석열 체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가까스로 윤석열을 구속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구속기간 계

산으로 구속 취소가 된 후 윤석열이 구치소를 걸어 나오면서 주먹을 쥐어 보았을 때는 미칠 거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서 3월 둘째 주가 지나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상식이 무너지는구나 싶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한 사안에서도 헌재가 결정을 못 내리는구나 싶어 너무 괴로웠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결정을 들었던 날의 소회는 어떠셨나요?

4월 1일에 선고 일자를 언론에 발표했을 때부터, 탄핵 가결이라는 결론은 확실한 것 같았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이 며칠 안 남았었고, 퇴임 축하 모임을 잡았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 탄핵을 기각한다면 대한민국은 아예 독재국가나 군사정부가 들어서는 수순으로 가는데, 헌재 재판관들이 그런 악수를 둘 것 같지는 않았기에 탄핵 기각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소장대행을 맡고 있던 문형배 재판관이 민란이 나도 날 거 같은 그런 상황에서 선고도 못하고 퇴임하는 데 퇴임식 같은 걸 하고 나갈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얼굴 붉히면서 떨어름하게 퇴임 축하연 같은 걸 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적, 법리적으로는 포고령 1호 1항만 보더라도 이건 명백했지요. 그런데 막상 “지금 시각은 11시 22분입니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합니다”라는 선고가 내려진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선고 순간 단식투쟁하던 광화문 천막에 있었는데, 오히려 마음은 차분히 가라앉았고,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진짜 하늘이 한번 더 지옥의 불구덩이가 가까이 갔던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힘껏 들어 올렸구나

싶었습니다. “하늘이시여…”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 탄핵결정문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자,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한국사회가 앞으로 꼭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말해준 결정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87년 헌정체제가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그렇게 힘이 없지 않다는 걸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38년 동안 이상한 결정도 많이 했고, 정치적 성격이 강한 재판이기에 때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보편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할 때도 있었지만, 역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관이라는 운명적, 태생적 소명을 보여준 결정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론은 환상적이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정합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결정이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졌던 이유를 자백한 것 같았습니다. 만장일치 기각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른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의 입장까지 아우르느라 정합성이 안 맞는 문장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 활동하시면서 만나게 된 민변 회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회원이 있으신가요?

뭘니 뭘니 해도 김남주 변호사님입니다. 각종 고소·고발 기자회견은 물론 의견서 제출 때도 빠지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재야세력이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을 때 가장 작은 개인 텐트를 치고 함께 하셨지요. 또 시위 중 경찰들과 대치하다 병원까지 실려가고

정부청사 앞에서 한덕수 출퇴근 시간에 맞춰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를 위한 1인 피켓 시위를 할 때도 함께 하셔서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 끝으로 민변 탄핵백서 발간에 대해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우선,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탄핵백서 발간 작업을 도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국민들도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남김없이 기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과정에서 민변에서 공익적 법률지원도 해주시고 함께 나서 주셔서 그런 노력들이 모여져서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빙자한 독재 획책으로부터 한국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변 소속 변호사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민변에서 민주시민교육 분과를 만들거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지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헌법과 제도가 있어도 그 헌법의 기속을 받는 국민이,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국민이 민주화되지 못하거나, 건강한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헌법에 대한 건강한 충성심, 타인에 대한 관용이 없다면 제도와 법은 그냥 문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보다도 중요한 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배워야 하는 제도이고, 시민이 민주화되지 않으면 민주헌정의 실현은 요원한 일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실시 법안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모두 소위에서 논의 한번 못 해보고 회기 만료로 폐기 되었습니다. 독일은 나치 패망 이후 본기본법 체제에서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정치교육

(Politische Bildung)이라고 불립니다. 연방 차원에서도 하고 주 차원에서도 하고, 공교육 과정에서도 이뤄지고 다양한 정치교육(즉 민주시민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정작 몇몇 지자체에서 단기간 교육프로그램 과정으로 이뤄질 뿐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이 보편·활성화되는 데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괴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한 문제가 심각한 극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주 교수-광화문 광장에서 탄핵선고를 듣다

○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는 방송주입니다.

○ 교수님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날 12월 첫 주부터 시작된 대림절 새벽기도회에 참여해야 되서 10시에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계엄 선포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교회에 갔다가 한 장로님의 기도내용이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결국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전해 주신 소식을 듣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엄과 국가긴급권 문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수행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계엄 선포 소식을 듣는 순간 헌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완전히 위헌적인 계엄이라고 바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회를 마치고서 바로 한양대 연구실로 가 8시쯤 도착하자마자 바로 위헌적 계엄 선포를 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끌고 나와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는 등 내란을 저질렀기 때문에, 윤석열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든 사람으로서 더 이상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파면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생각에는 변함없었습니다.

○ 그 후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동료 교수님들과 시국선언문을 검토하고 최종안을 확정하여 12월 5일 오후 5시 경에 이메일로 한양대 전체 교수·연구자들에게 “반국가세력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 가결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한양대 교수·연구자 선언”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국선언에 연명하고 기자회견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구글폼(연명서)을 발송하였고, 다음 날인 12월 6일 정오까지 응답한 참여자 409명의 명단만 일단 취합해서 12월 6일 오후 1시 30분에 본관 앞 사자상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그 이후까지 총 491명 서명에 동참). 기자들이 한양대학교 사자상 앞에 상당히 많이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12월 7일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 의결이 예정되었던 날이라 국회에 한양대 교수·연구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서 12월 6일에 서둘러서 성명을 발표했던 건데 아쉽게도 12월 7일 소추안 가결이 안 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후 2차 탄핵소추 가결일로 지정된 12월 14일에는 제자와 함께 기자회견 때 썼었던 플래카드를 들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으로 나가 탄핵가결촉구 집회에 참석했는데 당시 젊은 여학생들이 그렇게 많았던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응원봉을 들고 노래하고, 음식 갖고 온 거 나눠 먹고 하면서 즐겁게 시위에 참여하더군요. 탄핵가결이 선포되고 나서는 그야말로 빛의 혁명, 빛의 향연이 이루어졌습니다.

탄핵안 가결 후에도 계속 바빴습니다. 황운하 의원과 ‘윤석열대통령 탄핵 국회의원원대’에서 12월 27일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과 전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개최한 국회토론회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헌법적 검토”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고, 이어서 1월 7일 경실련이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주최한 긴급토론회에

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제적·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여 위헌이며 따라서 대통령 탄핵심판청구도 인용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국회에 의하여 탄핵소추가 되어 직무가 정지되었고, 최상목 기재부장관 겸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었으나 여전히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자 국회가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려 했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 더욱 위험한 헌정위기에 빠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 12월 30일 연속적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는 대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라고 국회 쪽에 긴급히 제안을 하였고, 2025년 1월 2일에는 청구서 초안 및 가처분신청서 초안을 작성하여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다음날 국회의장께서 바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였었고 결국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인용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확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

다. 그리하여 1월 21일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하여 경실련과 함께 교수·연구자·시민활동가·기자 등으로 청구인단을 꾸려 헌법소원심판(2025헌마71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 위헌확인)을 청구했던 저희 청구인단들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공정하게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다시 한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하고 2차 헌법소원심판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되어 한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고서도 여전히 마은혁 재판관의 임

명을 하지 않다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선고 된 후인 4월 8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그간 대통령 임명 묵인 나머지 2인 재판관으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마은혁에 대한 임명부작위의 문제는 사실상 사라졌지만 그간 그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던 부작위와 함께 대통령 묵인 헌법재판관 2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한 작위로 인하여 공정하게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이유로 지난 1월 21일 1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던 청구인들을 포함한 청구인들이 다시 2차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25헌마432)와 가처분신청서(2025헌사421)를 4월 14일 경실련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고 다음 날 혜화동에 있는 경실련 대강당에서 기자회견도 개최했습니다.

각종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부를 때에는 언제든지 마다하지 않고 출연하고 인터뷰에 응해서 국민들에게 12·3 비상계엄이 왜 위헌인지,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왜 파면이 선고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알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단기간 동안 제가 가장 방송과 언론에 많이 출연한 시기가 이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교수님께서 광화문에서 텐트를 치고 릴레이 단식농성까지 하신 걸로 아는데요. 토론 참여와 현재 서면 제출 등의 다소 온건한 활동만 하시다가 갑자기 단식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위기감이 있으셨나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 당시 어떤 심판사건 보다 윤석열 탄핵심판사건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서 선고하겠다는 약속과 3월 중순경에는 윤석열 탄핵심판이 선고될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을 깨고서 3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8:0으로 기각하고, 이어 3월 21일 금요일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3월 24일로 지정하면서 윤석열 탄핵 선고 기일 지정은 안 하는 걸 보고 상당히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연구원으로 5년 동안 근무했고 헌법학자로서 로스쿨에서 강의하면서 헌법재판소 판례분석을 많이 해 왔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내부 사정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문형배 현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전까지 윤석열 탄핵선고를 하지 못하고서 퇴임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다 싶었지요.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그 날로 저부터라도 단식농성을 시작해야겠다고 판단을 하고 제가 4년 째 이끌어 오고 있는 “독일헌법고전 강독세미나” 단체대화방에 글을 올리고 금요일부터 광화문 앞에서 텐트농성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날 광화문 광장에 갔더니 비상행동 본부 텐트 앞에 민변 변호사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서 계셔서 안내를 해 주셨고, 또한 민변 텐트 안에 몇 명의 변호사님들이 그곳에서 근무하며 때로는 순찰을 돌기도 하고 각종 지원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전국 교수·연구자 시국선언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도 바로 이 소식을 올려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전국 교수·연구자 릴레이 단식농성”의 닳을 올리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많은 교수·연구자님들이 이 천막으로 와 합세해 주시고 또한 탄핵을 촉구하는 수많은 민주시민들이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3월 24일 한덕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인용 5, 기각 1, 각하 2로 결론은 기각으로 선고되면서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채택해 오고 있는 소위 주문별 평결방식의 위헌성이 윤석열 탄핵심판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견으로 갈라지게 되면 결국 한 사람의 기각 의견이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을 뒤바꾸게 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상당한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다음 날 있는 수업으로 인하여 3박 4일간의 단식을 해제하던 3월 31일 월요일 저녁에 방송된 CBS의 “질문하는 기자”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또한 선고 직전인 4월 2일 광화문 릴레이 단식농성장으로 직접 찾아 왔던 “굿모닝 충청” 방송에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면서 혹 만의 하나 각하의견에 선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본안판단으로 들어가서 탄핵의 인용 여부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는 것(소위 “쟁점별 평결방식”)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결국에는 8:0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결정이 선고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 파면 결정을 보시고 소감은 어떠셨나요?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선고 방송을 들었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위태위태한 분위기가 있었든, 아니면 의견일치와 조정을 위해서였든 간에 결정이 지나치게 늦게 선고된 점은 상당히 아쉬웠던 점입니다. 탄핵결정문은 잘 썼고,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로부터의 침해 혹은 파괴’였다는 취지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고 하는 지적도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에 대하여 인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고 피해 갔는데, 그건 재판기관으로서 분명한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탄핵 반대파들이 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상당히 깔끔하고 명쾌하게 잘 정리를 해준 결정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정형식 재판관의 ‘일사부재의 위반은 아니지만 입법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별개 보충의견입니다. 일사부재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굳이 정책적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에 관한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차치하

더라도,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보이콧을 하고 다른 장소에서 의원총회를 하면서 조직적으로 의사진행 방해를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2번 의결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배경을 고려해 본다면, 별개·보충의견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회법 개정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민변 회원들에 대한 인상은 어떠셨나요?

사실 부산에서 올라 온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고 하는 말을 동아대 원동욱 교수님으로부터 그 전 주인 3월 14일(금)에 듣고 그 학생들을 만나 격려하고 원동욱 교수님과도 인사하러 광화문 광장에 나갔던 것이 사실상 사전 답사가 되었던 것 아니었나 합니다. 그 주 일요일인 16일, 3월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한파가 몰려와 집에서 쉬다가 학생들이 걱정이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 10시경에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살펴보니 학생들 천막 대여섯 개만 있고 학생들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어 이리 저리 찾아다니다 맨 앞 본부 같이 생긴 천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거기가 바로 민변 변호사님들이 계시는 천막이었고, 그분들이 학생들이 향린교회로 갔을 것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향린교회로 가서 학생들이 잠자리가 괜찮은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가보니 향린 교회에서 따뜻하게 잘 준비를 잘 하고 있었고 얘기를 나누다가 저는 귀가했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부터 학생들도 단식을 시작했는데 교수들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지요. 아무튼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드디어 교수·연구자 릴레이 단식농성을 하기로 마음먹고 창고에 뒹굴던 천막 하나 들쳐 메고 광화문 광장으로 가서 첫 번째로 만났던 분이 바로 민변의 여변호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란 조끼 입은 민변 변호사들이 순찰을

돌며 왕래하면서 서로 인사를 할 때마다 반가웠고, 그 중에는 저의 제자인 최석균 변호사도 만났습니다. 특히 단식 첫날부터 합류해 주신 김현정 박사와 맹수석 명예교수님, 김용석 교수님, 김현철 교수님, 김경한 교수님 등 전국 교수·연구자 모임의 여러 교수님들과, 민주법연의 문병효 교수님, 김종서 교수님 등 많은 분들이 릴레이 단식농성에 합세해 주셨고 같이 응원해 주셨으며, 특히 민주법학연구회 회원 교수님들은 정부종합청사 앞에 가서 한덕수와 최상목 권한대행의 현재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 출근 무렵인 아침에 엠프 들고 정부종합청사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였던 김남주 변호사님과 가끔 그 대타 역할을 해 주신 김현정 박사도 기억에 남습니다.

○ 민변 회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상시 민변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양심의 최후 보루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민변에서 주장하고 추진하는 많은 일들이 저의 생각과 상당히 일치했고 그래서 응원을 많이 하였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하에서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12·28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위헌성 문제라든가 보수정권의 역사수정주의에 입각한 역사왜곡과 적절치 못한 인사와 정책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번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투쟁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민변은 우리 사회의 소금이자 빛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은 위로부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한 명백한 헌법파괴행위였기 때문에, 이러한 내란 앞에서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엄청난 헌법파괴를 한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려 더 이상 대통령이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탄핵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헌법소원과 기자회견 방송출연으로 싸워 왔습니다. 그리고 민변 변호사님들도 이 대열에 합류하여 시민들과 같이 광화문 광장에서 울고 웃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민주주의가 위기를 만났을 때, 정의의 편에 서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작년 12·3 내란 이래로 전 국민들이 그랬지만 참으로 커다란 터널을 지내 오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힘들었지만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하여 부르짖는 가운데 소중한 인연을 많이 만났고 민변 회원들도 그중 하나입니다. 저는 학자로서 실무에서 일하는 민변 변호사들과 활동하는 공간이 다름에도 광화문에서 만났을 때 동지라는 느낌을 받아 든든했습니다. 그때 광장 천막에서 만난 여러 다른 전공 교수님들과 인연이 되어서 새로운 학회를 출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과학기술 공학자들과 헌법을 비롯한 법학자들이 한데 모여 ‘과학혁명과 인간존엄 연구학회’라는 학문적 공동체를 지난 5월 16일 만들었습니다.

같은 학교 교수이지만 내란 전까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교류도 없었던 송기민 교수, 오현옥 교수 등 내란종식에 앞장 선 많은 교수·연구자님들을 만나 이제 대학의 민주화와 교권회복을 위한 한양대학교 교수노조를 2025년 6월 27일 창립하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7월 16일자로 노조설립신고증을 발부받아 합법적인 교수노동조합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2일에는 교수노조 출범식과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는데,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1인시위를

하시며 우리 단식에 참여하신 교수·연구자들을 많이 응원해 주셨던 민변 김남주 변호사님은 학술대회에 참여하셔서 종합토론을 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번 내란사태에서 이 명백하고도 중대한 헌법파괴행위를 단죄하지 못하고 내란주범 윤석열을 옹호하며 대립하던 수많은 내란옹호세력과 선거부정론자들이 대한민국에 온존하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우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와 정치인들의 선동 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 극우화 경향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평화롭게 피 한방울 안 흘리고 응원봉으로 내란세력을 진압하며 빛의 혁명을 이루어냈는데, 전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곳곳에 스며들어가 고착화되어 있는 각종 카르텔과 양극화, 빈부격차, 노동격차 등의 뿌리 깊은 문제들을 차근차근 혁파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마지막 남은 개혁 대상이 최근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유죄취지 파기환송판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각종 검찰비리에서 목도할 수 있는 법조카르텔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깨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변 변호사님들을 비롯한 깨어 있는 법조인들이 나서서 사회 모순과 카르텔을 척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민변이 이 사회에서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문병호 교수-민주사회를 위한 민주법연

○ 교수님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2008년부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2025년 1월부터는 민주법연 회장을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 계엄 선포 당일에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오후에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저녁 식사 후 저녁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던 차에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다길래 농담인 줄 알았는데, TV를 보라고 해서 TV를 켜더니 윤석열의 계엄 선포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5.18 광주가 떠올라 큰일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미 11월에 전임회장을 만나 민주법연 회장을 맡기로 한 직후였기 때문에 내가 3년 전 법전원장을 맡으면서 괴로웠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도 내가 무슨 장을 맡으면 웬지 모르게 크고 작은 사고들이 터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민주법연 회장을 맡기로 하자마자 일이 터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내가 고생복은 타고 났나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계엄 선포를 듣고 제일 처음 하셨던 일은 무엇인가요?

이미 밤 11시가 넘어 춘천에서 서울 가는 차가 끊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TV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두환이 비상계엄을 확대했던 80년 광주 5월의 악몽과 계엄군의 시민학살 장면이 떠올라 새벽까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밤 1시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었으나 윤석

열이 비상계엄 해제선언을 하지 않고 있어 TV를 지켜보다가 3시가 넘어 깜박 잠들었습니다. 4시쯤에 깨어보니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선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안심하고 5시가 다 되어 잠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민주법연 회장을 맡아서 할 일을 생각하니 고생길이 또 열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 내란 국면에서 민주법연은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그 활동 중에 민변과 같이 연대하셨던 활동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매주 여의도와 광화문광장에 나와서 비상행동의 투쟁에 합류하였고 중요한 국면마다 성명서 및 논평을 작성하여 언론에 배포하면서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하였고 투쟁의지를 고취하였습니다. 민주법연 성명서뿐만 아니라 법학교수회나 시민단체들의 각종 성명서에 회원들이 참여하고 주도하여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민주법연 대화방에서 대통령 탄핵에 관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헌법의 계엄관련 규정과 계엄법의 문제 등 현행 법제가 가진 한계와 해의 입법례 등 대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계엄을 한 윤석열 정권의 출범의 원인이 문재인 정권에서의 개혁실패라고 생각하고 특히 사회개혁특위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은 5월 민주법연 정기심포지움에서 발제와 토론을 통하여 논의되었고 일부 글들은 민주법학에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윤석열 비상계엄을 계기로 학계에서는 허영, 성낙인 등 저명한 헌법학자들이 윤석열을 적극 옹호하면서 보수언론에 칼럼을 쓰면서 ‘커밍아웃’하였고 또한 극우기독교단체의 지원을 받은 보수학자들이 계엄을 옹호하는

학술대회까지 여는 등 부끄러운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김종서 회원은 허영, 성낙인 등의 칼럼에 일일이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는 장문의 글을 기고하는 등의 투쟁을 하였습니다. 이 글들은 민주법학 제87호와 제88호에 실려있으니 참조바랍니다. 민주법연의 이와 같은 투쟁은 다른 시민단체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월경에는 민주법연 회원인 오병두 교수의 제안으로 민변 전임 회장이었던 백승헌 변호사와 협력하여 비상계엄사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이에 회장을 포함한 상당수 민주법연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였으며 세미나에서 발제한 대부분의 글들이 민주법학 제87호에 [긴급특집] “민주법학의 관점에서 본 12.3. 비상계엄사태”의 제하로 발표되었고 후에 책으로도 출판될 예정입니다.

민변과는 12.3 계엄 이래로 줄곧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서 함께 활동하였고 비상행동이 해산되기까지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덕수 대행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뒤부터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재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도 민주법연 회원 다수가 참여, 합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의 직무유기가 지속되었고 그에 대하여 도저히 묵인할 수 없어 민주법연 이름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고발까지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나, 조승현 회원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인 김남주 변호사, 백주선 변호사 등 민변 변호사들과 함께 3월 28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성토했고 기자회견 직후 조승현 회원 등과 함께 국가수사본부로 가서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 계엄 후 윤석열 탄핵되기까지 과정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였나요?

겨울 내내 투쟁하였고 주말마다 여의도 광장, 광화문 광장에 나와 함께 투쟁하였습니다. 겨울의 매서운 추위에도 민주법연 회원들과 함께 버티면서 힘든 줄 몰랐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의결과 체포영장 집행, 현재의 탄핵결정까지 수개월 동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투쟁에 함께 하였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으나 도중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이 실패하거나 윤석열이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것을 보면서 검경, 사법권력까지도 친위쿠데타를 옹호,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맥이 빠지고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친위쿠데타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인권을 옹호하는 결의를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행태도 가관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이충상 등 위원이 판검사출신이라는 점만 보더라도 법조권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조직인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직무유기하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함상훈을 현재재판관으로 지명하는 등의 행태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의 일부 법관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과 같은 사법권력을 포함한 거대한 부패권력과 얼마나 더 싸워야 하나, 결국은 사법개혁까지 이루어내야만 친위쿠데타와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내심 괴로운 마음도 있었으나 민주법연 회원들과 민주시민들의 단결된 힘을 믿고 내색하지 않고 투쟁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법연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 성명서와 의견서 쓰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겨울부터 봄까지 매 국면들이 중요하다보니 끊임없이 민주법연 성명서를 내야 했습니다. 회원들 중에서 솔선하여 성명서 초안을 작성해주기도 하였으나 회원들에게만 맡길 수 없어 회장으로서는 성명서를 직접 작성하

지 않을 수 없었고 회원들의 수정, 보완을 받아 언론에 배포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학기 중에는 법전원 수업까지 맡아 하면서 하다 보니 매번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성명서를 작성했는데 이것도 지금은 아름다운 투쟁의 추억으로 남게 되어 다행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결정문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의 윤석열 탄핵결정문에 대해서 시민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없을 만큼 명백히 위헌, 위법의 행위였고 광범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고 상식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결정문에서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덕분에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요구를 의결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백프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법연 회원들은 탄핵결정문에 ‘입법독재, 야당독재 프레임’을 기정사실로 인정하여 계엄을 정당화하는 듯한 표현이 있는 점, 일부 재판관이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였기 때문에 현재 선고가 연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투쟁과 저항이 없었다면 현재의 만장일치 결정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형배 현재소장대행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분 1인의 노력만으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친위쿠데타의 특성상, 이미 윤석열이 임명해놓은 현재 재판관 일부가 윤석열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현재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만료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압박과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감히 상상해

봅니다.

○ 활동하시면서 만나게 된 민변 회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회원이 있으신가요?

민변 회원 중에서는 여러 변호사분들이 생각나는데요.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은 공적인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 활동해 오신 전임 민변회장을 역임하셨던 조영선 변호사가 먼저 떠오릅니다. 민변 사무총장으로 일하던 당시부터 쭉 지켜봐왔지만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 공익에 헌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이번 비상계엄 및 내란을 겪으면서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으로 계시는 김남주 변호사 역시 그 열정을 높이 살만한 분입니다. 김변호사님 도움으로 한덕수 권한대행 직무유기혐의 기자회견과 함께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민변과 함께하는 1인 시위 도중 로스쿨 출신 제자, 최석균 변호사를 만나게 된 것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 끝으로 민변 탄핵백서 발간에 대해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12·3 친위쿠데타를 저지한 과정을 돌이켜 보면, 결국 민주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냄으로써 민주주의 역사상 한 장을 써내려간 거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위한 길은 앞으로도 험난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투쟁은 결국 자본과 권력 등 거대 특권층의 특권을 줄이고 국민주권을 확인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투쟁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시민들의 피의 희생이 뒷받침되어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막아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3·1운동, 4·19

의거, 5·18, 6·10항쟁, 촛불투쟁, 빛의 혁명과 같은 민주시민들의 투쟁의 역사가 있었기에 내란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피와 땀, 희생이 모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법연은 조만간 (가칭)민주주의법학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민주주의 투쟁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더구나 미래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드론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사회로 전면 개편되고 인간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면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구조적인 변화는 필연적이며 자본권력의 언론매체 지배력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극우세력은 그 허점을 비집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려 할 것입니다. 민주법연은 민주주의법학연구소를 통하여 민주시민 교육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투쟁 및 자본주의 투쟁을 위한 길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여 대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법연의 길에 민변이 앞으로도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백서 집필 발간에 함께 하신 변호사

김은진, 김태형, 노푸른, 류다솔, 박순덕, 배수진, 서채완, 신미용,
윤재은, 이상희, 이선경, 이종진, 장범식, 전다운, 조영선, 최새얀

편집책임 조영선

간사 이선경, 최새얀

발행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74, 2층(스탠다드 빌딩)

02-522-7284, admin@minbyun.or.kr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파면 결정에 이르기까지, 거리와 광장에서, 법정과 국회에서, 언론과 학계·시민사회 각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수많은 시민과 동료 법률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비상계엄에 맞서 시위와 농성을 이어 갔고, 그러한 아래로부터의 저항으로 인해 위로부터의 헌법질서 파괴 시도를 좌절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백서는 바로 그 노력 위에 쌓인 기록이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집단적 기억의 토대입니다. 이 책이 12·3 비상계엄과 탄핵, 파면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긴급권 남용을 막고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폭넓은 토론과 실천을 촉발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발간사 중에서

12·3 비상계엄과 탄핵 민변 백서

12·3 비상계엄과 탄핵·파면, 빛나는 민주사회를 위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664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74

전화 02-522-7284 팩스 02-522-7285

홈페이지 <http://minbyun.or.kr/>

